

최근외국입법동향 98-1

美國의 中小(벤처)企業投資支援法制

1998. 12

研究者：崔哲榮(先任研究員)

한국법제연구원

目次

第1部 美國의 中小(벤처)企業支援法制

제1장 美國 中小(벤처)企業支援法制	7
1. 中小企業支援法制의 基礎	7
(1) 중소기업법의 제정	7
(2) 중소기업지원법	8
(3) 중소기업의 정의	8
(4) 중소기업지원기구	9
2. 中小(벤처)企業支援프로그램	11
(1) 재정지원프로그램	11
(2) 벤처기업자금지원프로그램	12
(3) 정부조달지원프로그램	13
(4) 기술개발지원프로그램	14
(5) 수출지원프로그램	15
3. 不利中小企業支援프로그램	16
(1) 지원대상중소기업의 정의	16
(2) 불리중소기업의 대우	16
제2장 美國 中小企業投資프로그램法(SBIP)	19
1. 中小企業投資프로그램法의 沿革	19
2. 中小企業投資프로그램法의 體系	19
3. 中小企業投資프로그램法의 特徵	20
제3장 美國 中小企業投資프로그램法의 主要內容解説	23
1. 總論	23
(1) 목적	23
(2) 법률상 용어의 정의	23

2. 中小企業投資會社(SBIC)	24
(1) 중소기업투자회사의 설립	24
(2) 중소기업투자회사의 허가	25
(3) 중소기업투자회사의 요구자본	26
(4) 중소기업투자회사의 기능과 운영	27
(5) 중소기업투자회사의 임원	31
(6) 중소기업투자회사에 대한 조사와 제재	33
(7) 중소기업투자활동에 관한 연례보고서	37
3. 汚染統制施設의 設計 또는 設置支援	39
4. 州 및 地域開發會社에 대한 貸出	41
(1) 주개발회사	41
(2) 지원자격	41
(3) 대출의 목적	42
(4) 개발회사지원에 대한 제한	43
5. 認證貸出業者 및 優先的 公認貸出業者프로그램	44
(1) 인증대출업자 프로그램	44
(2) 우선적 공인대출자프로그램	45

第2部 美國의 中小企業投資프로그램法 (SMALL BUSINESS INVESTMENT PROGRAM)

제14B장 중소기업투자프로그램	51
------------------------	----

第1部 美國의 中小(벤처)企業支援法制

제1장 美國 中小(벤처)企業支援法制

1. 中小企業支援法制的 基礎

(1) 중소기업법의 제정

미국은 1930년대 경제대공황을 겪으며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로 경제의 파국은 물론 실업문제의 확대로 인해 고용문제의 해결에 있어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¹⁾ 1940년대 제2차 세계대전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소수의 대기업에 의한 전쟁물자조달의 한계로 인하여 한시적인 중소군수공업공사(Smaller War Plants Company)를 만들어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에 이르렀다. 다른 한편으로 임시국가경제위원회(Temporary National Economic Committee : TNEC)는 1938년부터 1941년까지 대기업에 의한 경제력집중을 조사·분석하여 중소기업문제에 관한 최초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 보고서는 중소기업의 도산의 원인에 대하여 첫째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지 못한 안이한 개업을 하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능력부족, 둘째 창업시는 물론 창업 이후에도 이어지는 자본부족, 셋째 정부의 적절한 보호정책 결여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TNEC는 첫째 중소기업의 개업에 필요한 지식 훈련을 제공하는 개업 및 창업지도, 둘째 중소기업 경영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경영지도, 셋째 창업에 필요한 자금 및 창업 이후의 자금조달에 필요한 중소기업의 금융시책, 넷째 대기업으로부터 부당한 압력 및 불공정경쟁에 대한 규제강화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그 후 미국 중소기업정책의 기초를 마련하였다.²⁾

이러한 기초는 1945년 미국 연방상원 중소기업문제특별위원회의 <자유경쟁기업의 유지>라는 보고서에서 중소기업보호육성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것으로 이어졌고, 1953년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의 제정으로 귀결되었다. 1953년에 제정된 중소기업법은 오늘날의 중소기업지원법제의 기초가 되었다. 현재 미국의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법제는 제15편(Title 15)의 무역·통상편에 제14A장 중소기업지원³⁾과 제14B장 중소기업투자프로그램⁴⁾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 두 개의 장

1) 최명주 외, WTO체제하에서의 지방중소기업지원정책, 1997, 180면.

2) 李在奎, 美國의 中小企業支援機關研究, 韓國中小企業會誌, 제20권 제1호(1998), 199면.

3) Chapter 14A. Aid to Small Business.

4) Chapter 14B. Small Business Investment Program.

(Chapter) 중에서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한 일반적인 법은 제14A장의 중소기업지원이며 제14B장의 중소기업투자프로그램은 중소기업투자회사회사의 설립을 통해 중소기업(벤처)기업이 설립 이후 경쟁력을 갖추기까지 자금의 지원에 중점이 놓여져 있다.

(2) 중소기업지원법

중소기업지원법은 1953년에 “중소기업법”으로 처음 제정되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및 경영 등에 대한 지원과 자문을 통해 미국의 중소기업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동법은 농업관련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중소기업체의 설립, 유지, 강화를 위한 지원프로그램, 재난에 의해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지원과 대출프로그램, 不利中小企業⁵⁾에 대한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더라도 불법적인 지위를 갖고 미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개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에 되거나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지원을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대통령은 매년 동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현황을 “중소기업 및 경쟁력에 관한 보고서”로 작성하여 의회의 상원과 하원에 설치되어 있는 중소기업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는 특히 사회적 또는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개인 및 여성에 의해 소유되거나 관리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좀더 상세한 사항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3) 중소기업의 정의

중소기업지원법에 따라 정해진 중소기업의 기준은 첫째 소유와 경영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둘째 그 산업분야에 있어서 지배적인 지위에 있지 않은 중소기업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농업관련부문에서는 연간 수입액이 50만달러를 넘지 않으면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고 있다.⁶⁾ 하지만 실무적인 운용을 위한 구체적인 중소기업의 기준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그 기준으로서 종업원수 및 매출액을 이용하고 그 기준 또한 중소기업의 기준은 경제환경의 변화와 시기적 요구를 반영하여 변동하며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5) 불리중소기업이란 소수민족기업, 인디언중소기업, 신체장애자소유 또는 고용중소기업, 재향군인 특히 베트남전쟁참전재향군인소유 또는 운영중소기업, 여성소유중소기업 등 사회·경제적 선입견이나 편견으로 다른 중소기업에 비하여 불리한 지위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

6) USCA §632(a).

이러한 근거에 기초하여 미국의 중소기업은 표준산업분류의 4단위 분류마다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상세히 정의되어 있다. 제조업 및 도매업은 종업원수, 건설업, 소매업 및 서비스업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광업은 두 가지 기준을 병행하여 적용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업종마다 500인 미만, 750인 미만, 1,000인 미만, 1,500인 미만 등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대규모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사업분야(석유정제, 항공기, 탄약제조업의 3개업종)에서는 그 특성을 감안하여 종업원수 1,500인을 중소기업 기준으로 하고 있다.

미국 중소기업의 정의는 독립성과 시장지배적인 것이 아닌 것, 그리고 행정당국의 판단에 의해서 종업원수와 매출액이라는 양적지표에 기초하여 각 산업의 정책 목표에 따라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 그 특징이다.⁷⁾

하지만 중소기업청(SBA)은 특정한 행정목적에 따라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우선 중소기업투자회사, 개발회사 등과 관련한 기업 중 순자산액이 600만 달러 미만, 과거 2년의 결산에 있어서 연방소득세를 공제한 후 연평균소득이 200만달러 미만인 기업, 둘째 정부조달대상 기업의 하청발주계약액이 1만달러 미만인 경우 고용자수 500인 미만인 기업, 셋째 원목을 제외한 정부보유자산 처분제도 대상인 기업의 경우 제조업에서 종업원수 500인 미만, 비제조업에서는 과거 3년간의 결산에서 연평균 매출액이 200만달러 미만인 기업, 넷째 지역재개발법에 의해 고실업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지역의 기업에 대해서 일반 중소기업기준보다 25%를 확대하여 적용하여 중소기업으로 인정한다.

(4) 중소기업지원기구

미국의 중소기업지원법제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로서 의회의 중소기업위원회, 대통령자문위원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지원센터, 중소기업투자회사 등을 두고 있다. 이 중 중소기업투자회사는 다음 장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그 외의 중소기업지원기구를 설명하도록 한다.

1) 의회의 중소기업위원회

미국 연방의회의 중소기업정책관련 위원회는 상원의 30개 위원회중 18개 위원회, 하원의 35개 위원회 중 15개 위원회, 4개의 양원합동위원회중 2개위원회가

7) 중소기업진흥공단, 구미주요국의 중소소기업정책, 1998. 8., 10~11면.

있으나 그 주축은 상원의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하원의 중소기업상임위원회이다.

상원의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1940년에 미국 중소기업문제조사연구 특별위원회로 설치되었고 1947년 금융통화위원회(BCC)에 잠시 흡수되었다가 1949년 폐지되었으나 1950년에 상설특별위원회로 부활하여 입법권을 갖게 되었다. 하원의 중소기업상임위원회는 1941년에 미국의 중소기업과 국방계획의 관계조사연구 특별위원회로서 발족된 후 1973년에 이르러 상임위원회로 모양을 갖추게 되면서 입법권을 갖게 되었다. 양 위원회의 업무는 중소기업청의 고유업무와 중소기업에 대한 모든 연구,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단독심의, 타위원회와의 합동심의, 공청회, 중소기업정책법안의 입법 및 심의 등이다.

양원의 중소기업위원회는 그 소관과 권한이 매우 포괄적이며 1980년 이후 중소기업정책이 갖고 있는 국가정책상의 위상강화로 인하여 중소기업위원회를 경유하거나 이와 협의하지 아니하는 입법은 어렵게 되었다. 또한 현행의 중소기업지원 법제에 대한 정부의 실적을 매년 보고받고 이를 심의하여 중소기업지원법제의 실효적 운용을 감시하고 있다.

2) 대통령자문위원회

미국의 대통령은 중소기업 및 소수민족기업자문위원회(AC/SMBO)를 두고 중소기업, 소수민족기업 등 불리기업의 종합시책을 심의한다. 이 기구는 정부대표 5인, 민간기업가 5인, 소수민족기업가 5인 등 15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수출진흥관련부처위원회는 중소기업수출진흥법에 근거한 시책을 심의하고, 여성문제자문위원회는 여성의 기업설립촉진, 여성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원의 장려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또한 신체장애자중소기업의 육성을 심의하는 신체장애자고용위원회가 1968년의 직업갱생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어 신체장애자의 취업촉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3) 중소기업청(SBA)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은 1953년에 설립된 대통령직속 독립기관으로 중소기업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하며 다른 부처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1953년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청은 처음 임시적 정부기관이었으나 1958년 중소기업법이 개정되면서 항구적인 상설기관이 되었다. 중소기업청의 주요업무는 중소기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의회 및 행정 각부의 중소기업에 관한

위원회 등과의 연락, 중소기업관련법안의 입법시 타 정부부처에 중소기업의 이익대변, 중소기업문제와 시책에 관한 조사 등이다.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을 위해 보다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중소기업정책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독점금지정책 및 정부조달정책, 중소기업의 경영지도 등이다.⁸⁾

중소기업청의 청장은 각료와 마찬가지로 상원의 동의를 얻어 임용되고 오직 의회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조직으로는 청장, 차장, 3차관보, 11개 위원회, 28개국, 10개 지방청 98개 지방사무소를 두고 있다. 본부와 지방조직을 합해 인원이 4,000명에 달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정책의 입안, 조정, 감사 및 시정권, 규제완화와 법정변호권, 정보수집권, 조달권 및 관여검사권, 지원지업에 대한 관여조사권, 중소기업의 정의 및 자격증명권, 중소기업투자회사에 대한 허가권, 대통령 및 의회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정(法定)권한이 있다.⁹⁾

4) 중소기업지원센터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지도자문, 인력훈련, 기술지원 등 경영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방중소기업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중소기업청에서 예산의 50% 정도를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단체, 상공회의소, 지역금융기관, 대학 등으로부터의 기부금으로 충당하는 매칭펀드 제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지역밀착형 중소기업지원기관으로서 중소기업청과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여 중소기업지원시책의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단체와 대학들이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자금조달 및 운영에 참여하고 있고 지역실정을 반영한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중소기업육성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 中小(벤처)企業支援프로그램

(1) 재정지원프로그램

미국기업들은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주로 일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융자보증프로그램을 가지고 있

8) USCA §633.

9) J.C. Driskill, Inc. v. Abdnor, C.A. 4(Va.) 1990, 901 F.2d 383.

으나¹⁰⁾ 이들 대부분은 지급보증을 통한 자금의 가용성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자율은 기업의 신용도, 대출취급비용 및 대출기간 등에 따라 시장원리에 의하여 결정되며 중소기업에 대한 저금리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청에 의한 보증을 받기 위한 조건은 매우 엄격하며 보증신청의 자격요건으로는 기업이 공서양속에 위반되지 않고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을 것, 중소기업청 이외에서는 합리적이고 적당한 조건으로 필요자산을 획득할 수 없을 것, 사업수입으로부터 차입금을 변제할 수 있고 담보력을 가지고 있을 것, 일정한 절차서류를 구비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일반중소기업과는 달리 첨단산업에서 더 높은 부가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의 경우 자금의 조달이 장기융자와 지분참여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연구개발자금, 장기설비자금 등의 모험자본(Venture Capital)을 주식, 사채 등의 공모 또는 민간보험회사 등으로부터 타당한 조건으로 입수할 수 없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청이 공인한 중소기업투자회사, 소수민족중소기업투자회사, 주개발회사, 지방개발회사 등을 경유하여 공급하고 있다.¹¹⁾ 미국에서 모험자본이 발달할 수 있는 조건의 하나는 벤처사업에 투자한 모험자본이 성공할 경우 수익률이 대단히 높고 주식의 장의시장(NADAQ)발달로 성공보수에 대한 투자회수여건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조달을 확대시키기 위해 1939년에 제도화된 NASDAQ(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Automates Quotation)은 증권거래소와 경쟁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거래하는 기업은 증권거래소의 상장기업과 마찬가지로 공개법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모험자본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지원, 첨단기술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조세지원을 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조세지원은 해당기업의 법인소득세, 판매 및 사용세 그리고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며 주정부나 지방정부가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연방정부가 공제하거나 대부분의 州租稅 및 지방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2) 벤처기업자금지원프로그램

벤처기업은 사업활동 자체가 고위험 고수익형이므로 일반중소기업과 같이 자금의 조달을 은행차입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

10) 李在奎, 앞의 논문, 202면~204면.

11) 이에 관하여는 이덕훈 외, 중소기업발전과 벤처캐피탈의 활성화, 한국개발연구원, 1995 참조.

90년대 전반의 경기회복과정에서 주역을 담당한 벤처기업군의 자금조달은 주로 주식발행에 의존하였고, 그 주식발행에 대해 증권회사, 벤처캐피탈, 기관투자자 등이 여러 형태로 관여하였다.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은 창업기, 성장1기 성장2기, 정착기 등 그 성장단계별로 특징을 보인다. 창업기의 창업자금이나 연구개발자금은 주로 벤처펀드의 주식인수에 의하여 조달된다. 벤처펀드는 벤처캐피탈의 모집에 따라 기관투자자나 개인이 출자하고, 조성하는 투자사업조합을 말한다. 이 시기에는 엔젤이라고 불리는 개인 투자자로부터의 출자도 일정한 비중을 차지한다. 성장1기는 試作品 제작을 위한 소요자금이 주로 벤처펀드에서의 추가출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성장2기는 상품의 공급개시 이후 판로확보를 위해 소요자금이 대폭 증가하는 시기로 주식에 의한 자금의 조달이 이루어진다. 정착기는 창업후 평균 5년이 지난 뒤 사업이 순조롭게 확대된 벤처기업이 설비증가 등 사업확대를 위한 자금을 주로 주식의 공모를 통해 조달한다. 미국에서는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의 공개와 동시에 NASDAQ에 등록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¹²⁾

미국 자본시장에 있어 원칙은 자본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 철저한 투자자 자기책임의 원칙준수와 투자에 관한 중요한 모든 정보의 완전공시 및 불공정거래의 배제를 통한 투자자의 보호에 있다. 벤처기업에 의한 활발한 주식공개도 이러한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하에서 벤처캐피탈리스트와 증권분석가 등이 전문지식과 높은 심사능력을 배경으로 자본시장에서의 자금운용 및 조달을 원활히 이어줌으로서 가능한 것이다.

(3) 정부조달지원프로그램

미국정부는 정부조달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큰 비중을 두고 있다.¹³⁾ 각 부처는 중소기업 및 불리기업진흥국을 설치하고 중소기업조달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중소기업청은 모든 부처의 조달업무에 직접 관여하고 중소기업조달을 촉진한다. 중소기업조달업무는 중소기업청내의 조달지원국과 소수민족중흥기업진흥국이 주관한다. 중소기업청의 조서관은 조달량이 많은 국방성, 항공우주국, 총무관리청 등에 상주하고 중소기업청을 대표하여 각 부처의 중소기업조달정책의

12) NASDAQ시장의 등록기준, 시장조성 등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구미주요국의 중소기업정책(1998), 179면~182면 참조.

13) USCA § 637.

입안, 목표의 설정, 조달절차결정 등에 참여, 중소기업청 지원시책과의 조정, 중소기업특별목표의 설정 등 조달에 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정부조달계약에 대한 지원은 계약금액별, 지역별 및 계약대상별 특별기준에 따라 조달기관과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청 사의 직접계약을 말하며 1만달러 이하의 개별계약은 중소기업으로부터 조달한다.¹⁴⁾ 지역별로는 연방조달기준에 근거하여 노동장관이 정하는 노동력과잉지역으로부터 조달한다. 계약대상별기준은 불리기업에 한해서만 발주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은 경쟁입찰에 의하여 최저입찰자로 하고 다만, 최저입찰가격의 10% 범위안에 있는 중소기업에 낙찰우선권을 준다. 계약순위는 중소기업청, 불리중소기업, 불리중소기업에게 도급을 주는 중소기업, 일반중소기업, 불리중소기업에게 도급을 주는 중소기업에게 도급을 주는 기업, 일반중소기업에 도급을 주는 기업의 순서로 되어 있다. 또한 중소기업청은 하청도급 계약체결을 의무화하고 원계약자는 중소기업, 소수민족기업, 특정지역에 하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4) 기술개발지원프로그램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의 효율성이나 생산성에 있어서 대기업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중소기업은 대체로 금융기반이 취약하여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애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은 중소기업기술혁신법¹⁵⁾ 제정하고 동법에서 중소기업기술혁신연구프로그램을¹⁶⁾ 마련하였다. 중소기업혁신법은 “연방의 연구개발자금에 의해 혁신적인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화함과 동시에 기술혁신의 기초로서 연방기관의 요구에 합치하는 연방의 연구개발에의 참가를 유도하여 국내경제의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SBIR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연방정부의 국책연구개발사업분야에 대한 중소기업의 활용, 연방정부보유기술의 상업화촉진, 기술혁신이 불리한 소수집단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1억달러 이상의 R&D 예산을 갖고 있는 연방정부부처와 정부산하기관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매년 동 예산의 일정비율을

14) 하지만 과거 정부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형사소추를 받은 계약자는 정부조달계약에서 제외될 수 있다 : Shermco Industries, Inc. v. Secretary of the Air Force, N.D.Tex. 1984, 584 F. Supp. 76.

15) Small Business Innovation Development Act.

16)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 : SBIR.

SBIR사업예산으로 책정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¹⁷⁾

프로그램은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의 지원은 제1단계와 제2단계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며 마지막으로 2단계에서 개발된 기술이나 발명품에 대한 상품화를 위한 최종상품화단계에서는 민간자본의 참여에 의해서 동 연구사업을 완성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SBIR프로그램에 의해 지원되는 자금은 원금상환 및 이자부담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자금신청기업의 위험부담을 최소화시켜주며 SBIR프로그램에 의해 개발된 신기술에 대해서는 특허권, 판권 등 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됨으로써 신기술개발기업을 보호하고 있다. SBIR의 자금은 연간 R&D 예산이 1억달러를 초과하는 연방정부의 각 부처와 정부산하기관이 매년 자체 R&D 예산의 일정비율을 SBIR프로그램에 배정함으로써 마련된다.

(5) 수출지원프로그램

중소기업청은 국가무역국을 설치하고 중소기업수출진흥정책을 입안하며, 관계기관의 협력을 얻어 종합적인 관리를 한다. 중소기업청의 지방국에는 수출진흥전문관을 배치하고 수출금융을 실시하는 것이 주요 수출촉진업무이다.¹⁸⁾

수출용자조건은 중소기업법이 규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1년 이상의 무역실적을 가지는 기업이어야 하며, 용자는 50만달러를 한도로 하는 중소기업청의 보증용자이고 기간은 18개월이다. 금리는 법정이자 또는 적절한 이자이며 담보는 재고품 또는 매각대금으로 하고 금융기관 약정료는 용자액의 0.25%로 하되 200달러를 한도로 한다.

중소기업청의 보증료는 2%이고 자금사용은 시장개척, 조사비, 여비, 해외견본 시장 참여비, 상담비, 수출제품의 제조 및 구입에 관한 자료비, 노동비 등이며 통상적인 운전자금에 대하여는 일반사업자금융제도를 적용한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무부는 수출촉진센터를 국제통상청의 지방사무소에 설치하고 각종 정보를 제공하며, 중소기업의 수출진흥지원기관에 대하여는 보조금과 인력을 지원한다.

17) USCA §638(a) - (j).

18) USCA §631(b).

3. 不利中小企業支援프로그램

(1) 지원대상중소기업의 정의

불리중소기업이라 함은 사회적 및 경제적으로 불리한 조건하에 있는 자가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 이러한 자가 근로자수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 이러한 기업의 창업희망자, 이러한 기업의 구성단체 등으로서 중소기업의 정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사회적 조건이 불리한 자라 함은 미국시민권을 가지는 자로서 인종적, 민족적 선입관이나 문화적 편견으로 인하여 그 발전을 크게 저해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흑인, 토착인, 스페인계 시민, 아시아/태평양계의 시민 등 중소기업청이 지정하는 집단에 속하는 소수민족이 이에 해당한다.¹⁹⁾ 또한 노동장관이 지정하는 장기경제 불황지대, 실업자집중지대에 장기 거주하는 자, 장기신체장애자로서 사회적 및 직업적 제한, 고용이나 사업기회의 제한을 받는 자, 범죄경력자와 같이 개인적 및 사회적 경력에 근거한 장기실업자, 부녀자와 같이 차별행위로 인한 장기 저속독자 등이 이에 속한다. 하지만 당사자가 개인적으로 사회적 불이익을 받았다는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 단지 백인여성이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녀 소유의 건설회사를 SBA의 불리중소기업프로그램에 포함시킬 수 없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불리하다는 일반적 증거만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이다.²⁰⁾

경제적 조건이 불리한 자라 함은 사회적 악조건 이외의 이유로 자유경쟁조건이 현저하게 결여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러한 불리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정부조달 및 각부처가 하는 계약체결과 도급에 있어 우선권이 주어진다.

(2) 불리중소기업의 대우

불리중소기업에는 소수민족중소기업, 인디언중소기업, 여성중소기업, 신체장애자중소기업, 재향군인중소기업 등이 있다.

소수민족기업에 대하여는 상무성의 소수민족기업 진흥국이 기본정책을 입안하

19) USCA § 631(f)(1)(C).

20) Central States Const., Inc. v. Small Business Admin. of U.S., D.Kan., 1991, 1170 F. Supp. 1447.

고 중소기업청의 소수민족중소기업 진흥국이 주관한다. 중소기업청은 소수민족기업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장/단기의 설비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경영기술지도를 실시한다.

인디언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거주지내 기업 및 창업자에 대한 용자를 실시한다.

여성이 51% 이상의 소유권이나 경영권을 가지는 중소기업에 대한 시책으로서 그 기본정책은 대통령 여성자문위원회, 각 부처 여성기업위원회 및 노동성 여성국이 주관한다. 여성소유중소기업에 대한 시책은 소수민족 중소기업시책을 준용한다.²¹⁾

재향군인중소기업지원은 월남전쟁시 상이군인의 중소기업을 우선한다. 정책은 재향군인청이 주관하고 중소기업청이 보완한다. 그 자격요건은 재향군인으로서 장해율이 30% 이상의 연금수급권자가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은 소수민족중소기업지원 기준에 준한다.

21) USCA §631(h).

제2장 美國 中小企業投資프로그램法(SBIP)

1. 中小企業投資프로그램法の沿革

미국의 중소기업투자프로그램법은 1958년 미연방법률 제15편의 통상편(commerce and trade)이 포함하고 있던 제77c조, 제77ddd조, 제80a-18조, 제633조 및 제636조 및 제18편의 형사 및 형사소송법에 포함되어 있던 제217조, 제218조, 제221조, 제567조, 제1006조 그리고 제1014조를 개정하고, 제12편 금융편의 제352a조를 삭제하여 "1958년 중소기업투자법(Small Business Investment Act of 1958)"으로 처음 입법되었다. 그후 동법은 1960년, 1961년, 1964년, 1966년, 1972년 일부 개정되었으며, 1988년에는 "우선적보증채권보증프로그램(Preferred Surety Bond Guarantee Program Act of 1988)"이 새로이 제694a조, 제694b조와 제694c조로 입법되어 포함되었다. 1992년에는 "중소기업주식증진법(Small Business Equity Enhancement Act of 1992)"가 제662조, 제682조, 제683조, 제685조, 제686조, 제687조, 제687b조 및 제687j조를 개정하여 입법되었으며, 1994년에는 "중소기업조기상환처벌구제법(Small Business Prepayment Penalty Relief Act of 1994)"이 제697f조로 입법되었다. 가장 최근에는 1997년 12월 2일 "중소기업재권한부여법(Small Business Reauthorization Act of 1997)"이 제정되어 소액대출, 중소기업투자회사프로그램, 공인개발회사프로그램, 여성운영기업, 경쟁프로그램 및 구매기회, 중소기업기술이전, 중소기업개발센터, 상업중심구역프로그램, 상이군인소유중소기업지원 등의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미국의 중소기업지원관련법의 상당한 부분에 대한 개정을 하였다.

2. 中小企業投資프로그램法の體系

미국 중소기업투자프로그램법은 제1절 총칙에서 중소기업투자프로그램의 목적과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제2절에서는 중소기업청내에 새로이 설치되는 중소기업투자국에 관하여 그 책임자의 임명과 보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3절에서는 중소기업투자회사의 조직, 요구자본, 차입운영, 중소기업체를 위한 주식자본, 중소기업체에 대한 장기대부, 단일기업에 대한 지원액의

제한, 기업의 운영과 규제, 허가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및 중지명령, 중소기업투자회사에 대한 조사 및 심문 등 소송에 관한 사항, 형평법상의 금지명령 및 기타 명령, 상충적 이해관계의 조정, 중소기업투자회사의 이사와 임원의 직무정지, 그리고 임원, 이사, 직원 또는 대리인의 불법행위와 부작위에 대한 사항, 법규위반에 대한 벌칙 및 벌금, 재판권과 소송업무, 연방재정은행에 의한 구매의 대상자격이 없는 보증채무, 신탁증서의 발행과 보증, 보증서 및 신탁증서의 정기적 발급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제4절의 주승인투자회사 및 주개발회사에 관한 규정은 삭제되었으며, 제4-A절에서 제A편에 상업 또는 산업리스 및 자격을 갖춘 계약에 대한 보증으로서 상업 및 공업적 재산의 리스계약하에서 중소기업체에 의한 임대료지급보증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권한 그리고 대부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권한, 신규리스계약을 통한 채무의 청산, 전대(sublease)의 이행, 리스의 양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기에서는 오염통제시설의 설계 또는 설치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규정과 자격있는 계약보증을 위한 회전기금, 유희기금의 투자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제B편은 보증채권보증인의 정의와 함께 보증채권의 보증을 위한 회전자금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5절에서는 주 및 지역개발회사에 대한 대출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다. 즉, 공장취득, 건축, 개조 및 확대를 위한 대출, 개발회사 사채, 민간채무증서의 매도, 사채의 공동출자, 개발회사 지원에 대한 제한, 인증대출업자프로그램, 우선적 공인대출업자(lender)프로그램, 개발회사채의 조기상환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3. 中小企業投資프로그램法의 特徵

미국의 중소기업지원시책은 명확한 이념을 기초로 하고 있다. 즉, 중소기업문제는 시장경쟁원리에 의한 자원배분이 후생을 극대화한다는 믿음에 근거하여 경쟁적이고 공정한 시장원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경쟁조건이 동등해야하므로 불리중소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다른 대기업 및 중소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조건에 다다를 때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중소기업정책은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중소기업이 전면에서 나서 직접 지원하기 보다는 다른 부처의 예산을 이용하고 각 지방의 발전을 고려하여 민간부문과 연계하여 수행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민간인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중소기업투자프로그램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어느나라보다도 금융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투자회사의 설립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민간주식자본과 장기대출기금의 유입을 촉진하여 금융지원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둘째,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지방정부를 통해 무상지원, 조세감면 등 직접적인 보조방식을 통해 지역개발, 연구기술개발 중소기업지원, 환경오염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보조금은 WTO에 의해서도 허용되는 보조금이다. 또한 주 및 지방정부도 공채의 발행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각자의 특색에 맞게 지원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투자회사법을 통해 제공되는 자금의 지원이 지역적 편중없이 균형적으로 공급되어 어느 특정지역에 실업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상업 또는 산업리스 및 자격을 갖춘 계약에 대한 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보증제도에는 상업 및 공업적 재산의 리스계약하에서 중소기업체에 의한 임대료지급보증에 대해 중소기업청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권한, 신규리스계약을 통한 채무의 청산, 전대(sublease)의 이행, 리스의 양도, 자격있는 계약보증을 위한 회전기금, 유희기금의 투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넷째, 주 및 지역개발회사에 대한 대출을 시행하여 공장취득, 건축, 개조 및 확대를 위한 대출을 하고, 개발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것을 지원하며, 인증대출업자 프로그램과 우선적 공인대출자(lender)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개발회사채의 조기상환을 명령할 수 있다.

다섯째, 중소기업투자회사법에 의한 재정지원에 있어 우선권을 미국에서 생산되는 설비와 시설을 대여하는 중소기업체 또는 구입하는 중소기업체에 부여함으로써 지원자금의 경제적 효과가 미국 국내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불법이민자에게 소수불리중소기업지원자금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다.

제3장 美國 中小企業投資프로그램法의 主要內容解說

1. 總 論

(1) 목 적

미국중소기업투자프로그램은 중소기업 특히, 기업의 운영에 있어 건전한 자금조성과 기업의 성장, 확대 그리고 현대화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게 평소의 자금지원으로는 이용할 수 없는 민간주식자본과 장기대출기금의 흐름을 촉진하고 보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확립함으로써 전반적인 국가경제와 중소기업에게 개선과 활력을 부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정책은 민간기금의 최대한 참가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지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이 법의 규정들은 이 규정에 의하여 제공되는 자금의 지원이 국가의 어느 지역에 있어서도 실업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되도록 시행되어야 하고, 이 법에 의한 재정지원부여에 있어 우선권은 미국에서 생산되는 설비와 시설을 대여받거나 구입하는 중소기업에게 주어져야 하며 이와 같은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은 당해 설비와 시설을 지속적으로 대여하거나 구입하도록 미국 의회는 권고하고 있다.

(2) 법률상 용어의 정의

중소기업투자프로그램법은 이 법에서 “중소기업체”(Small Business Concern)는 중소기업법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중소기업법이란 새로이 개정된 법제하에서 제14A장의 중소기업지원법 제632조 제(a)항의 정의를 말하는 것이다. 동법의 규정상 중소기업의 정의에 관하여는 전술한 중소기업의 정의와 동일하다.²²⁾ 그리고 “영세기업”(smaller enterprise)은 당해 회사의 관계회사를 합하여 당해 회사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당시 순자산가치가 6백만달러 이하의 기업체, 당해 회사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당시 직전 2년간의 평균순수입이 연방소득세 부과후 2백

22) 제1장 1. (3) 중소기업의 정의, 참조.

만달러를 이하의 기업체,²³⁾ 그리고 기본적으로 당해 소기업체가 관련된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청이 정한 표준산업분류규모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체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소기업체를 말한다.

“개발회사”는 당해 회사의 영업지역내의 중소기업체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주법에 의하여 법인체로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민간자본”은 주식회사허가를 받은 자의 납입자본과 납입잉여자본, 합명회사허가를 받은 자의 출자조합원의 출연자본, 또는 유한책임회사허가를 받은 자의 출자조합원의 주식투자의 총액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자로부터의 중소기업투자회사의 자본에 기부하기 위한 납입되지 않은 수권자본을 말한다. 다만 그 납입되지 않은 수권자본은 형평기금을 위한 요청에 관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민간자본으로 계산될 수 있지만 형평기금은 그러한 수권자본을 기초하여 조성될 수 없다. 하지만 “민간자본”은 중소기업투자회사가 다른 재원으로부터 차용한 자금, 형평기금을 발행하여 획득한 자금, 연방정부,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 또는 어떤 다른 정부기관 또는 정부대행기관으로부터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획득한 자금은 포함하지 않는다.²⁴⁾

“형평기금”(leverage)은 중소기업청에 의하여 매입되거나 보증된 사채, 중소기업청에 의하여 매입되거나 보증된 이익배당주식, 1995. 10월 1일 현재 공모된 우선주를 포함한다.

2. 中小企業投資會社(SBIC)

(1) 중소기업투자회사의 설립

중소기업투자회사(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된 기능을 수행하고 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주(州)법률에 의하여 조직 및 허가된 법인체, 유한책임회사, 또는 유한합명회사를 말한다. 법인체의 경우 주주에 의하여 보다 빨리 해산되지 아니하는 한 30년간 상속권을 보유하며, 유한합명회사의 경우 10년간 상속권과 그러한 기능과 활동을 하는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23) 이월손실금을 제외한다.

24) 다만, 자격을 갖춘 비민간자금의 투자자들이 경영진, 이사회, 일반합자자 또는 허가받은 구성원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 1987년 10월 1일 이전에 연방의 특허 또는 정부출연기업으로 설립된 기업의 영업이익으로부터(정부에 의한 전용은 제외한다) 획득한 자금, 근로자복지기금 또는 연금으로부터 투자된 자금, 자격을 갖춘 비영리자금은 제외된다.

권한을 보유한다. 회사의 사업지역 및 지점 또는 대리점의 설립(정관에 의하여 승인된 경우)은 중소기업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²⁵⁾

중소기업투자회사의 정관은 일반적으로 당해 회사의 설립목적과 명칭/사업을 수행하는 지역, 본사의 위치 및 자본주식의 액수와 종류를 명시하여야 한다. 정관은 이 법과 불일치하지 않는 것으로서 회사가 사업의 규제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보는 기타 규정을 포함할 수 있다. 정관 및 수시로 채택된 정관의 개정은 중소기업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²⁶⁾

(2) 중소기업투자회사의 허가

(가) 신청서의 제출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투자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허가의 신청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서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후 90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은 상세한 신청서의 처리현황을 포함하는 서면 보고서와 신청서의 보완을 위해 남아 있는 필요사항을 신청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요건에 따라 제출된 신청을 받은 이후 중소기업청장은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이 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을 승인하고 신청자에게 운영을 위한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신청의 승인을 거부하고 승인거부의 사실을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나) 심의사항

이 법에 따른 신청을 심사하고 처리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청장은 신청자가 이 법의 제682조 제(a)항 및 제(b)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신청자의 경영이 자격을 갖추었는가 그리고 지식, 경험 및 이 법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었는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때 신청자가 영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지역내의 중소기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필요성과 중소기업의 이용가능성, 신청회사의 소유주와 경영에 대한 일반적인 영업평판, 적절한 수익성과 재정적 건전성을 포함하여 신청자의 성공적 운영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하지만 형평기금의 객관적 부족 또는 이용곤란성을 고려하여서는 안된다.

25) USCA §681(a).

26) USCA §681(b).

(다) 예외적인 중소기업투자회사의 허가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청장의 재량권범위내에서 그리고 특별한 상황과 상당한 이유의 제시에 근거하여 다음의 신청자에 대하여도 신청을 허가하고 이 장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다.

첫째, 3백만달러 이하의 민간 자본을 갖고 있는 신청자.

둘째, 신청자가 이 법의 제682(a)조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에 의한 허가증을 다른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자.

셋째,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수익적인 운영과 이 법의 제682(a)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당한 수준의 민간자본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시간계획 등 실행가능한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신청자.

(3) 중소기업투자회사의 요구자본

각 중소기업투자회사의 민간자본은 5백만달러 또는 이 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에 의하여 매입되거나 보증될 이익배당주식의 발행권한을 위임받았거나 권한위임을 요구하는 각 중소기업투자회사와 관련하여서는 1천만달러보다 많아야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청장이 그와 같은 조치가 불합리한 채무불이행의 위험 또는 연방정부에 대한 손실을 발생시키거나 손실의 원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청장의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특별한 사정 및 선의 (good cause)의 입증을 근거로 하여 중소기업청에 의하여 매입되거나 보증되어 질 이익배당주식의 발행권한을 위임받았거나 위임받기를 요구하는 중소기업투자회사의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이하인 민간자본을 허용할 수 있다.²⁷⁾

이러한 요건 외에 중소기업청장은 각 중소기업투자회사의 민간자본이 정관에 따라 건전하고 수익성있게 운영될 것인지 그리고 적극적이고 신중하게 관리될 것인지에 관한 합리적인 기대를 보증하기에 충분한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투자회사가 허가를 받기에 앞서 그리고 자금지원에 관한 요청에 대한 승인에 앞서 당해 회사의 이자부 채무에 대하여 정기적인 상황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고 당해 회사가 고려하고 있는 투자로부터 얻을 것으로 예상하는 수입, 당해 회사의

27) Inner City Broadcasting Corp. v. Sanders, C.A.D.C. 1984, 733 F. 2d 154, 236 U.S. App. D.C. 62.

소유주와 경영자의 경험, 법인체로서 당해 회사의 역사 그리고 당해 회사의 재정적 자원을 참작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청장은 1996년 9월 30일 이후 서면으로 승인된 중소기업투자회사가 자금지원총액의 50% 이상을 영세기업에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당해 조치가 연방정부에 대한 비합리적인 채무불이행 또는 손실을 발생시키거나 그 원인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의 자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중소기업투자회사에 대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형평기금을 승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투자회사의 주식은 국영은행에서 매입할 수 있고 연방준비은행의 기타 회원은행과 보험에 가입한 비회원은행에서 적용할 수 있는 주법률이 허용하는 한도까지 매입할 수 있다. 다만, 주식취득으로 당해 은행이 그 당시 소유하고 있는 중소기업투자회사의 주식의 총액이 그의 자본금 및 잉여금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소기업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또한 중소기업청장은 1996년 9월 30일 이후 허가된 중소기업투자회사의 경영이 자금관리에 있어 독립성과 객관성 및 중소기업투자회사의 투자와 운영에 대한 감독을 보증하는 등으로 당해 중소기업투자회사의 소유권으로부터 충분히 분산되어 있고 관계가 단절되어 있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4) 중소기업투자회사의 기능과 운영

(가) 기능

가능한 한 기업의 설립을 포함하여 중소기업투자회사의 운영은 은행 또는 기타 법인체 또는 비법인체인 투자자 또는 대부자와 협력하여 이를 행할 수 있고,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대부 또는 증권취득에 필요한 서비스 또는 제1차 조사는 수수료부담의 조건으로 그러한 은행 또는 기타 투자자나 대부자를 통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중소기업투자회사는 그러한 은행 및 기타 투자자와 대부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²⁸⁾

중소기업투자회사는 실행가능한 경우에 공업 및 상업적 업무에 이용할 수 있거나 유용한 연방준비제도와 상무성의 자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당해 회사의 직원에 의해 수수료부담의 조건하에 컨설팅 및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어떤 연방준비은행도 이 법의 규정에 의

28) U.S. v. Colorado. Invesco, Inc., D. Colo. 1995, 905 F. Supp. 1339.

하여 운영되는 중소기업투자회사를 위한 수탁 또는 재정대리인으로서 행동하도록 권한의 위임을 받을 수 있다. 미납입재정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투자회사는 연방정부에 대한 직접채권 또는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연방정부가 보증하는 채권, 또는 그 계정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또는 연방예금 및 대출보험공사(FSLIC)에 의해 보증되는 기관에 의해 발행된 1년 또는 그 이내의 기간을 만기일로 하는 예치증서, 또는 그러한 기관의 예금계정에 있어 당해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자금을 투자할 권한을 위임받는다.

(나) 차입운영

각 중소기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청이 정하는 일반조건 및 제한과 규칙에 의하여 금전을 차용하고 사채권/약속어음 또는 기타 채권을 발행할 권한이 있다.²⁹⁾

그리고 중소기업투자회사의 설립 및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은 비용지출법(Appropriation Act)에서 승인받은 경우 그 투자회사에서 발행한 사채권과 배당주식을 매입하거나 그에 대한 원금과 이자의 적시(適時)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그와 같은 매입 또는 보증은 중소기업청이 발한 규칙에 따라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조건으로 중소기업청이 행할 수 있다. 연방정부는 이 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으로 지불해야 할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에서 매입한 사채권은 합당한 투자를 하고 투자회사의 재정적 건전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청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투자회사의 기타 사채권/약속어음 또는 기타 부채보다 후순위가 된다. 그와 같은 사채권은 발행기간이 15년을 초과할 수 없고 당해 사채권의 평균만기일에 비교하여 만기일까지 잔여기간이 남아있는 연방정부의 미결제 시중채권의 현평균거래수익을 고려하여 재무장관에 의해 결정되고 매년 중소기업청에 납부되어지거나 중소기업청이 보유하고 있는 1퍼센트의 추가비용 외에 1퍼센트의 8분의 1에 가장 가깝게 조정된 비율보다 높은 비율의 이자가 붙는다. 사채권과 배당주식은 중소기업청이 정하는 다른 조건을 포함할 수 있다.³⁰⁾

이 법에 따라 허가된 회사가 이용가능한 미결제 형평기금의 최대금액은 다음의 경우 당해 회사의 민간자본의 총액에 의해 정해진다.

첫째, 당해 회사가 1천5백만달러 이하의 민간자본을 갖고 있는 경우, 형평기금

29) USCA §683(a).

30)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제한에 따른다. 중소기업청에 의하여 보증되어질 수 있는 사채권과 배당주식의 총액은 당해 회사의 민간자본의 3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의 총액은 민간자본의 30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둘째, 당해 회사가 1천5백만달러 이상 그러나 3천만달러 이하의 민간자본을 갖고 있는 경우, 형평기금의 총액은 4천5백만달러에 1천5백만달러를 넘는 민간자본의 200퍼센트 더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셋째, 당해 회사가 3천만달러 이상의 민간자본을 갖고 있는 경우, 형평기금의 총액은 7천5백만달러에 3천만달러를 초과하지만 추가적으로 1천5백만달러를 넘지 않는 민간자본의 100퍼센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넷째, 상기 각 경우의 총금액은 노동부의 노동통계국에 의해 작성되는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되어야 한다.

(다) 이익의 배분

회사가 합자회사로서, 또는 S조항 법인(subchapter S corporation)³¹⁾ 또는 조세에 있어 면세업체로서 운영되는 경우 그리고 어떠한 누적되고 미지급된 우선적 지급금이 없는 경우, 당해회사는 출자조합원, 주주, 또는 사원의 최대납세채무를 넘지않는 금액내에서 출자조합원, 주주, 또는 사원에게 1년단위의 이익배분을 할 수 있다. 이 항에 있어서 "최대납세채무"는 회사의 당해 배당 직전 회계연도와 관련하여 회사에 의하여 신청되었거나 신청되어질 소득세반환에 있어 연방소득세 과세를 위한 각 출자조합원, 주주 또는 사원에게 할당되는³²⁾ 수입의 총액을 말하며, 어느 세율이 더 높은 간에 당해 반환에 포함되는 소득중에서 회사 또는 개인에 대한 통합한계최고연방 및 주 소득세율을 곱한다. 이 항에 있어서 '주 소득세'는 당해 회사의 본점 소재지인 주의 소득세를 말한다.

31) 미국의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은 사업체를 ① 보통법인(C Corporation), ② 소규모법인(S Corporation), ③ 합작회사(Partnership), ④ 개인사업주(Sole Proprietorship)로 구분하여 각각의 사업형태에 대하여 개념을 설정하고 있다. 이 4가지 형태의 사업체 중 보통의 법인에 대한 취급을 기준으로 다른 사업체에 대한 취급은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다. 즉, 법인세가 법인소득에 대해서 과세되어진 후 주주에게 분배된 배당에 대해서 개인차원에서 소득세가 적용되는데 보통법인의 배당은 지불이자와 다르고, 법인세의 산정에 있어서도 損金에 산입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서 이외의 3개 사업형태는 사업단계에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특히 S 법인은 패스스루(passthrough entity)로 자본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고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법인이 소득, 공제항목, 손실 및 세액공제는 그대로 주주에게 패스스루된다. S조항 법인은 내국세법의 Subchapter S에 규정되어 있는 것에 유래하는 명칭이다; S조항 법인에 관한 더욱 자세한 것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앞의 책, 165면~167면 참조.

32) 만약 중소기업청이 납세자라면 주어질 중소기업청에 대한 할당금을 포함한다.

(라) 중소기업체에 대한 주식자본의 제공과 대출

중소기업투자회사의 기능은 중소기업청의 규칙에 따라 중소기업투자회사가 결정할 수 있는 방법과 조건하에서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중소기업체에 대하여 주식자본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³³⁾ 이 경우 중소기업체에게 자본금을 제공하기 전에 첫째, 회사가 당해 중소기업체의 유일한 채무자가 되는 한 미납입된 부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기 위하여 증권 등을 매도할 것을 그 기업체에 요구할 수 있으며, 둘째 중소기업청에서 발한 규칙에 정한 바를 제외하고 그러한 기업체는 먼저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기채를 하지 못하고 그 회사에 그러한 부채를 상환할 제1차 기회를 부여할 것에 동의한다.

중소기업투자회사는 법인 및 비법인인 중소기업체에 건전재정·성장·현대화 및 확장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 법에 정한 방법과 조건에 의하여 그 기업체에게 대부하여 줄 수 있다.³⁴⁾ 이에 따른 대부는 직접적으로 또는 다른 대여자와 협력하여 즉시 또는 연기하여 참가한다는 협정을 통하여 법인 또는 비법인에게 행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하여 받은 대부중 회사지분에 대한 최고이자율은 중소기업청이 정한다. 중소기업청이 정하는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는 무효이며 이와 관련한 이자를 지급한 경우 당해 중소기업투자회사에 대하여 지급이자 총액의 두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³⁵⁾ 하지만 중소기업청이 허가한 중소기업투자회사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은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청 및 주법을 위반하여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부과하였다고해서 당해 중소기업투자회사에 지급한 이자와 수수료의 두배를 반환청구할 수 없다.³⁶⁾ 또한 SBA의 규칙에 위반되는 이자율 및 대출약정으로 인해 SBIC에 의한 대출자체가 무효화 되지는 않는다.³⁷⁾ 다만 중소기업청은 이 법에 따라 사채권을 발행한 회사에 대하여 매년도 결정된 미지급의 사채권에 대한 이자율표에 근거한 최대이자율과 중소기업청에 의하여 승인된 당해 회사의 다른 비용을 더하여 부과하는

33) USCA § 684.

34) USCA § 685(a).

35) USCA § 687(i)(4).

36) JZ Smoke Shop, Inc. v. American Commercial Capital Corp., S.D.N.Y. 1989, 709 F. Supp. 422.

37) Lloyd Capital Corp. v. Pat Henchar, Inc., N.Y. 1992, 603 N.E. 2d 246, 589 N.Y.S. 2d 396, 80 N.Y. 2d 124.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대부의 만기일은 20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상환을 보증하는데 적합하도록 확실한 가치가 있거나 담보가 설정되어야 한다.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체에 대부를 한 회사는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을 추가하기 위하여 그 대부의 만기일을 연장하거나 경신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그러한 연장 또는 갱신이 당해 대부의 조정에 청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5) 중소기업투자회사의 임원

(가) 상충적 이해관계의 조정

중소기업체, 중소기업투자회사, 그 주주, 출자자 또는 양자의 구성원 또는 이 법의 목적에 방해가 되는 상충적인 이해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체는 중소기업투자회사의 임원, 이사, 주주, 출자자 또는 구성원 또는 ① 중소기업투자회사의 임원, 이사, 주주, 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직접 또는 간접적, 재정적 또는 그 이외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자 또는 업체 또는 ② 중소기업투자회사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재정적 또는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업체의 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규칙을 채택하여야 한다. 그러한 규칙은 이 법의 목적에 따라 그 거래에 의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소재지의 공개를 포함한 필요한 공시를 위한 적절한 요건을 포함하여야 한다.³⁸⁾

(나) 이사와 임원의 직무정지

중소기업체는 첫째 이사 또는 임원이 이 법, 이 법에 의하여 발한 규칙 또는 최종적인 중지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둘째 이사 또는 임원으로서 신용의무의 불이행행위를 구성하는 작위, 부작위 또는 관행을 고의로 행하고, 신용의무의 위반 또는 불이행이 그 이사 또는 임원의 개인적인 불성실에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언제든지 중소기업투자회사의 이사 또는 임원에게 해임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³⁹⁾ 그리고 중소기업투자회사의 임원, 이사, 직원, 대리인 또는 기타 그의 경영 또는 사업에 참가하는 자가 그의 신용의무를 위반하여 어떠한 행위를 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다. 이 경우 중소기업투자회사가 그 결과로 인하

38) USCA §687d.

39) USCA §687e ; U.S. v. McMurray. C.A. 10(Utah) 1980, 656 F. 2d 540.

여 재정적 손실 또는 기타 손해를 입었거나 입을 급박한 위협상태에 있어야 한다. 40) 중소기업청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첫째 중죄, 또는 불성실 또는 배임을 포함한 기타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 둘째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이 있거나 사기 또는 배임을 포함한 행위로 인하여 관할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에 의하여 영구적 또는 잠정적으로 금지를 받은 자 등이 중소기업투자회사의 임원, 이사 또는 직원으로 취임하거나 그의 사업 또는 경영의 대리인 또는 참가자가 되는 경우도 불법행위이다. 또한 그러한 자가 앞에 정한 자격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도 불법이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투자회사의 보호 또는 중소기업청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그 이사 또는 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중소기업투자회사의 사업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더 이상 참가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그러한 정지 또는 금지는 통지를 한 즉시 효력이 있고, 이 법에 의하여 인정된 소송절차에 있어서 법원에 의하여 연기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에 의하여 송부된 통지에 의한 행정소송절차의 만료시까지 그리고 중소기업청이 통지서에 명시된 책임을 처리할 때까지 또는 이사 또는 임원에게 해임 또는 금지명령을 내린 경우 그 명령의 발효일까지 유효하다. 그 통지서의 사본은 이해관계가 있는 중소기업투자회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중소기업투자회사의 이사 또는 임원이 불성실 또는 배임에 관한 중죄를 범하거나 이에 참가하여 연방검찰에 의하여 고발, 기소 또는 항소된 경우 중소기업청은 언제든지 그 이사 또는 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하여 직무정지를 하거나 중소기업투자회사의 사업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참가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그 통지서의 사본은 중소기업투자회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그 정지 또는 금지는 고발, 기소 또는 항소를 중소기업청이 최종적으로 처분하거나 종료할 때까지 유효하다. 그 이사 또는 임원이 그러한 위반행위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또는 그 판결에 대해 항소심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소기업청은 이사 또는 임원의 해임명령을 내리고 이를 통지한다. 그 명령서의 사본을 중소기업투자회사에게 송부하며 이에 따라 당해 이사 또는 임원은 그 중소기업투자회사의 이사 또는 임원직에서 면직된다. 무죄의 인정 또는 기타 기소사항에 대한 처분은 중소기업청이 이 법에 의하여 당해 이사 또는 임원의 직무정지나 해임 또는 중소기업투자회사의 사업참가에의 금지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한다. 41)

40) USCA § 687f(b).

이사 또는 임원이 직무정지를 당하거나 이 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회사의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당한 후 10일 이내에 그 이사 또는 임원은 허가 받은 자의 본사가 위치한 연방의 관할지방법원 또는 컬럼비아특별구의 지방법원에 이 법에 의하여 이사 또는 임원에게 송부된 통지서에 의한 행정소송절차의 완료시까지 그 정지 또는 금지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러한 법원은 그 정지 또는 금지를 연기하는 재판권을 갖는다.

(6) 중소기업투자회사에 대한 조사와 제재

(가) 위반의 조사

중소기업청은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다른 사람이 이 법률의 규정이 법률에 의한 규칙 또는 이 법률에 의하여 발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행위를 하였거나 행하려고 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어떠한 자가 조사받을 사항에 관한 모든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선서를 하거나 중소기업청에서 정한 바와 다른 방법으로 설명서를 제출하는 것을 허용한다.⁴²⁾ 조사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은 선서와 확인, 증인의 소환, 출두요구, 증거조사를 행하고 조사에 관련된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증인의 출두와 그러한 서류의 제출은 미국의 어느 장소에서든지 이를 요구할 수 있다.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이 완강하게 불응하거나 그에 대한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소기업청은 조사 또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거나 그 자가 거주 또는 사업을 경영하는 관할구역내의 연방법원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증인의 출두와 증언 및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한다. 그 법원은 당사자에게 중소기업청의 출두, 명령을 받은 경우 기록의 제출 또는 조사증인 사항에 관한 증언을 요구하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법원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범정부범죄로서 처벌할 수 있다. 그러한 사건에 있어서 모든 절차는 당사자가 거주하거나 그에게 판결을 할 수 있는 재판관할구역에서 이를 행할 수 있다.

각 중소기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청이 검사를 행할 자격과 검사수행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의 지원을 받고 중소기업청 투자국의 지시를 받아 실시하는 검사를 받으며 검사관의 보수를 포함하여 검사비용은 중소기업청의 재량으로 검사를 받

41) USCA §687e(e).

42) USCA §687b.

는 회사에 이를 부과할 수 있고 그와 같이 부과된 때에는 그 회사가 이를 지급한다. 이 법에 의하여 징수된 수수료는 중소기업청의 인건비 및 비용을 위한 계정에 예치되어야 하며 심사비용 및 다른 프로그램감독활동을 충당하기 위해서만 전용되는 것이 허용된다. 모든 회사는 중소기업청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이 요구하는 시기와 형식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청은 보고요건의 중복을 피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에서 1940년 투자회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회사에 보고서제출을 면제할 권한이 있다.

각 중소기업투자회사는 다음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어도 2년에 한번 세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⁴³⁾

- ① 중소기업투자회사가 합법적인 활동 및 이 법에 의해 고려된 활동에만 종사하였는가;
- ② 중소기업투자회사가 금지된 이해의 상충관계에 연루되었는가;
- ③ 중소기업투자회사가 지원받는 중소기업에 대해 불법적 감독권을 획득하고 수행하였는가;
- ④ 중소기업투자회사가 5년 이상 중소기업에 투자하였는가;
- ⑤ 적용되는 제한규정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투자회사가 자기자본의 20퍼센트 이상을 개별 중소기업에 투자하였는가;
- ⑥ 중소기업투자회사가 재대출, 외국투자 또는 수동적 투자에 연루되었는가;
- ⑦ 중소기업투자회사가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율을 부과하였는가하는 사항;

다만, 중소기업청은 첫째 그 회사에 의하여 발행된 채무증서의 총액과 상환기록, 당해 회사의 과거 운영경험, 과거 조사의 내용과 결과 그리고 당해 회사의 경영전문성 등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청이 재량으로 연기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1년간, 둘째 그 중소기업투자회사가 소송에 연루되거나 법정관리하에 있는 동안 운영이 정지되었던 회사인 경우에 조사를 포기할 수 있다.

(나) 행정적 제재 - 허가의 취소와 정지, 중지명령

허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청이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⁴⁴⁾

- ① 이 법의 규정 또는 중소기업청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한 규칙에 의한

43) USCA § 687b(c).

44) USCA § 687a.

- 여 필요한 설명서에 고의로 허위설명을 한 때,
- ② 이 법의 규정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한 규칙에 의
해 필요한 설명서에 설명을 행한 상황에 비추어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필요
한 사실을 설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③ 이 법률의 규정을 고의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④ 이 법률에 의하여 승인된 중소기업청의 규칙을 고의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은 경우
- ⑤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이 발한 중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기타 사람이 이 법률의 규정 또는 중소기업청이
그에 의하여 발한 규칙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 법률 또는 규칙을 위반하거나 위
반할 행위를 하거나 행할 경우 중소기업청은 그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기타 사람
에게 그러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그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기타 사람에게 이 법률 및 규칙의 이행을 보장하는데 필
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자제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또한 그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명령대상자인 중소기업투자회사의 허가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거나 중지명령을 발하기 전
에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투자회사 및 기타 관계자에게 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명
령, 또는 중지명령을 발하지 아니한 이유를 설명하도록 명령을 내린다. 이유를 설
명하도록 하는 명령은 중소기업청이 주장하는 사실과 법률 및 청문회를 개최할
법적 권한과 관할에 대한 설명서를 포함하고, 명령에서 정한 시간에 중소기업청에
서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것을 정한다. 청문회 또는 그의 포기 이후에 중소기업청
은 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발한다는 전례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청의 사실인정 및 그에 대한 이유의 설명서를 포함시키고 명
령의 발효일을 명시하는 명령을 즉시 내리고 허가를 받은 자와 기타 관계자에게
명령을 내리도록 한다.

(다) 사법적 제재

중기업투자회사가 이 법률의 규정 또는 이에 의하여 정한 규칙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로부터 얻은 모든 권리·특권 및 특전을 박탈할 수 있

다. 그러한 회사의 해산을 선언하거나 권리·특권 및 특전을 박탈하기 전에 이 법률의 불이행 또는 위반 사항은 그 회사의 주요 사무소가 위치한 곳으로서 연방의 재판권에 속하는 지역, 準州 또는 기타 지역에서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소송의 재판권이 있는 연방의 법원에서 이를 결정한다. 중소기업에 자본을 제공한 SBA에 의해 허가된 SBIC는 SBA를 재산관리인으로 지명하고 중소기업이사의 권한을 제한하는 명령에 지방법원이 동의하지 않는한 당해 중소기업에 대해 파산 신청을 할 절대적 권리가 없다.⁴⁵⁾ 그러한 소송은 중소기업청 또는 법무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연방이 이를 제기한다.

또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이 내린 명령은 중소기업투자회사 또는 기타 명령의 대상자가 통보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그 중소기업투자회사의 주된 영업소의 미국순회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확정된다.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 중소기업청의 명령을 청원서에 기재된 방법으로 무효화 또는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그 항소법원의 서기에게 제출한다. 30일이 만료된 후에는 청원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정당한 이유를 명시하여 법원의 허락을 받아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법원서기는 즉시 청원서 한 부를 중소기업청에 송부하며 중소기업청은 그에 대하여 증명을 하고 제소된 명령을 기재한 기록의 사본을 법원에 제출한다.⁴⁶⁾

그 기록을 제출하기 전에 중소기업청이 그의 명령을 전부 또는 일부 수정하거나 무효화하는 경우 청원자는 중소기업청에 통보하고 법원이 정할 수 있는 시간 이내에 청원서를 수정할 수 있다. 재심을 위한 청원서의 제출은 중소기업청의 명령시행을 연기 또는 정지하지 아니하지만, 항소법원은 재량으로 청원의 청문과 결정시까지 명령의 시행을 전부 또는 일부 금지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법원은 중소기업청의 명령을 확정, 수정 또는 무효화할 수 있다. 법원은 적당하고 적절한 사건의 처리를 위해 추가증거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방법과 조건에 의하여 그러한 증거의 조사를 하기 위하여 청문회를 재개하도록 중소기업청에 명령한다. 중소기업청은 채택된 추가증거를 근거로 하여 사실에 대한 인정사항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추가증거를 기록하고, 자신의 수정된 또는 새로운 인정사실과 자신의 명령에 대한 수정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청의 명령에 대한 이의제

45) U.S. v. Royal Business Funds Corp., C.A.2(N.Y.) 1983, 724 F. 2d 12.

46) USCA §687a(e).

기는 중소기업청에 제기하지 않는 한, 또는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그 합당한 이유가 없는 한 법원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중소기업청의 명령을 확인, 수정 또는 무효화하는 법원의 판결과 명령은 증명 또는 사건이송명령에 근거한 연방대법원의 재심판할권하에 놓여진다.⁴⁷⁾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명령이 내려진 중소기업투자회사 또는 기타의 사람이 당해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투자회사의 주된 영업소가 있는 순회지역구내의 연방항소법원에 명령의 집행을 신청하고 제소된 명령을 기재한 기록의 사본을 제출한다.

중소기업투자회사 또는 다른 자가 이 법의 규정, 이 법에 의한 규칙 또는 이 법률에 의하여 발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하게 될 행위를 하거나 행하려고 한다고 중소기업청이 판단하는 경우에 중소기업청은 언제든지 연방지방법원 또는 연방의 관할권에 속하는 지역의 연방법원에 그 행위 또는 관행을 금지하는 명령 또는 그러한 규정·규칙 또는 명령의 이행을 강제하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당해 법원은 그 소송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며 중소기업투자회사 또는 기타 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였거나 하려고 한다는 것을 중소기업청이 제시한 때 항구적 또는 잠정적 금지명령·가처분명령 또는 기타 명령이 보증금없이 부과되어야 한다.⁴⁸⁾

소송절차에 있어서 형평법법원으로서의 법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범위까지 중소기업투자회사의 위치에 관계없이 그 재산에 대하여 독점적 재판권을 가지며 법원은 그러한 소송절차에 있어서 소유된 재산을 법원의 감독하에 유지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수탁자 또는 관리인을 지명할 권리를 가진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투자회사의 수탁자 또는 관리인으로 행동할 권한을 갖는다. 중소기업청이 요청한 즉시 법원은 그러한 자격으로 활동하도록 중소기업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특별한 관련사항으로 인하여 그러한 지정이 불공정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하다고 생각하여야 한다.

(7) 중소기업투자활동에 관한 연례보고서

(가) 연례보고서의 작성

중소기업청은 제6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연례보고서에 이 법률에

47) USCA Title 28 §1254.

48) USCA §687c.

의한 운영의 세부적인 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당해 보고서에는 정부가 현 회계 연도중 그 운영의 결과에 따라서 예상할 수 있는 총손실액과 더불어 전회계연도 중 운영의 결과에 따른 정부의 손실액을 기재한다. 연례보고서에 중소기업청은 다음 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설명을 기재한다.

- ① 중소기업투자회사에 대한 정부의 자금조달을 대체하는 그 회사의 민간자금 조달을 장려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투자은행의 타당성과 조직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권고
- ② 국가의 전지역 및 모든 유자격의 중소기업체에 대한 중소기업투자회사 자금 조달의 준비를 보증하는 중소기업청의 계획. 이 경우 상기 계획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한 목적을 포함한다.
- ③ 중소기업투자회사프로그램의 착수 및 관리에 따른 정부자금의 보상을 극대화하고 그에 관한 법규상의 기준에 응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이 취한 조치
- ④ 집행기관이 기업에 행한 연방지출에 대한 관리예산국의 회계. 이 경우 중소기업투자회사에 적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규모기준 이상 및 이하의 기업체에 대한 그 지출의 비율을 명시한다.
- ⑤ 법인 및 비법인인 기업체로부터 징수한 정부의 조세소득에 대한 재무성의 회계. 이 경우 중소기업투자회사에 적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규모기준 이상 및 이하의 기업체에 의한 소득원을 명시한다.
- ⑥ 개인 및 단체회사인 납세자에 대한 중소기업투자회사의 자금조달에 관련된 조세득실과 증액된 조세소득에 대한 재무성의 회계
- ⑦ 중소기업투자회사의 운영을 개선·촉진하고 유자격의 중소기업체에 의한 그의 자금조달시설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추가조세유인책에 대한 재무성의 권고
- ⑧ 연방증권법에 의하여 중소기업투자회사를 관리하는 규제요건을 간소화 및 최소화하고 증권거래위원회·중소기업청 및 기타 행정부의 기관간의 중복되는 규칙 및 관리권을 배제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에서 행한 조치를 열거하는 증권거래위원회의 보고
- ⑨ 중소기업체의 증권시장 참가를 촉진하고 고정시키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의 보고

그리고 1940년 투자회사법의 요건에 대한 중소기업투자회사의 이행을 간소화

하고 제26편의 제851조에 따라 규율되는 투자회사로서 과세되도록 선정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증권거래위원회가 행한 조치49)

(나) 보고위반에 대한 벌칙 및 벌금

이 법률 제687b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규 또는 특별보고서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발한 규칙 또는 서면지시를 위반하는 중소기업투자회사는 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1일당 100달러 이하의 민사상 벌금을 연방에 지급한다. 다만, 그러한 불이행이 정당한 이유에 기인하고 고의적인 태만에 기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에 정한 민사상 벌금은 연방에 납부하며 중소기업청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이를 반환받을 수 있다.50) 그러나 중소기업청은 규칙에 의하여 또는 제1항의 불이행이 있기 이전에 명령에 의하여 청문회의 통지를 행한 후, 중소기업청이 공익 또는 중소기업청의 이익보호와 일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계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하며 적합하다고 보는 조건에 따라서 일정기간 중소기업투자회사에 이 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다른 요구를 할 수 있다.51)

3. 汚染統制施設의 設計 또는 設置支援

“오염통제시설”은 오염물질, 폐기물, 쓰레기 또는 폐기열을 제거, 변화, 저장함으로써 소음, 대기 또는 수질 오염을 방지, 축소, 약화, 또는 통제하는데 도움이

49) 이외에도 연례보고서에 중소기업청은 다음과 관련된 전체적이고 상세한 설명 또는 계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첫째, 중소기업청이 허가한 중소기업투자회사의 수, 청산되어진 허가받은 자의 수 및 전년도에 허가를 받았던 허가받은 자의 수, 각자가 받은 정부형평기금의 총액 및 각자가 이용한 형평기금증서의 유형

둘째, 전년도에 수령한 각 허가받은 자의 정부형평기금의 총액 및 각 허가받은 자가 이용한 형평기금증서의 유형

셋째, 각 재정지원문서의 형식을 위하여 규모, 지리적 위치, 그리고 중소기업대출, 주식투자, 또는 양자 모두를 위해 재정적 지원증서로부터의 형평기금을 사용하고 있는 투자회사의 형평기금범위를 포함하여 재정지원을 이용하는 중소기업투자회사의 다른 특성

넷째, 당해연도에 있어서 이용된 투자증서의 각 유형의 빈도 및 전년도와 당해연도의 비교

50) USCA §687g(a).

51) USCA §687g(b).

될 것으로 중소기업이 재량에 따라 결정한 (동산 및 부동산의) 자산을 말하며 중소기업청이 정한 그 (동산 및 부동산) 자산은 고체 및 액체 폐기물의 수집, 저장, 처리, 활용, 가공, 또는 최종적 처리를 위하여 이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체가 오염통제시설의 계획, 설계 또는 설치와 관련하여, 또는 주, 주정부의 하부기관, 또는 다른 공공단체에 의해 발행된 수익채권의 방법에 의한 재정마련을 포함하여 그를 위한 재정마련과 관련하여 운영상 또는 재정적 불이익을 입거나 입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자격있는 계약하에서 임차료 또는 다른 금액의 지급을 보증한다. 그러한 보증은 직접적 또는 자격있는 보증회사 또는 다른 자격있는 회사와의 참가계약을 통해 협력하여 이루어지거나 효력을 갖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권한은 다음의 제한과 한계를 갖는다.

반대되는 다른 법률, 규정, 또는 규칙 또는 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오염통제시설 또는 자산의 경우에 인정된 보증은 그 자산이 보유자에게 연방소득세의 과세로부터 면세되는 이자를 제공하는 산업수익증권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익금의 이용을 통해 획득된 경우에 발행된다.

그러한 보증은 자격있는 계약에 따른 지불금액의 총액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연방의 전적인 신의와 신용채무이어야 한다.

보증을 받은 중소기업체가 자격있는 계약의 합의사항과 조건을 이행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존재한다고 중소기업청이 결정하는 경우에만 중소기업청은 보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청장에 의해 정해질 수 있는 시간과 조건으로 지급되도록 이 법에 따라 발행된 보증에 대하여 일률적인 연간수수료를 정한다. 수수료는 중소기업청이 합리적이고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금액으로 정해져야 하며 프로그램에 따른 경험상 정당화되는 가장 낮은 수수료가 시행되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적 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어느 경우에도 그 연간 금액은 이 법에 의하여 보증된 자격있는 보증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연간최소보증임차료의 1퍼센트 이상 그리고 3.5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중소기업청은 또한 보증신청의 진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행정적 비용을 지불하기에 합리적이고 필요하다는 중소기업청장의 결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보증신청의 진행을 위한 일률적 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⁵²⁾

52) USCA § 694-1(c).

4. 州 및 地域開發會社에 대한 貸出

(1) 주개발회사

주개발회사에 대한 대출제도는 이 법에 의하여 허가된 개발회사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체를 위한 장기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도시 및 지역에서의 경제적 개발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 또는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에 있어서 “자격있는 주 또는 지방개발회사”는 중소기업청이 정한 바에 따라 전임전문직원, 적절한 회계, 법무 및 업무지원 능력을 포함한 전문적인 경영능력, 이사회, 또는 당해 회사에 의한 대출결정 및 대출업무와 관련된 결정을 포함한 당해 회사를 위한 경영상의 결정을 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회합하는 임원회의 등의 사항을 갖추고 있는 주 또는 지방개발회사를 말한다. 또한 농어촌지역의 회사는 전임전문직원과 전문적인 경영능력을 갖추고 그러한 업무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동일한 일반적 지역에 위치한 다른 공인된 개발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직원 및 경영능력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⁵³⁾

중소기업청은 이 법의 목적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개발회사에게 대출을 할 권한이 있다. 이 법의 이전에 선행된 기금은 당해 이율의 이자를 부담하는 개발회사의 채무로 전환되며 중소기업청이 정한 바에 따른 다른 조건을 포함하고, 다른 출처로부터 개발회사가 확보한 기금에 대한 개발회사의 이용과 투자에 관계없이 기금은 조기상환되어야 한다. 일정시기에 중소기업청이 이 법에 따라 주개발회사로부터 매입하고 미지급한 채무의 총액은 주개발회사가 다른 모든 출처로부터 차입한 총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지원자격

이 법에 따른 주개발회사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요건으로서 개발회사는 기금조성 계획이 최소한 다음의 경제적 개발목적의 하나를 지향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첫째 당해 계획의 종료 이후 2년 이내 일자리의 창출 또는 당해 계획에 기인하는 일자리의 보호 또는 유지, 둘째 당해 지역 내에서 다른 업종개발을 자극하고, 당해 지역에 새로운 수입을 가져오거나 지역경제의 다양화 및 안정화속에서 그

53) USCA §697(e).

지역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의 개선, 셋째 상업구역의 재활성화, 수출의 확대, 소수자운영사업 개발의 확대, 농어촌개발, 기술첨단화, 계획설비현대화, 자동화전환, 또는 수입대체를 포함한 경제경쟁력의 제고, 방위산업을 포함하는 연방예산삭감에 의해 요구되는 변경, 환경 또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연방강제기준 또는 정책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구조조정 등과 같은 공공정책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달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야 한다.⁵⁴⁾

만약 자격이 두번째 또는 세번째에 규정된 기준에 근거하고, 전체적인 개발회사의 투자목록이 일자리의 창출 또는 유지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그 계획은 중소기업청에 의해 전개된 일자리창출 또는 일자리의 보호기준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

(3) 대출의 목적

(가) 대출의 목적

중소기업청은 주 및 지역개발회사에게 토지의 취득을 포함한 공장의 취득, 건축, 개조 및 확대를 위한 대출을 할 수 있으며, 그 대출은 즉시 또는 거치의 기초에 근거하여 참여한다는 합의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은행 또는 다른 대출기관과 협력하여 행하여 질 수 있다. 다만 전술한 권한은 다음의 제한과 한계를 갖는다.

우선 대출금의 수익금은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확인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그리고 중소기업청에 의하여 승인된 건전한 사업을 위해서 당해 차용자에 의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둘째, 이 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이 행한 대출은 각 기의 중소기업체에 대하여 75만달러로 제한된다. 단 이 법의 제695(d)(3)조에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는 대출은 각 기의 중소기업체에 대하여 100만달러로 제한된다.

(나) 지원기준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는 개발회사는 중소기업청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요구되는 참가의 범위와 각 기의 경우 이용되어야 하는 납입자본금의 총액을 포함하는 중소기업청이 정한 기준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지역으로 투입되는 기금은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주 또는 지방정부, 은행

54) USCA §695(d).

또는 기타 금융기관, 재단 또는 기타 비영리기관, 이 항에 의한 권한을 갖는 단체를 통하여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체 또는 그 소유자, 주주 또는 계열회사 등으로부터 유입되어야 한다.

이 법에 의해 인가된 단체를 통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체(또는 그 소유자, 주주, 또는 계열회사)는 ① 당해 중소기업체가 2년 또는 그 이하의 기간동안 운영되고 있는 경우 자금조달된 프로젝트의 총비용의 최소한 15퍼센트, ② 당해 프로젝트가 제한적 또는 단일목적의 건물 또는 구조물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자금조달된 프로젝트의 총비용의 최소한 15퍼센트, ③ ① 및 ②에 정한 조건의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자금조달된 프로젝트의 총비용의 최소한 20퍼센트, ④ 기타 다른 모든 경우 개발회사의 재량에 따라 자금조달된 총비용의 최소한 10퍼센트를 제공하여야 한다.⁵⁵⁾

중소기업에 의하여 제공된 담보는 일반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제공된 재산에 종속적 담보의 지위를 포함하여야 하며 신용결정에 있어 평가되어야 할 요소의 하나일 뿐이다. 추가적 담보는 만약 중소기업체가 사례별 판단의 기초 위에서 정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담보물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만 요구되어진다.

(다) 리스의 제한

만약 당해 중소기업이 이 조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리스의 실행 이후에 프로젝트에 있어 공간의 총 60% 이상을 영구적으로 점유하고 사용하는 경우 이 법에 의하여 리스가 허용된 프로젝트의 어느 부분에 추가하여 프로젝트의 20%를 넘지 않는 부분은 지원받는 중소기업에 의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임차인에게 리스되어질 수 있다.⁵⁶⁾ 그리고 당해 프로젝트가 새로운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합리적인 프로젝트의 성장이 지원받는 중소기업체가 3년 이내에 추가적인 공간을 필요로 하고 10년 이내에 그 추가공간을 완전히 활용할 것임을 증명한다면 전체 프로젝트의 33퍼센트까지 임차될 수 있다.

(4) 개발회사지원에 대한 제한

1991년 5월 1일 이후, 만약 그 자금조달이 이 법에 의하여 재정지원을 하는

55) USCA §696(3)C).

56) USCA §696(5).

중소기업의 유형에 관하여 어떠한 조건, 우선권 또는 제한을 포함하고 있거나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 법에 의한 지원의 수혜자에 대한 조건을 포함하거나 어떤 요건을 부과하는 경우 어느 개발회사도 연방정부의 각 부처를 포함하여 어느 출처로부터도 조달자금을 받아서는 안된다.⁵⁷⁾ 또한 상기일 이전에, 개발회사에 대하여 자금조달을 하는 연방정부의 어느 부처도 이 법에 의하여 재정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체의 유형에 관하여 어떠한 조건이나 우선권 또는 제한을 부과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 법에 의한 지원의 수혜자에 대한 조건을 포함하거나 어떤 요건을 부과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상기의 사항은 당해 부처가 개발회사에 의해 중소기업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모든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그 조건, 우선권 또는 제한이 그러한게 제공되는 재정적 지원에만 한정되어 있는 경우 당해 조건, 우선권 또는 제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⁵⁸⁾

5. 認證貸出業者 및 優先的 公認貸出業者 프로그램

(1) 인증대출업자 프로그램

(가) 인증대출업자의 자격

중소기업청은 이 법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자격있는 주 및 지방개발회사를 위하여 인증대출업자프로그램(Accredited Lenders Program)을 설립할 권한이 있다.⁵⁹⁾ 중소기업청은 당해 회사가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자격있는 주 또는 지방개발회사를 인증대출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첫째, 이전 12개월 이상을 이 법의 제696조, 제697조 및 제697a조에 의해 허가된 개발회사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회사

둘째, 개발회사프로그램을 위한 중소기업청의 대출정책 및 절차를 잘 아는 익숙하고 자격있는 개인을 갖추고 있는 회사

셋째, 당해 개발회사프로그램에 따른 공장과 시설을 위한 자금조달절차를 진행시키고 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조달을 할 능력이 있는 회사

넷째, 당해 회사의 보증채권에 관하여 합리적이며 중소기업청이 수용할 수 있는

57) USCA §697(c).

58) USCA §697c.

59) USCA §697d(a) : 인증대출업자 및 우선적 공인대출업자프로그램의 입법목적은 Pub. L. 103-403, U.S. Code Cong. and Adm. News, p.3407 이하 참조.

손실율을 갖고 있는 회사

다섯째, 중소기업청에 완벽하고 정확한 일괄 보증채권보증신청을 제출한 경험이 있는 회사

여섯째, 개발회사프로그램을 통하여 공장과 시설의 재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신용에 봉사할 능력을 입증한 회사

중소기업청은 이 법에 따라 인증대출자로 지정된 자격있는 주 또는 지방 개발회사가 제출한 대출신청의 처리 또는 지원활동을 위한 신속한 절차를 개발하여야 한다.

(나) 지정의 정지 또는 취소

인증대출자로서 자격있는 주 또는 지방 개발회사의 지정은 중소기업청에 의하여 개발회사가 이 법에 의한 자격을 위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개발회사가 중소기업청의 규칙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다른 적용가능한 법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로 결정된 경우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2) 우선적 공인대출업자프로그램

(가) 우선적 공인대출자의 자격요건

시범계획의 기초 위에서 중소기업청은 제697e조의 제(b)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인개발회사를 위하여 우선적 공인대출업자프로그램(Premier Certified Lenders Program)을 설립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첫째 당해 공인개발회사가 신용이 있는 공인개발회사이고 우선적 공인대출업자 신청을 제출하는 날 이전 12개월 기간 동안 공인된 대출업자프로그램에 활동적인 참가자인 경우,⁶⁰⁾ 둘째 당해 회사가 적정하게 분석된 종합적인 사채보증신청을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였거나, 적절히 제 504조의 대출을 상환하고 자신의 대출목록을 제출한 경우의 경력을 갖고 있는 경우, 셋째 이 법에 따라 당해 회사가 발행하고 중소기업청에 의하여 보증된 사채에 대한 원금과 이자의 지급에 있어 당해 회사의 채무불이행의 결과로 중소기업청이 부담한 손실의 10퍼센트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에 책임을 지고 상환한다는데 당해 회사가 동의한 경우 공인개발회사를 우선적 공인대출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⁶¹⁾

60) 당해 회사가 공인된 대출주프로그램에 참가할 자격이 있어 이 요건을 면제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61) USCA § 697e(b)(2).

(나) 지정 이후 기준의 적용

당해 회사가 우선적 공인대출자의 자격요건으로 정한 어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언제라도 이 조항에 따른 우선적 공인대출업자로서 공인개발회사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 손실준비금

우선적 공인대출업자로 지정된 회사는 이 법에 따라 승인된 자금지원을 위한 손실준비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조성된 각 손실준비금의 총액은 회사공채총액의 10%가 되어야 한다. 또한 조성된 각 손실준비금은 첫째 은행계정 또는 연방에 의해 보증된 예치기관 또는 중소기업청에 담보양도되도록 그리고 중소기업청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식으로 당해 회사에 의해 선택된 기관에 예치된 분리된 자금, 둘째 중소기업청에 지불되도록 한 그리고 중소기업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형식인 취소불가능한 증서 또는 신용증서, 셋째 첫 번째와 두번째에서 정한 자산의 조합에 의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손실이 중소기업청에 의하여 승인된 경우 손실준비금의 특정부분 그리고 우선적 대출회사에 의해 제공된 다른 자금은 우선적 대출회사의 손실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중소기업청에 상환하여야 한다. 만약 회사가 준비금을 이용한 경우 30일 이내에 이용된 금액은 동등한 금액의 자금으로 대체되어야 한다.⁶²⁾

(라) 대출승인권

중소기업청이 정한 조건과 기간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이 조에 따라 우선적 공인대출업자로 지정된 회사에게 대출의 승인, 권한부여, 결산, 지원, 저당물에 대한 유질처분, 소송,⁶³⁾ 당해 회사에 의하여 발행된 사채의 수익금으로 조성된 대출금의 변제를 허용할 수 있으며 당해 사채의 보증을 허락할 수 있다.

우선적 공인대출업자에 의한 대출의 승인은 이 법의 제697(a)항에 따른 중소기업청에 의한 승인의 적격성에 관한 최종승인에 따르지만, 그러한 최종적 승인은 신용가치, 대출상환, 또는 법규에 의해 부과된 법률적 요건의 준수 등을 포함한

62) USCA §697e(c)(5).

63) 우선적 공인대출자가 일방당사자인 소송행위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감독을 제외한다.

대출자에 의한 결정의 심사를 포함해서는 안된다.

이 법에 따른 사채의 발행과 매도 이후에 중소기업청은 12개월 이내의 간격으로 각 우선적 공인대출자에 의해 행하여진 자금조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심사는 대출자의 신용판단과 이 조에 따라 허가된 프로그램에 따라 승인된 각 기의 자금조성에 대한 적격성요건의 일반적 준수를 포함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청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심사의 사실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하지만 그 심사는 다른 미지급보증사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⁶⁴⁾

64) USCA §697e(e).

1. The first part of the document discusses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accurate records of all transactions and activities. It emphasizes that this is crucial for ensuring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the organization's operations.

2. The second part outlines the various methods and tools used to collect and analyze data. This includes both traditional manual methods and modern digital technologies, highlighting the benefits of each approach.

3. The third part focuses on the challenges and risks associated with data management, such as data loss, security breaches, and compliance issues. It provides strategies to mitigate these risks and ensure the integrity of the data.

4. The final part discusses the future trends in data management, including the increasing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loud-based solutions. It suggests ways in which these technologies can be leveraged to improve efficiency and decision-making.

•

Page 1 of 1

第2部 美國의 中小企業投資프로그램法
(SMALL BUSINESS INVESTMENT PROGRAM)

제14B장 중소기업투자프로그램

제1절 총 칙

제661조 목 적

제662조 정 의

제2절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투자국

제671조 설치; 차장; 임명 및 보수

제672조 삭 제

제3절 중소기업투자회사

제681조 조 직

제682조 요구자본

제683조 차입운영

제684조 중소기업체를 위한 주식자본

제685조 중소기업체에 대한 장기대부

제686조 단일기업에 대한 지원액의 제한

제687조 기업의 운영과 규제

제687a조 허가의 취소와 정지; 중지명령

제687b조 조사 및 심문, 소환·선서·확인권, 법원의 보조, 심리의 담당, 보고서

제687c조 금지명령 및 기타 명령

제687d조 상충적 이해관계

제687e조 허가를 받은 자의 이사와 임원의 직무정지

제687f조 임원, 이사, 직원 또는 대리인의 불법행위와 부작위

제687g조 벌칙 및 벌금

제687h조 재판권과 소송업무

제687i조 삭 제

제687j조 삭 제

제687k조 연방재정은행에 의한 구매의 대상자격이 없는 보증채무

제687l조 신탁증서의 발행과 보증

제687m조 보증서 및 신탁증서의 정기적 발급

제688조 삭제

제4절 주승인투자회사 및 주개발회사

제691조 삭제

제4-A절 보증

제A편 상업 또는 산업리스 및 자격을 갖춘 계약보증

제692조 상업 및 공업적 재산의 리스계약하에서 중소기업체에 의한 임대료지급 보증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권한

제693조 대부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권한, 신규리스계약을 통한 채무의 청산, 전대(sublease)의 이행, 리스의 양도

제694조 삭제

제694-1조 오염통제시설의 설계 또는 설치

제694-2조 자격있는 계약보증을 위한 회전기금, 유희기금의 투자

제B편 보증채권보증인

제694a조 정의

제694b조 보증채권보증인

제694c조 보증채권의 보증을 위한 회전자금

제5절 주 및 지역개발회사에 대한 대출

제695조 주개발회사

제696조 공장취득, 건축, 개조 및 확대를 위한 대출

제697조 개발회사 사채

제697a조 민간채무증서의 매도

제697b조 사채의 공동출자

제697c조 개발회사지원에 대한 제한

제697d조 인증대출업자 프로그램

제697e조 우선적 공인대출업자프로그램

제697f조 개발회사채의 조기상환

제14B장 중소기업투자프로그램

제1절 총 칙

제661조 목 적

중소기업 특히, 기업의 운영에 있어 건전한 자금조성과 기업의 성장, 확대 그리고 현대화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게 평소의 자금지원으로는 이용할 수 없는 민간주식자본과 장기대출기금의 흐름을 촉진하고 보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설립함으로써 전반적인 국가경제와 중소기업에게 개선과 활력을 부여하는 것이 의회의 정책이며 이 법의 목적임을 선언한다. 단, 이 정책은 민간기금의 최대한 참가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이 법의 규정들은 이 규정에 의하여 제공되는 자금의 지원이 국가의 어느 지역에 있어서도 실업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되도록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입법취지이다.

이 법에 의한 재정지원부여에 있어 우선권은 미국에서 생산되는 설비와 시설을 대여받거나 구입하는 중소기업에게 주어져야 하며 이와 같은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은 당해 설비와 시설을 지속적으로 대여하거나 구입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의회의 입법취지이다.

제662조 정 의

이 장에 있어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1) "청"이라 함은 중소기업청을 말한다.
- (2) "청장"이라 함은 중소기업청장을 말한다.
- (3) "중소기업투자회사", "회사" 및 "허가를 받은 자"라 함은 중소기업청에 의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운영을 허가 받고 이 법의 제681조에서 정한 허가를 받은 기업을 말한다.
- (4) "주"는 각각의 주, 미국의 영토와 속령, 푸에르토리코연방 그리고 컬럼비아 특별구(District of Columbia)를 포함한다.
- (5) "중소기업체"는 중소기업법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다만 이 법의 목적상 모험투자자본회사, 투자회사(중소기업투자회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 복지보험 또는 연금, 또는 신탁, 기금 또는 연방소득세로부터 면제되는 기부

금은 ---

- (A) 독립적으로 소유되거나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영업을 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 (B) 어떤 영업행위가 중소기업법의 제3(a)(2)조에 따라 정해진 규격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서는 안된다.
 - (C) 어떤 중소기업체가 중소기업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서는 안된다.
- (6) "개발회사"는 당해 회사의 영업지역내의 중소기업체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주법에 의하여 법인체로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 (7) "허가서"는 이 법의 제68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이 발급한 허가서를 말한다.
- (8) "정관"은 법인체를 위한 법인의 정관 그리고 다른 기업체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고 있는 기능적으로 동등한 문서 또는 다른 유사한 문서를 말한다.
- (9) "민간자본"은
- (A) 다음의 총액을 말한다.
 - (i) 주식회사허가를 받은 자의 납입자본과 납입잉여자본, 합명회사허가를 받은 자의 출자조합원의 출연자본, 또는 유한책임회사허가를 받은 자의 출자조합원의 주식투자
 - (ii)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자로부터의 허가받은 자의 자본에 기부하기 위한 납입되지 않은 수권자본, 다만 그 납입되지 않은 수권자본은 형평기금을 위한 요청에 관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민간자본으로 계산될 수 있지만 형평기금은 그러한 수권자본을 기초하여 조성될 수 없다.
 - (B) 다음 각 호를 포함하지 않는다.
 - (i) 허가받은 자가 다른 재원으로부터 차용한 자금
 - (ii) 형평기금을 발행하여 획득한 자금
 - (iii) 연방정부,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 또는 어떤 다른 정부기관 또는 정부대행기관으로부터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획득한 자금, 단 다음의 자금을 제외한다.
 - (I) 1987년 10월 1일 이전에 연방의 특허 또는 정부출연기업으로

- 설립된 기업의 영업이익으로부터(정부에 의한 전용은 제외한다)
획득한 자금
- (II) 근로자복지기금 또는 연금으로부터 투자된 자금
- (III) 자격을 갖춘 비영리자금(자격을 갖춘 비민간자금의 투자자들이
경영진, 이사회, 일반합자자 또는 허가받은 구성원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
- (10) “형평기금”은 다음을 포함한다.
- (A) 중소기업청에 의하여 매입되거나 보증된 사채
 - (B) 중소기업청에 의하여 매입되거나 보증된 이익배당주식
 - (C) 1995. 10월 1일 현재 공모된 우선주
- (11) “제3자 채무”는 중소기업청에 대하여 지는 채무부담이 아닌 차용된 금전
에 대한 채무부담을 말한다.
- (12) “영세기업”은 당해 회사의 관계회사와 함께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소기
업체를 말한다.
- (A) (i) 당해 회사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당시 순자산
가치가 6,000,000달러 이하의 기업체
 - (ii) 당해 회사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당시 직전 2년
간의 평균순수입이 연방소득세 부과후 2,000,000달러를 이하의 기업
체(이월손실금을 제외한다)
 - (B) 기본적으로 당해 소기업체가 관련된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청이
정한 표준산업분류규모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체
- (13) “유자격 비민간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 (A) 당해 자금을 “민간자본”이라는 용어의 정의에 포함하도록 명백히 규정하
고 있는 법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이 아닌 연방정부부처에 의하여 1982
년 8월 16일 또는 그 이전에 신청자 또는 허가받은 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투자된 자금
 - (B) 당해 자금을 “민간자본”이라는 용어의 정의에 포함하도록 명백히 규정하
고 있는 법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이 아닌 연방정부부처에 의하여 1992
년 9월 4일 또는 그 이전에 신청자 또는 허가받은 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투자된 자금
 - (C)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주 또는 지방단체(이들 단체에 의하여 확대된 보

- 증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신청자 또는 허가받은 자에게 투자된 자금으로 당해 신청자 또는 허가받은 자의 민간자본의 38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총액
- (14) “근로자복지기금” 및 “연금”은 1974년 퇴직근로자수입보장법의 제3조에 있어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 (A) 당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 또는 민간의 연금 또는 퇴직보험
 - (B)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연방정부, 주 또는 정치적 하부단체 또는 연방정부, 주 또는 정치적 하부단체의 부처나 대행기관에 의하여 설립되어졌거나 유지되는 당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유사한 보험
- (15) “사원”은 유한책임회사로 허가받은 자와 관련하여 소유권의 보유자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자격이 허용된 자를 말한다.
- (16) “유한책임회사”는 중소기업청에 의하여 승인된 州 유한책임회사법에 따라 조직되어지고 운영되는 기업체를 말한다.

제2절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투자국

제671조 설치; 차장; 임명 및 보수

중소기업청에 중소기업투자국을 둔다. 중소기업투자국은 차장이 이를 관장하며, 차장은 청장에 의하여 임명되고 중소기업청의 기타 차장에 대하여 법률로 정한 비율로 보수를 받는다.

제672조 삭제

제3절 중소기업투자회사

제681조 조직

(a) 주법에 의한 조직 및 설립, 상속기간, 사업지역

중소기업투자회사는 오로지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된 기능을 수행하고 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주법률에 의하여 조직 및 허가된 법인체, 유한책임회사, 또는 유한합명회사이어야 하며, 법인체의 경우 주주에 의하여 보다 빨리 해산되지 아니하는 한 30년간 상속권을 보유하며, 유한 합명회사의 경우 10년간 상속권과 그러한 기능과 활동을 하는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권한을

보유한다. 회사의 사업지역 및 지점 또는 대리점의 설립(정관에 의하여 승인된 경우)은 중소기업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b) 법인체의 정관: 승인

중소기업투자회사의 정관은 일반적으로 당해 회사의 설립목적과 명칭/사업을 수행하는 지역, 본사의 위치 및 자본주식의 액수와 종류를 명시하여야 한다. 정관은 이 법과 불일치하지 않는 것으로서 회사가 사업의 규제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보는 기타 규정을 포함할 수 있다. 정관 및 수시로 채택된 정관의 개정은 중소기업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c) 허가증의 발급

(1) 신청서의 제출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투자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허가의 신청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문서들을 포함하여 서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절차

(A) 지 위

이 장에 따른 신청서를 처음 받은 후 90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은 상세한 신청서의 처리현황을 포함하는 서면 보고서와 신청서의 보관을 위해 남아 있는 필요사항을 신청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B) 승인 또는 불승인

이 장에 따라 그리고 규칙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할 수 있는 요건에 따라 모든 요건을 구비하여 제출된 신청을 받은 후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은

(i) 이 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을 승인하고 신청자에게 운영을 위한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ii) 그렇지 않은 경우 신청의 승인을 거부하고 승인거부의 사실을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고려사항

이 장에 따른 신청을 심사하고 처리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청장은

(A) 다음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i) 신청자가 이 법의 제682조 제(a)항 및 제(b)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ii) 신청자의 경영이 자격을 갖추었는가 그리고 지식, 경험 및 이 법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었는가

(B)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i) 신청자가 영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지역내의 중소기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필요성과 중소기업의 이용가능성

(ii) 신청회사의 소유주와 경영에 대한 일반적인 영업평판

(iii) 적절한 수익성과 재정적 건전성을 포함하여 신청자의 성공적 운영의 가능성

(C) 형평기금의 객관적 부족 또는 이용곤란성을 고려하여서는 안된다.

(4) 예외

(A) 총칙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청장의 재량권범위내에서 그리고 특별한 상황과 상당한 이유의 제시에 근거하여 다음의 신청자에 대하여도 신청을 허가하고 이 장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다.

(i) 3,000,000달러 이하의 민간 자본을 갖고 있는 신청자

(ii) 신청자가 이 법의 제682(a)조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에 의한 허가증을 다른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자

(iii)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수익적인 운영과 이 법의 제682(a)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당한 수준의 민간자본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시간계획 등 실행가능한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신청자

(B) 형평기금 - 이 항에 의하여 규정된 예외에 따라 허가된 지원자는 지원자가

(i) 1997년 중소기업재권한부여법이 제정된 후 180일 이내에 허가를 위한 지원신청을 하지 않는 한,

(ii) 허가받은 자에 의하여 도움을 받지 못하는 주에 위치하지 않는 한, 그리고

(iii) 제302(a)조의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제302(b)조에 의하여 이용가능한 형평기금의 1개 묶음(tier)으로 제한되는데 동의하지 않는 한 제302(a)조의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허가받은 자로써

형평기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

(d) 삭제

(e) 수수료 ---

(1) 총칙 --- 중소기업청은 이 법에 의해 중소기업투자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허가의 각 신청자가 지불해야 할 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2) 자금의 사용 --- 이 항에 의하여 징수된 수수료는 ---

(A) 중소기업청의 인건비와 비용을 위한 계정에 예치되어야 하며;

(B) 허가심사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경우에만 전용을 허용한다.

제682조 요구자본

(a) 총액

(1) 총론

제(2)항에 정하는 외에는 각 허가받은 자의 민간자본은 다음의 금액보다 많아야 한다.

(A) 5,000,000달러 또는

(B) 이 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에 의하여 매입되거나 보증될 이익배당주식의 발행권한을 위임받았거나 권한위임을 요구하는 각 허가받은 자와 관련하여서는 10,000,000달러

(2) 예외

중소기업청장이 그와 같은 조치가 불합리한 채무불이행의 위험 또는 연방정부에 대한 손실을 발생시키거나 손실의 원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청장의 채량권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특별한 사정 및 선의의 입증을 근거로 하여 중소기업청에 의하여 매입되거나 보증되어질 이익배당주식의 발행권한을 위임받았거나 위임받기를 요구하는 허가받은 자의 5,000,000이상 10,000,000달러 이하인 민간자본을 허용할 수 있다.

(3) 충분조건

제(1)항의 요건 외에 중소기업청장은

(A) 각 허가받은 자의 민간자본이 정관에 따라 건전하고 수익성있게 운영될 것인지 그리고 적극적이고 신중하게 관리될 것인지에 관한 합리적인 기대를 보증하기에 충분한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B) 허가받은 자가 허가를 받기에 앞서 그리고 자금지원에 관한 요청에 대한 승인에 앞서 당해 회사의 이자부 채무에 대하여 정기적인 상환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고 당해 회사가 고려하고 있는 투자로부터 얻을 것으로 예상하는 수입, 당해 회사의 소유주와 경영자의 경험, 법인체로서 당해 회사의 역사 그리고 당해 회사의 재정적 자원을 참작하여야 한다.

(4) 자본요건으로부터의 예외

중소기업청장은 다음의 경우 채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 편의 제681조 제(c)항과 제(d)항에 따라 1996년 9월 30일 이전에 허가된 제(1)항의 자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허가받은 자에 대해 형평기금을 승인할 수 있다.

(A) 1996년 9월 30일 이후 서면으로 공인된 허가받은 자가 자금지원총액의 50% 이상을 영세기업에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B) 중소기업청장이 당해 조치가 연방정부에 대한 비합리적인 채무불이행 또는 손실을 발생시키거나 그 원인이 되는지를 결정한 경우

(b) 은행 등에 대한 주식의 매도

제12편의 제1845조 제(a)(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투자회사의 주식은 국영은행에서 매입할 수 있고 연방준비은행의 기타 회원은행과 보험에 가입한 비회원은행에서 적용할 수 있는 주법률에 허용된 한도까지 매입할 수 있다. 다만, 주식취득으로 당해 은행이 그 당시 소유하고 있는 중소기업투자회사의 주식의 총액이 그의 자본금 및 잉여금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소기업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c) 소유의 분산

중소기업청장은 1996년 9월 30일 이후 허가된 허가받은 자의 경영이 자금 관리에 있어 독립성과 객관성 및 허가받은 자의 투자와 운영에 대한 감독을 보증하는 등으로 당해 허가받은 자의 소유권으로부터 충분히 분산되어 있고 관계가 단절되어 있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683조 차입운영

(a) 채권의 발행권한

각 중소기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청이 정하는 일반조건 및 제한과 규칙에 의하

여 금전을 차용하고 사채권/약속어음 또는 기타 채권을 발행할 권한이 있다.

(b) 채무증서

중소기업투자회사의 설립 및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은 비용지출법(Appropriation Act)에서 승인받은 경우 그 투자회사에서 발행한 사채권과 배당주식을 매입하거나 그에 대한 원금과 이자의 적시(適時)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그와 같은 매입 또는 보증은 중소기업청이 발한 규칙에 따라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조건으로 중소기업청이 행할 수 있다. 연방정부는 이 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으로 지불해야 할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에서 매입한 사채권은 합당한 투자를 하고 투자회사의 재정적 건전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청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투자회사의 기타 사채권/약속어음 또는 기타 부채보다 후순위가 된다. 그와 같은 사채권은 발행기간이 15년을 초과할 수 없고 당해 사채권의 평균 만기일에 비교하여 만기일까지 잔여기간이 남아있는 연방정부의 미결제 시중채권의 현평균거래수익을 고려하여 재무장관에 의해 결정되고 매년 중소기업청에 납부되어지거나 중소기업청이 보유하고 있는 1퍼센트의 추가비용 외에 1퍼센트의 8분의 1에 가장 가깝게 조정된 비율보다 높은 비율의 이자가 붙는다. 사채권과 배당주식은 중소기업청이 정하는 다른 조건을 포함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제한에 따른다.

(1) 중소기업청에 의하여 보증되어질 수 있으며 이 법의 제681조 제(c)항에 따라 허가된 회사에 의해 결재되지 않은 사채권과 배당주식의 총액은 당해 회사의 민간자본의 3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1993년 3월 31일 현재 당해 회사의 민간자본중 300퍼센트의 미결제 사채권을 갖고 있는 회사에게 초과부분을 선납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그러한 회사는 당해 만기사채에 대한 만기금액의 지급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지는 수익금을 갖는 추가적 사채권의 보증이나 배당주식의 보증을 신청할 수 있으나 새로운 사채권이나 주식의 만기는 2002년 9월 30일 이내이어야 한다.

(2) 1993년 3월 31일 이후 이 법의 제681조제(c)항에 따라 허가된 회사가 이용가능한 미결제 형평기금의 최대금액은 다음의 경우 당해 회사의 민간자본의 총액에 의해 정해진다.

(A) 당해 회사가 15,000,000달러 이하의 민간자본을 갖고 있는 경우,

- 형평기금의 총액은 민간자본의 30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 (B) 당해 회사가 15,000,000달러 이상 그러나 30,000,000달러 이하의 민간자본을 갖고 있는 경우, 형평기금의 총액은 45,000,000달러에 15,000,000달러를 넘는 민간자본의 200퍼센트 더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C) 당해 회사가 30,000,000달러 이상의 민간자본을 갖고 있는 경우, 형평기금의 총액은 75,000,000달러에 30,000,000달러를 초과하지만 추가적으로 15,000,000달러를 넘지 않는 민간자본의 100퍼센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D) (i) (A), (B) 및 (C)항의 총금액은 노동부의 노동통계국에 의해 작성되는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되어야 한다.
- (ii) 1997년 중소기업재권한법의 제정일 이후에 이 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최초의 조정은 1993년 3월 31일 이후의 상승분만을 반영하여야 한다.

(3) 상기의 총액 및 퍼센트 제한에 의하여 이 법의 제681조 제(c)항에 따라 허가된 회사는 미결제의 보증채무증서와 배당주식을 발행하고 보유할 수 있다. 다만 미결제 배당주식의 총액은 민간자본의 2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4) 형평기금의 최대누적총액

- (A) 총칙 --- 제(B)항에 정한 바를 제외하고, (중소기업청장에 의한 결정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되는 어떤 회사 또는 회사들에 발행된 미상환형평기금의 누적총액은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에 대응하여 연례적으로 조정된 금액으로써 90,000,0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 (B) 예외 --- 사례별적용의 원칙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청장은
- (i) 공동관리하에 있는 기업에 대하여 제(A)항에 따른 총액을 초과하는 형평기금의 총액을 허가할 수 있다; 그리고
- (ii) 채무불이행의 경우 중소기업청에 발생할 손실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전용하도록 결정한 부가적 기간과 조건들을 부과할 수 있다.
- (C) 다른 조항의 적용가능성 ---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의 결과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중소기업청장의 결정의 결과로 인한 것이든 총액에 있어 90,000,000달러를 초과하여 공동관리되는 기업 또는 기업들에 발행된 형평기금은 제(d)항의 규정에 따른다; 그리고

본 항에 있어서 위험투자자본이라 함은 중소기업청이 주식발행에 의한 자본 조달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결정한 보통주·우선주 또는 기타 종속 또는 비양도성의 조달된 자금을 포함한다.

(c) 제3자 채무

중소기업청장은 (1) 허가받은 자가 연방정부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의 불합리한 위험 또는 손실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제3자 채무를 발생시키는 미결제 형평기금을 갖도록 허용하여서는 안되며, (2) 규칙 또는 다른 방법으로 중소기업청장에 의하여 정해진 조건에 따라서만 당해 허가받은 자가 제3자 채무를 발생시키도록 허용할 수 있다.

(d) 필요한 보증

(1) 총칙 --- 중소기업청장은 형평기금신청에 대한 승인의 조건으로써 각 허가받은자에게 다음의 사항에 대한 문서보증을 요구하여야 한다.

(A) 형평기금이 90,000,000달러이거나 이하인 허가받은자에게는 허가받은자의 누적자금지원금액의 총액의 20%이상인 중소기업자에게 제공되어 질 것이라는 것;

(B) 형평기금이 90,000,000달러를 초과하는 허가받은자에게는 (A)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외에 90,000,000달러를 초과하는 형평기금의 전부 또는 부분으로 이루어지는 허가받은 자의 누적자금지원총액의 100%가 (제103조(12)에 정의된 바와 같이) 중소기업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2) 2중 허가받은 자 --- (중소기업청장이 결정한 바에 따라) 공동관리하에 있는 2중 허가받은 자는 이 조항에 따른 투지비율요건의 적용성과 준수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에 있어서는 단일 허가받은 자로 간주되어야 한다.

(e) 자본감소

이 법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제출한 형평기금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하기 전에 중소기업청장은 (1) 허가받은 자의 민간자본이 이 법의 제682조제(a)항의 요건을 충족하는가를 결정하여야 하며, (2) 허가받은 자의 자산의 성격, 당해 허가받은 자가 지고 있는 제3자 채무의 총액과 기간, 그리고 중소기업

청장에 의해 관련있다고 판단되는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허가받은 자의 민간자본이 추가적인 형평기금의 발행이 연방정부에 비합리적인 채무불이행의 위험이나 손실을 발생시키거나 다른 원인이 될 정도로 감소되어지지 않았는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f) 우선주의 상환 또는 재구입

법률상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1) 중소기업청장은 1989년 11월 1일 이전에 중소기업청에 우선주를 매도한 발행자에 대하여 다음을 포함한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한 후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재구입가격으로 당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의 금액을 중소기업청에 지급하도록하여 당해 주식을 회수하거나 재구입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A) 주식의 시가

(B) 발행자에게 제공되거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득의 가치

(C) 지급되고, 발생되고, 예상되어지는 배당금액

(D) 예상되는 상환금액에 대한 중소기업청장의 평가

(2) 우선주의 재구입으로 중소기업청이 수령한 금액은 자신의 누적자금지원금의 50% 이상을 영세기업에 투자한 허가받은 자에 대한 사채형평기금을 제공하기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g) 배당주식의 지급에 대한 보증과 구입권

중소기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에게 주식자본을 제공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은 상환가격의 지급을 보장할 권한이 있으며 이 법의 제681조 제(c)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배당주식에 대한 지급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고, 중소기업청을 대리하는 신탁 또는 공동기업은 당해 주식들을 매입할 권한이 있다. 이러한 보증과 매입은 중소기업청이 규칙에 의하여 정한 조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본 조에 있어서, (A) '배당주식'은 우선주, 우선적 합자회사주 또는 수입의 범위 내에서만 이자를 지급하는 사채권을 포함하는 다른 유사한 문서를 포함하며, (B) '우선적 지급금'은 주식의 배당금, 요건을 갖춘 사채권의 이자 또는 수입의 범위에서만 지급되는 우선적 합자회사주의 우선적 이익을 포함한다. 이 항에 따른 보증배당주식은 다음의 제한과 중소기업청이 정하는 다른 제한에 따라야 한다.

(1) 배당주식은 발행된 날로부터 15년 이내에 최초 발행가격의 100퍼센트

와 동등한 금액에 우선적 지급으로 발생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상환되어야 한다. 다만 당해 주식이 상환될 때에 예정에 따른 것이든 아니든 그 보다 이전이건 간에 발행회사가 (A) 본 조의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발생한 모든 우선적 지급금의 전액을 지급하지 못하고, (B) 제(11)항에 따른 수익금의 배당에 따라 변동되는 모든 투자를 매도하지 않았거나 처분하지 않은 경우, 발생한 그리고 미지급된 우선적 지급금을 지급할 당해 회사의 의무는 지속되며 그러한 투자의 처분으로부터 실현된 이익이 있는 경우 실현된 이익으로부터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처분으로 아무런 실현이익이 없는 경우 발생한 그리고 미지급된 우선적 지급금을 지급할 당해 회사의 의무는 소멸한다. 다만, 발생한 우선적 지급금을 전액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투자의 실현되지 않은 가치증가금액까지의 합계를 중소기업청에 지급하지 않는 한 그 사이에 당해 회사가 그 투자의 현물배분을 해서는 안된다.

- (2) 배당주식에 대한 우선적 지급금은 중소기업청이 정한 바와 같이 발행회사의 이익배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보유이익에서 재무부장관이 당해 주식의 평균 만기일과 유사한 만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연방정부의 미결제 매매가능채무증서에 대한 현재의 평균 시장이익율을 고려하여 정한 1퍼센트의 8분의 1에 가장 근접하도록 조정되고 중소기업청에 납입되고 중소기업청이 보유해야하는 매년 1퍼센트의 추가적 수수료를 더한 이율로 우선적이고 누적적이며 지급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3) 당해 회사의 청산의 경우에 배당주식은 발행회사의 모든 다른 주식이익금이 발행하는 경우 모든 목적에 있어서 주식이익금에 대하여 최우선이어야 한다.
- (4) 이 법에 따라 배당주식을 발행하는 회사는 주식자본에 있어서만은 배당주식의 미결제 액면가치와 동등한 금액의 투자를 하거나 투자약속을 하여야 한다. 이 항에 사용된 바와 같이 "주식자본"은 보통주, 우선주 또는 양도되지 않고 이익의 범위에 따라 그리고 그 범위내에서 이자지급액을 제공하는 주식의 형태를 하고 있는 종속적 채무를 포함하는 유사한 증서를 말한다.
- (5) 이 법에 따라 배당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갖게되는 (이 법에 따라 획득한 형평기금이 아닌) 미결제 부채는 민간자본의 50퍼센트 이하 한도의

금액내에서 잠정적 부채가 된다.

- (6) 중소기업청은 (A) 당해 회사가 다시 자금지원된 사채권의 총액과 동등한 금액으로 투자된 미결제 주식자본을 갖고 있는 경우, (B) 중소기업청이 정한 조건에 따라 배당이익을 수령하였으나 제(1)항에 정한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배당주식의 이익금을 중소기업청에 의하여 보증된 미결제 사채권으로 인한 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 (7) 중소기업청이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1)항에 의한 배당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배당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경상비는 당해 회사의 결합자본의 연 2.5퍼센트를 넘어서는 안되며 당해 회사의 결합자본이 20,000,0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이에 125,000달러를 더한 금액을 넘어서는 안된다. 이 항에 있어서 (A) "결합자본"은 민간자본과 미결제형평기금의 누적합계를 말하며, (B) "경상비"는 급여, 사무실 관리비, 출장비, 업무개발비, 사무실 및 설비 대여료, 투자의 회계와 개발, 조사, 및 감독비용을 포함하지만, 일반적으로 모험자본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전문적인 외부자문가, 외부법률가, 외부감사에 의해 제공된 서비스비용 또는 모험자본회사의 설립과 감독의 통상적인 과정의 일부가 아닌 당해 회사의 계열사에 의하여 제공된 서비스비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 (8) 제(9)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합자회사로서, 또는 S조항 법인 또는 조세에 있어 면세업체로서 운영되는 경우 그리고 어떠한 누적되고 미지급된 우선적 지급금이 없는 경우, 당해회사는 출자조합원, 주주, 또는 사원의 최대납세채무를 넘지않는 금액내에서 출자조합원, 주주, 또는 사원에게 1년단위의 이익배분을 할 수 있다. 이 항에 있어서 "최대납세채무"는 회사의 당해 배당 직전 회계연도와 관련하여 회사에 의하여 신청되었거나 신청되어질 소득세반환에 있어 연방소득세과세를 위한 각 출자조합원, 주주 또는 사원에게 할당되는(만약 중소기업청이 납세자라면 주어질 중소기업청에 대한 할당금을 포함한다) 수입의 총액을 말하며, 어느 세율이 더 높은 간에 당해 반환에 포함되는 소득중에서 회사 또는 개인에 대한 통합한계최고연방 및 주 소득세율을 곱한다.

이 항에 있어서 '주소득세'는 당해 회사의 본점 소재지인 주의 소득세를 말한다. 중소기업은 또한 이 항에 따라 최대납세채무의 분기별 추정에 근거하여 분

기의 말에 배당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만약 한 중소기업이 어느 해에 있어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분기별배당을 하고 이러한 배당의 총액이 당해 회사가 어느 한해의 산정액에 근거하여 배당할 수 있었던 최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항에 의한 당해 회사에 의한 후속 배당은 배당된 초과금액과 동등한 금액에 의하여 감소된다.

(9) 제(8)항에 의한 분배를 한 후에 미지급 배당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는 누적되고 미지급된 우선적 지급금이 없거나 중소기업청이 제(11)항에 따라 전액지급한 모든 부과금의 총액이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의 잔액을 특히 중소기업청을 포함하여 회사의 투자자에게 제(11)항에 열거된 백분율로 배당할 수 있다.

(A) 배당하기로 한 날 현재 미지급 형평기금의 총액이 민간자본의 총액의 200퍼센트 이상인 경우, 배당된 금액의 총액은 형평기금과 민간자본의 비율에 따라 민간투자자와 중소기업청에 배당되어야 한다.

(B) 배당하기로 한 날 현재 미지급 형평기금의 총액이 민간자본총액의 100퍼센트 이상이지만 200퍼센트 이하인 경우, 배당되어야 할 총액의 50퍼센트는 중소기업청에 배당되어야 하며 50퍼센트는 민간투자자들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C) 미지급총액이 민간자본 총액의 100퍼센트 또는 그 이하인 경우, 그 비율은 제(11)항에 규정된 바에 따른 이익의 배당이어야 한다.

(D) 제(A)항과 제(B)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에게 배당된 금액은 제(11)항에 규정된 이익참가로서 우선 적용되어야 하며 잔액은 배당주식 또는 사채권의 원금에 대한 선납금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10) 제(8)항에 따른 배당을 한 후, 미지급 배당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는 누적되고 미지급된 우선적 지급금이 없는 경우 그리고 제(1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이 모든 부담금을 전액지급한 경우 특히 중소기업청을 포함하여 투자자에게 자본을 상환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른 배당은 배당하기로 한 날 현재의 민간자본과 형평기금의 비율에 따라 민간투자자와 중소기업청에 배당되어야 한다. 다만 미지급 형평기금의 총액이 민간자본 총액의 50퍼센트 또는 10,000,0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사례별 판단의 기초위에서 중소기업청이 10,000,000달러 이하로 미지급 형평기금의 총액을 감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배당을 요구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중소기업청에 대하여 어떠한 배당도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11) (A) 배당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회사의 민간자본과 다음에 따라 중소기업청에 의해 보증된 배당주식의 총액에 의해 결정된 당해 회사의 이익분을 중소기업청에 할당하는데 동의하여야 한다.

(i) 배당주식의 총액이 민간자본의 100퍼센트 또는 그 이하인 경우 당해 회사는 민간자본의 100분의 9로 나눈 배당주식의 총액의 비율로 산정된 백분율의 몫을 중소기업청에 할당하여야 한다.

(ii) 배당주식의 총액이 민간자본의 100퍼센트 이상이지만 200퍼센트 이하인 경우 회사는 다음에 따라 산정된 백분율의 몫을 중소기업청에 할당하여야 한다.

(I) 9퍼센트, 이에 더하여

(II) 민간자본총액을 뺀 배당주식을 민간자본으로 나눈 금액의 3퍼센트

(B) 이 항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i) 어느 경우에도 다음의 제(ii)항에 의해 요구되지 않는 한 본 항에 의해 요구되는 총 백분율은 12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

(ii) 배당주식이 매도된 날 현재 10년만기의 재무성채권의 이자율이 8퍼센트가 아닌 경우, 이자율이 8퍼센트 이상이든 이하이든 간에 중소기업청은 재무성채권의 이율과 동일한 백분율에 의하여 상기의 제(A)항에 특정된 이율을 조정하여야 한다.

(iii) 본 항은 당해 회사에 있어 중소기업청의 소유권을 창설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12) 회사는 당해 주식이 공개적으로 거래되고 매매될 수 있는 경우에는 현물배당주식을 발행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당해 회사는 당해 주식의 중소기업청 몫을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수탁인에게 처분을 위한 예치를 하도록 하거나 또는 중소기업청의 선택과 당해 회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 중소기업청은 당해 회사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의 몫으로 보관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당해 회사가 중소기업청의 몫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는 중소기업청의 몫을 매도하고 그 이익금을 신속하게 중소기업청에 송금하여야 한다. 이 항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수탁인'은 회소거래 주식의 마케팅에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자를 말한다.

(13) 영세투자회사를 위한 배당주식

(A) 총 론

제(B)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금법에서 승인된 배당주식의 연간 프로그램수준의 총액의 50퍼센트는 20,000,000달러 이하의 민간자본을 갖는 중소기업투자회사의 자금지원을 위하여 유보되어야 한다.

(B) 예 외

각 회계연도의 4/4분기 동안 중소기업청장이 20,000,000달러 이하의 민간자본을 갖고 있는 자격을 갖춘 신청자가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제(A)항에 의하여 유보된 주식의 프로그램수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2,000,000달러 이상의 민간자본을 갖는 자격있는 신청자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

(h) 배당주식에 의한 부담금액의 산정

배당주식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에 주어야 할 금액의 산정은 다음의 조건에 따른다.

- (1) 본 조의 제(g)항 제(11)호의 공식은 매년 산정되어야 하며 중소기업청은 당해 회사의 다른 투자자들과 동시에 자신의 배당이익의 분배를 받아야 한다.
- (2) 민간자본의 증가가 중소기업청에 제출되고 승인받은 제출된 사업계획내에서 고려되어져 있지 않는 한 공식은 민간자본의 증가를 원인으로 하여 수정되어서는 안된다.
- (3) 배당이 이루어진 후, 당해 배당에 있어 중소기업청의 몫은 재산정되거나 감축되어서는 안된다.
- (4) 당해 회사가 배당주식을 미리 납입하거나 상환하는 경우, 중소기업청은 상환 또는 선납일 현재 당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에 기인하는 이익의 배당에 대한 필요적 참가를 받아야 한다.
- (5) 회사가 1993년 3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허가받은 경우 당해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투자에 대한 이익참가로부터의 배제를 선택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중소기업청이 당해 사전투자에 기인하는 장래의 비용의 총액을 정해야 한다. 다만 당해 회사가 본 조의 제(g)항제(6)호의 위임에 따른 사채권에 대한 자금의 보충을 위하여 배당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이 항에 따른 현존 투자에 대한 이익의 배제를 선택할 수 없다.

(i) 형평기금수수료

중소기업청에 의하여 허가받은 자에게 승인된 형평기금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은 허가받은 자로부터 다음의 방식으로 허가받은 자에게 승인된 형평기금 표면금액의 3퍼센트를 환불되지 않는 수수료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청이 허가받은 자에게 당해 형평기금에 대한 약정을 한 날에 1퍼센트, 그리고 형평기금이 허가받은자로부터 인출된 날에 2퍼센트의 차액(또는 중소기업청에 의하여 어떠한 약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3퍼센트)

(j) 보조금비율의 계산

본 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이 수령하고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수료, 이자 그리고 이익은 이 장에 의해 매입되고 보증된 사채와 배당주식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제2편의 제661조제(a)항에 정의된 용어인) 비용을 상계하기 위해 관리예산실의 장이 정한 계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684조 중소기업체를 위한 주식자본

(a) 중소기업투자회사의 기능은 중소기업청의 규칙에 따라 중소기업투자회사가 결정할 수 있는 방법과 조건하에서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중소기업체에 대하여 주식자본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b)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체에 자본금을 제공하기 전에는 다음과 같이 행할 수 있다.

(1) 회사가 당해 중소기업체의 유일한 채무자가 되는 한 미납입된 부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기 위하여 증권 등을 매도할 것을 그 기업체에 요구할 수 있다.

(2) 중소기업청에서 발한 규칙에 정한 바를 제외하고 그러한 기업체는 먼저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기채를 하지 못하고 그 회사에 그러한 부채를 상환할 제1차 기회를 부여할 것에 동의한다.

(c) 삭 제

(d)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체인 중소기업체에 제공된 주식자본은 즉시 참가한다는 협정을 통하여 직접 또는 기타 법인체 또는 비법인체인 투자자와 협력하여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제685조 중소기업체에 대한 장기대부

(a) 회사는 법인 및 비법인인 중소기업체에 건전재정·성장·현대화 및 확장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 조에 정한 방법과 조건에 의하여 그 기업체에게 대부하여 줄 수 있다.

(b) 직접대부: 참가에 근거한 대부

이 조에 의한 대부는 직접적으로 또는 다른 대역자와 협력하여 즉시 또는 연기하여 참가한다는 협정을 통하여 법인 또는 비법인에게 행할 수 있다.

(c) 최고이자율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대부중 회사지분에 대한 최고이자율은 중소기업청이 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청은 또한 이 장에 따라 사채권을 발행한 회사에 대하여 매년도 결정된 미지급의 사채권에 대한 이자율표에 근거한 최대 이자율과 중소기업청에 의하여 승인된 당해 회사의 다른 비용을 더하여 부과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d)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대부의 만기일은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e)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대부는 상환을 보증하는데 적합하도록 확실한 가치가 있거나 담보가 설정되어야 한다.

(f)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체에 대부를 한 회사는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을 추가하기 위하여 그 대부의 만기일을 연장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그러한 연장 또는 갱신이 당해 대부의 조정된 청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제686조 단일기업에 대한 지원액의 제한

(a) 민간자본의 비율제한

중소기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원된 자금을 받고 있는 경우 그리고 지원금이 미지급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 중소기업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중소기업투자회사가 단일 기업을 위하여 취득한 채권과 증권의 총액 및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사에 의해 발행될 수 있는 대출약정의 총액은 당해 회사의 민간자본금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b) 삭제

(c) 이 조의 시행 이전에 초래된 대출약정에 대한 규정의 적용

1967년 개정된 중소기업투자법의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채권 및 증권과 관련하여, 그리고 당해 날자 이전에 발행된 법적으로 구속력있는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당해 시행일 직전에 효력을 가지고 있던 이 법의 규정은 계속 적용된다.

제687조 기업의 운영과 규제

- (a) 가능한 한 기업의 설립을 포함하여 중소기업투자회사의 운영은 은행 또는 기타 법인체 또는 비법인체인 투자자 또는 대부자와 협력하여 이를 행할 수 있고,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대부 또는 증권취득에 필요한 서비스 또는 제1차 조사는 수수료부담의 조건으로 그러한 은행 또는 기타 투자자나 대부자를 통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중소기업투자회사는 그러한 은행 및 기타 투자자와 대부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b) 자문서비스의 이용; 수탁 또는 재정대리인; 자금의 투자
중소기업투자회사는 실행가능한 경우에 공업 및 상업적 업무에 이용할 수 있거나 유용한 연방준비제도와 상무성의 자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당해 회사의 직원에 의해 수수료부담의 조건하에 컨설팅 및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어떤 연방준비은행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는 중소기업투자회사를 위한 수탁 또는 재정대리인으로서 행동하도록 권한의 위임을 받을 수 있다. 미납입재정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투자회사는 연방정부에 대한 직접채권 또는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연방정부가 보증하는 채권, 또는 그 계정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또는 연방예금 및 대출보험공사(FSLIC)에 의해 보증되는 기관에 의해 발행된 1년 또는 그 이내의 기간을 만기일로 하는 예치증서, 또는 그러한 기관의 예금계정에 있어 당해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자금을 투자할 권한을 위임받는다.
- (c) 중소기업청은 이 법률의 목적에 따라서 중소기업투자회사의 운영을 관리하는 규칙을 정하고 이 법률의 규정을 이행할 수 있다.
- (d) 중소기업투자회사가 이 법률의 규정 또는 이에 의하여 정한 규칙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로부터 얻은 모든 권리·특권 및 특전을 박탈할 수 있다. 그러한 회사의 해산을 선언하거나 권리·특권 및 특전을 박탈하기 전에 이 법률의 불이행 또는 위반 사항은 그 회사의 주요 사무소가 위치한 곳으로서 연방의 재판권에 속하는 지역, 準州 또는 기타 지역에서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소송의 재판권이 있는 연방의 법원에서 이를 결정한다. 그러한 소송은 중소기업청 또는 법무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연방이 이를 제기한다.

(e) 연방정부의 책임

이 법에 의하여 명백하게 금지되고 있지 않은 한 이 법의 어느 조항이나 다른 어느 법도 이 법에 의하여 운영되는 중소기업투자회사에 귀속되는 채권 또는 동 회사가 발행한 주식 또는 동 회사가 행한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연방정부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f) 이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기능·권리 및 의무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장 및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법에 정한 기능·권리 및 의무를 부담하며(이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그 이외의 권한을 추가하여), 적용할 수 있는 한 제642조 및 제645조의 규정은 이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청장 및 중소기업청의 기능에 이를 확대 적용한다.

(g) 중소기업투자활동에 관한 연례보고서

(1) 중소기업청은 제6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연례보고서에 이 법률에 의한 운영의 세부적인 설명을 기재한다. 당해 보고서에는 정부가 현 회계연도중 그 운영의 결과에 따라서 예상할 수 있는 총손실액과 더불어 전회계연도중 운영의 결과에 따른 정부의 손실액을 기재한다.

(2) 1967년 12월 31일까지의 연례보고서와 이 법률 제6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례보고서에 있어서 중소기업청은 다음 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설명을 기재한다.

(A) 중소기업투자회사에 대한 정부의 자금조달을 대체하는 그 회사의 민간자금조달을 장려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투자은행의 타당성과 조직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권고

(B) 국가의 전지역 및 모든 유자격의 중소기업체에 대한 중소기업투자회사 자금조달의 준비를 보증하는 중소기업청의 계획. 이 경우 상기 계획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한 목적을 포함한다.

(C) 중소기업투자회사프로그램의 착수 및 관리에 따른 정부기금의 보상을 극대화하고 그에 관한 법규상의 기준에 응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이 취한 조치

(D) 집행기관이 기업에 행한 연방지출에 대한 관리예산국의 회계. 이 경우 중소기업투자회사에 적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규모기준 이상 및 이하의 기업체에 대한 그 지출의 비율을 명시한다.

(E) 법인 및 비법인인 기업체로부터 징수한 정부의 조세소득에 대한 재

- 무성의 회계. 이 경우 중소기업투자회사에 적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규모기준 이상 및 이하의 기업체에 의한 그러한 소득원을 명시한다.
- (F) 개인 및 단체회사인 납세자에 대한 중소기업투자회사의 자금조달에 관련된 조세득실과 증액된 조세소득에 대한 재무성의 회계
 - (G) 중소기업투자회사의 운영을 개선·촉진하고 유자격의 중소기업체에 의한 그의 자금조달시설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추가조세유인책에 대한 재무성의 권고
 - (H) 연방증권법에 의하여 중소기업투자회사를 관리하는 규제요건을 간소화 및 최소화하고 증권거래위원회·중소기업청 및 기타 행정부의 기관간의 중복되는 규칙 및 관리권을 배제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에서 행한 조치를 열거하는 증권거래위원회의 보고
 - (I) 중소기업체의 증권시장 참가를 촉진하고 고정시키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의 보고
 - (J) 1940년 투자회사법의 요건에 대한 중소기업투자회사의 이행을 간소화하고 제26편의 제851조에 따라 규율되는 투자회사로서 과세되도록 선정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증권거래위원회가 행한 조치
- (3) 1993년 12월 31일의 연례보고서 및 이 편의 제639조제(a)항에 따라 작성된 이후의 연례보고서에 중소기업청은 다음과 관련된 전체적이고 상세한 설명 또는 계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 (A) 중소기업청이 허가한 중소기업투자회사의 수, 청산되어진 허가받은 자의 수 및 전년도에 허가를 반납한 허가받은 자의 수, 각자가 받은 정부형평기금의 총액 및 각자가 이용한 형평기금증서의 유형
 - (B) 전년도에 수령한 각 허가받은 자의 정부형평기금의 총액 및 각 허가받은 자가 이용한 형평기금증서의 유형
 - (C) 각 재정지원문서의 형식을 위하여 규모, 지리적 위치, 그리고 중소기업대출, 주식투자, 또는 양자 모두를 위해 재정적 지원증서로부터의 형평기금을 사용하고 있는 투자회사의 형평기금범위를 포함하여 재정지원을 이용하는 중소기업투자회사의 다른 특성
 - (D) 당해연도에 있어서 이용된 투자증서의 각 유형의 빈도 및 전년도와 당해연도의 비교
- (h) 적격성의 증명

(1) 중소기업체에 의한 증명

이 법의 제681조에 따라 허가된 회사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기 전에, 중소기업체는 당해 회사가 중소기업투자회사프로그램 또는 적용가능한 특정중소기업투자회사프로그램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문서로 증명하여야 한다.

(2) 투자회사에 의한 증명

이 법에 따라 중소기업체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이전에 이 법의 제681조에 따라 허가된 투자회사는 당해 회사가 중소기업체지원신청을 심사하였으며 모든 서류와 다른 정보가 신청자의 적격성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문서로 확인하여야 한다.

(3) 증명의 보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명은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기간동안 이 법의 제681조에 따라 허가된 투자회사에 의해 보관되어야 한다.

(i) 이자율

(1) 이 항의 목적은 중소기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체에 하는 장기대출과 주식자금의 계획적이고 필요한 절차를 촉진하는 것이다.

(2) 기업대출의 경우, 그러한 대출을 하는 중소기업투자회사는 허가받은 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대출을 규율하는 중소기업체의 규칙이 정하는 최고 이자율을(당해 규칙에 의해 정해진 주의 이자율과는 관계없이 정한다)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대출에 대하여 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3) 1980년 4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그리고 당해 법령이 채택되거나 또는 당해 증명이 이루어진 날 이전에 이행되는 대출약정에 따라 당해 주법령, 헌법 또는 다른 법령이 그 법이 채택되어지거나 또는 그 증명이 이루어진 날 또는 그 전후에 이루어진 대출에 우선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주가 법령을 채택하거나 주선거권자가 명백하게 그리고 당해 주가 이 항의 규정을 당해 주에서 이루어진 대출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 규정 또는 헌법 또는 다른 법령에 찬성하는 것을 증명하는 주법 또는 주 헌법규정은 1980년 4월 1일, 또는 그 전후에 이루어진 대출에 관해서는 제(2)항의 목적에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4)(A) 중소기업투자회사에 의한 대출에 관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

된 최고이자율이 당해 주법이 이 항의 목적에 대해 우선되어지는 경우 적용되는 주법에 의해 허용되는 이율을 초과하는 경우, 제(2)항에 의해 허용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율로 부과되는 (i) 대출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이자 또는 (ii) 대출에 근거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한 모든 이자의 대부분은 무효인 것으로 간주한다.

(B) 제(A)항에 의한 이자의 무효가 있는 경우와 관련한 대출의 경우에 당해 이자를 지급한 자는 그 대출을 한 중소기업투자회사로부터 그 대출에 근거하여 지급한 이자총액의 두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그 이자는 가장 최근의 이자지급 이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 법원에서 개시되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회수 되어질 수 있다.

제687a조 허가의 취소와 정지; 중지명령

- (a) 허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청이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 (1) 이 법의 규정 또는 중소기업청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한 규칙에 의하여 필요한 설명서에 고의로 허위설명을 한 때,
 - (2) 이 법의 규정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한 규칙에 의해 필요한 설명서에 설명을 행한 상황에 비추어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설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 (3) 이 법률의 규정을 고의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4) 이 법률에 의하여 승인된 중소기업청의 규칙을 고의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은 경우
 - (5)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이 발한 중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은 경우
- (b)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기타 사람이 이 법률의 규정 또는 중소기업청이 그에 의하여 발한 규칙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 법률 또는 규칙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행위를 하거나 행할 경우 중소기업청은 그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기타 사람에게 그러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그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기타 사람에게 이 법률 및 규칙의 이행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자제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또한 그 허

가를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명령대상자인 허가를 받은 자의 허가를 정지시킬 수 있다.

(c)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명령을 발하기 전에 중소기업청은 허가를 받은 자 및 기타 관계자에게 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발하지 아니한 이유를 설명하도록 명령을 내린다.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명령은 중소기업청이 주장하는 사실과 법률 및 청문회를 개최할 법적 권한과 관할에 대한 설명서를 포함하고, 명령에서 정한 시간에 중소기업청에서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것을 정한다. 청문회 또는 그의 포기 이후에 중소기업청은 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발한다는 전례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청의 사실인정 및 그에 대한 이유의 설명서를 포함시키고 명령의 발효일을 명시하는 명령을 즉시 내리고 허가를 받은 자와 기타 관계자에게 명령을 내리도록 한다.

(d) 증인의 소환, 장부와 서류의 제출, 사례비와 교통비, 강제
중소기업청은 소환장을 발부하여 미국의 어떠한 장소에서든지 증인의 출두와 증언 및 청문에 관한 모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에 소환된 증인은 그를 소환한 당사자로부터 미국의 법원에서 증인에게 지급되는 것과 동일한 사례비와 교통비를 지급받는다.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 중소기업청 또는 이에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증인의 출두와 증언 및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 미국법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 명령의 수정 또는 무효청원, 기록제출의 시기와 장소, 법원의 조치, 재심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이 내린 명령은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기타 명령의 대상자가 통보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그 허가받은 자의 주된 영업소의 미국순회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확정된다.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 중소기업청의 명령을 청원서에 기재된 방법으로 무효화 또는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그 항소법원의 서기에게 제출한다. 30일이 만료된 후에는 청원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정당한 이유를 명시하여 법원의 허락을 받아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법원서기는 즉시 청원서 한 부를 중소기업청에 송부하며 중소기업청은 그에 대하여 증명을 하고 취소된 명령을 기재한 기록의 사본을 법원에 제출한다.

그 기록을 제출하기 전에 중소기업청이 그의 명령을 전부 또는 일부 수정하

거나 무효화하는 경우 청원자는 중소기업청에 통보하고 법원이 정할 수 있는 시간 이내에 청원서를 수정할 수 있다. 재심을 위한 청원서의 제출은 중소기업청의 명령시행을 연기 또는 정지하지 아니하지만, 항소법원은 재량으로 청원의 청문과 결정시까지 명령의 시행을 전부 또는 일부 금지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법원은 중소기업청의 명령을 확정, 수정 또는 무효화할 수 있다. 법원은 적당하고 적절한 사건의 처리를 위해 추가증거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방법과 조건에 의하여 그러한 증거의 조사를 하기 위하여 청문회를 재개하도록 중소기업청에 명령한다. 중소기업청은 채택된 추가증거를 근거로 하여 사실에 대한 인정사항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추가증거를 기록하고, 자신의 수정된 또는 새로운 인정사실과 자신의 명령에 대한 수정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청의 명령에 대한 이의제기는 중소기업청에 제기하지 않는 한, 또는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그 합당한 이유가 없는 한 법원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중소기업청의 명령을 확인, 수정 또는 무효화하는 법원의 판결과 명령은 제28편의 제1254조에 정한 바와 같이 증명 또는 사건이송명령에 근거한 연방대법원의 재심관할권하에 놓여진다.

(f) 명령의 집행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령이 내려진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기타의 사람이 당해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기업청은 허가받은 자의 주된 영업소가 있는 순회지역구내의 연방항소법원에 명령의 집행을 신청하고 제소된 명령을 기재한 기록의 사본을 제출한다. 신청서의 제출에 근거하여 법원은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기타의 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보한다. 고려할 증거, 수반되는 절차, 그리고 법원의 재판관할은 명령의 무효화 또는 수정을 위하여 이 조의 제5항에 정한 바와 같다.

제687b조 조사 및 심문, 소환·선서·확인권, 법원의 보조, 심리의 담당, 보고서

(a) 위반의 조사

중소기업청은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다른 사람이 이 법률의 규정이 법률에 의한 규칙 또는 이 법률에 의하여 발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행위를 하였거나 행하려고 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사

를 할 수 있으며 어떠한 자가 조사받을 사항에 관한 모든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선서를 하거나 중소기업청에서 정한 바와 다른 방법으로 설명서를 제출하는 것을 허용한다. 조사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은 선서와 확인, 증인의 소환, 출두요구, 증거조사를 행하고 조사에 관련된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증인의 출두와 그러한 서류의 제출은 미국의 어느 장소에서든지 이를 요구할 수 있다.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이 완강하게 불응하거나 그에 대한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소기업청은 조사 또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거나 그 자가 거주 또는 사업을 경영하는 관할구역 내의 연방법원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증인의 출두와 증언 및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한다. 그 법원은 당사자에게 중소기업청의 출두, 명령을 받은 경우 기록의 제출 또는 조사중인 사항에 관한 증언을 요구하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법원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법정모욕죄로서 처벌할 수 있다. 그러한 사건에 있어서 모든 절차는 당사자가 거주하거나 그에게 판결을 할 수 있는 재판관할구역에서 이를 행할 수 있다.

(b) 각 중소기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청이 검사를 행할 자격과 검사수행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의 지원을 받고 중소기업청 투자국의 지시를 받아 실시하는 검사를 받으며 검사관의 보수를 포함하여 검사비용은 중소기업청의 재량으로 검사를 받는 회사에 이를 부과할 수 있고 그와 같이 부과된 때에는 그 회사가 이를 지급한다. 이 항에 의하여 징수된 수수료는 중소기업청의 인건비 및 비용을 위한 계정에 예치되어야 하며 심사비용 및 다른 프로그램 감독활동을 충당하기 위해서만 전용되는 것이 허용된다. 모든 회사는 중소기업청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이 요구하는 시기와 형식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청은 보고요건의 중복을 피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1940년 투자회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회사에 보고서제출을 면제할 권한이 있다.

(c) 중소기업투자회사의 검사

각 중소기업투자회사는 다음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어도 2년에 한번 세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중소기업투자회사가 합법적인 활동 및 이 법에 의해 고려된 활동에만 종사하였는가;

- (2) 중소기업투자회사가 금지된 이해의 상충관계에 연루되었는가;
- (3) 중소기업투자회사가 지원받는 중소기업에 대해 불법적 감독권을 획득하고 수행하였는가;
- (4) 중소기업투자회사가 5년 이상 중소기업에 투자하였는가;
- (5) 적용되는 제한규정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투자회사가 자기자본의 20퍼센트 이상을 개별 중소기업에 투자하였는가;
- (6) 중소기업투자회사가 재대출, 외국투자 또는 수동적 투자에 연루되었는가;
- (7) 중소기업투자회사가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율을 부과하였는가하는 사항;

다만, 중소기업청은 다음의 경우에 조사를 포기할 수 있다. (A) 그 회사에 의하여 발행된 채무증서의 총액과 상환기록, 당해 회사의 과거 운영경험, 과거 조사의 내용과 결과 그리고 당해 회사의 경영전문성 등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청이 재량으로 연기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1년간, 또는 (B) 그 중소기업투자회사가 소송에 연루되거나 법정관리하에 있는 동안 운영이 정지되었던 회사인 경우.

(d) 평 가

(1) 평가빈도

(A) 총 칙

각 허가받은 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1년에 2회 이상 또는 중소기업청장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대출과 투자에 대한 서면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형평기금의 미납금이 없는 허가받은 자는 중소기업청장이 다르게 결정하지 않는 한 평가서를 1년에 1회 제출하여야 한다.

(B) 구체적인 부정적 변화

대출과 투자에 대한 누적평가 또는 허가받은 자의 운영에 있어 구체적인 부정적 변화가 발생한 회계분기말 이후 30일 이내에 허가받은 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그러한 변화의 성격과 정도에 관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C) 독립적 증명

(i) 총 칙

각 회계연도에 1회 이상 각 허가받은 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중

중소기업청장에 의하여 승인된 독립적인 공인회계사에 의하여 감사된 자신의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ii) 감사요건

제(i)에 의하여 행하여진 감사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I) 이 조에 따라 요구되는 평가를 준비함에 있어서 허가받은 자에 의해 이용된 절차와 문서의 심사

(II) 그 평가가 허가받은 자에게 적용되는 다음의 제(2)항에 따라 정해진 평가기준에 일치되게 마련되었다는 독립적인 공인회계사에 의한 진술

(2) 평가기준

이 조에 따라 제출된 각기의 평가는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라 허가받은 자에 의해 마련되어야 한다.

(A) 중소기업청장에 의하여 확정되고 승인된 평가기준

(B) 허가받은 자의 비현금자산이 과대평가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적절한 보호수단을 포함한 평가기준

제687c조 금지명령 및 기타 명령

(a) 명령의 근거, 법원의 관할권

허가받은자 또는 다른 자가 이 법의 규정, 이 법에 의한 규칙 또는 이 법률에 의하여 발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하게 될 행위를 하거나 행하려고 한다고 중소기업청이 판단하는 경우에 중소기업청은 언제든지 연방지방법원 또는 연방의 관할권에 속하는 지역의 연방법원에 그 행위 또는 관행을 금지하는 명령 또는 그러한 규정·규칙 또는 명령의 이행을 강제하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당해 법원은 그 소송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며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기타 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였거나 하려고 한다는 것을 중소기업청이 제시한 때 항구적 또는 잠정적 금지명령·가처분명령 또는 기타 명령이 보증금없이 부과되어야 한다.

(b) 소송절차에 있어서 형평법법원으로서의 법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범위까지 허가를 받은 자와 위치에 관계없이 그 재산에 대하여 독점적 재판권을 가지며 법원은 그러한 소송절차에 있어서 소유된 재산을 법원의 감독하에 유지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수탁자 또는 관리인을 지명할 권리를 가진다.

(c) 중소기업청은 허가를 받은 자의 수탁자 또는 관리인으로 행동할 권한을 갖는다. 중소기업청이 요청한 즉시 법원은 그러한 자격으로 활동하도록 중소기업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특별한 관련사항으로 인하여 그러한 지정이 불공정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하다고 생각하여야 한다.

제687d조 상충적 이해관계

중소기업체, 중소기업투자회사, 그 주주, 출자자 또는 양자의 구성원 또는 이 법의 목적에 방해가 되는 상충적인 이해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투자회사의 임원, 이사, 주주, 출자자 또는 구성원 또는 (1) 중소기업투자회사의 임원, 이사, 주주, 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직접 또는 간접적, 재정적 또는 그 이외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자 또는 업체 또는 (2) 중소기업투자회사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재정적 또는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업체의 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규칙을 채택하여야 한다. 그러한 규칙은 이 조의 목적에 따라 필요한 공시(그 거래에 의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소재지의 공개를 포함한다)를 위한 적절한 요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87e조 허가를 받은 자의 이사와 임원의 직무정지

(a) 해임의사의 서면통지: 이유

중소기업청은 (1) 이사 또는 임원이 (A) 이 법, (B) 이 법에 의하여 발한 규칙 또는 (C) 최종적인 중지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2) 이사 또는 임원으로서 신용의무의 불이행행위를 구성하는 작위, 부작위 또는 관행을 고의로 행하고, 신용의무의 위반 또는 불이행이 그 이사 또는 임원의 개인적인 불성실에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 받은 자의 이사 또는 임원에게 해임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b) 행정소송절차의 종료시까지 직무정지

이 조 제(a)항에 정한 이사 또는 임원의 경우 중소기업청은 허가받은 자의 보호 또는 중소기업청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그 이사 또는 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허가받은 자의 사업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더 이상 참가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그러한 정지 또는 금지의 통지를 한 즉시 효력이 있고, 이 조 제(d)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소송절차에 있어서 법원에 의하여 연기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 제(a)항에 의하여 송부된 통지에 의한 행정소송절차의 만료시까지 그리고

중소기업청이 통지서에 명시된 책임을 처리할 때까지 또는 이사 또는 임원에게 해임 또는 금지명령을 내린 경우 그 명령의 발효일까지 유효하다. 그 통지서의 사본은 이해관계가 있는 허가받은 자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c) 공청회, 해임명령

이 조 제(a)항에 정한 바와 같이 이사 또는 임원의 해임의사에 대한 통지서는 그 이유가 되는 사실을 기재하고 그에 대한 청문회의 개최시간과 장소를 정한다. 그 청문회는 중소기업청이 (1) 그 이사 또는 임원의 요청과 제시된 정당한 이유로 또는 (2) 연방법무장관의 요청으로 보다 일찍 또는 늦게 일자리를 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통지후 30일 이상 60일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다. 청문회에 그 이사 또는 임원이 직접 출두하거나 정당하게 승인된 대표가 출두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임명령을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동의하는 경우 또는 청문회때에 작성된 기록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이 그 통지서에 명시된 이유중 어떠한 사항이 입증되었음을 발견하는 경우 중소기업청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해임명령을 발할 수 있다. 그 명령은 허가를 받은 자 및 관계 이사 또는 임원에 송부한 후 30일이 경과된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동의에 대하여 내린 명령으로서 명시된 시간에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그 명령은 중소기업청의 소송 또는 재심법원에 의하여 연기, 수정, 종료 또는 무효화되는 범위를 제외하고는 유효하다.

(d) 연방법원에 의한 정지 또는 금지의 연기

이사 또는 임원이 직무정지를 당하거나 이 조 제(b)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의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당한 후 10일 이내에 그 이사 또는 임원은 허가받은 자의 본사가 위치한 연방의 관할지방법원 또는 컬럼비아특별구의 지방법원에 이 조 제(a)항에 의하여 이사 또는 임원에게 송부된 통지서에 의한 행정소송절차의 완료시까지 그 정지 또는 금지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러한 법원은 그 정지 또는 금지를 연기하는 재판권을 갖는다.

(e) 불성실 또는 신용의무의 위반에 연루되어 중죄혐의를 받는 이사 또는 임원의 직무정지, 통지, 직무정지의 기간, 해임

허가를 받은 자의 이사 또는 임원이 불성실 또는 배임에 관한 중죄를 범하거나 이에 참가하여 연방검찰에 의하여 고발, 기소 또는 항소된 경우 중소기업청은 언제든지 그 이사 또는 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하여 직무정지를 하거나 허가받은 자의 사업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참가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그 통지

서의 사본은 허가받은 자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그 정지 또는 금지는 고발, 기소 또는 항소를 중소기업청이 최종적으로 처분하거나 종료할 때까지 유효하다. 그 이사 또는 임원이 그러한 위반행위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또는 그 판결에 대해 항소심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소기업청은 이사 또는 임원의 해임명령을 내리고 이를 통지한다. 그 명령서의 사본을 허가받은 자에게 송부하며 이에 따라 당해 이사 또는 임원은 그 허가받은 자의 이사 또는 임원직에서 면직된다. 무죄의 인정 또는 기타 기소사항에 대한 처분은 중소기업청이 이 조 제(a)항 또는 제(b)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사 또는 임원의 직무정지나 해임 또는 허가받은 자의 사업참가예의 금지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한다.

(f) 청문회, 절차, 결정의 형식 및 요건, 심사, 명령의 연기

(1) 이 조에 정한 청문회는 당사자가 다른 장소에서의 청문회 개최를 동의받지 못한 경우 연방재판관할지역 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주된 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에서 개최되고 제5편의 제5장의 규정에 따라서 이를 행한다. 청문회를 거친 후 그리고 중소기업청이 최종적 결정을 위하여 사건을 접수하였음을 당사자에게 통보한 후 90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의 결정(그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실의 인정을 포함한)을 내리고 각 당사자에게 이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명령을 발하고 송부한다. 그 명령에 대한 사법적 심사는 이 항에 정한 바와 같이 연방항소법원에 적절한 시기에 이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정해진 바와 같이 소송기록을 제출할 때까지 중소기업청은 통지에 근거하여 그리고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그 명령을 수정, 종료 또는 무효화할 수 있다. 그 기록의 제출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청은 법원의 허락을 얻어 그 명령을 수정, 종료 또는 무효화할 수 있다.

(2) 각기의 소송 당사자는 이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명령(관계이사 또는 임원의 동의를 얻어 발한 명령 또는 이 조 제(e)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한 명령 이외에)에 대하여 재심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명령이 송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의 명령을 수정, 종료 또는 무효화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허가받은 자의 주된 사무소가 위치한 연방순회항소법원 또는 컬럼비아특별구의 순회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 청원서의 일부는 법원서기가 즉시 중소기업청에

이를 송부하며 중소기업청은 제28편의 제2112조에 정한 바와 같이 소송기록을 법원에 제출한다. 그 청원서를 제출한 즉시 법원은 제(1)호의 마지막 구절에 정한 바를 제외하고 기록의 제출 즉시 배타적인 것으로서 중소기업청의 명령을 전부 또는 일부 확인, 수정, 종료 또는 무효화하는 재판권을 갖는다. 그 소송의 재심권은 제5편의 제7장에 정한 바와 같이 보유한다. 법원의 판결 및 명령은 최종적이다. 다만, 제28편의 제1254조에 정한 바와 같이 사건이송명령에 근거하여 대법원이 재심권을 행사하는 것을 예외로 한다.

- (3) 이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적 재심을 위한 소송의 착수는 특별히 법원에서 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한 중소기업청이 발한 명령을 연기하지 못한다.

제687f조 임원, 이사, 직원 또는 대리인의 불법행위와 부작위

- (a) 허가를 받은 자가 이 법률의 규정 또는 이에 의하여 발한 규칙의 조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에 대한 위반행위로 그 규정 또는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에 그러한 위법행위는 이를 전부 또는 일부 행하거나 행할 행위 또는 거래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정, 명령, 참여, 또는 야기, 권고, 지원 또는 교사하는 자의 행위 및 불법행위로 본다.
- (b) 허가를 받은 자의 임원, 이사, 직원, 대리인 또는 기타 그의 경영 또는 사업에 참가하는 자가 그의 신용의무를 위반하여 어떠한 행위를 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자가 그 결과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 또는 기타 손해를 입었거나 입을 급박한 위험상태에 있어야 한다.
- (c) 중소기업청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불법행위이다.
-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허가를 받은 자의 임원, 이사 또는 직원으로 취임하거나 그의 사업 또는 경영의 대리인 또는 참가자가 되는 경우
- (A) 중죄, 또는 불성실 또는 배임을 포함한 기타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
- (B)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이 있거나 사기 또는 배임을 포함한 행위로 인하여 관할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에 의하여 영구적 또는 잠정적으로 금지를 받은 자

-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전호에 정한 자격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
- (A) 중죄 또는 불성실 또는 배임을 포함한 기타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
 - (B)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이 있거나 사기 또는 배임을 포함한 기타 범죄로 인하여 관할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에 의하여 영구적 또는 잠정적으로 금지를 받은 자

제687g조 벌칙 및 벌금

(a) 보고의 위반

이 조 제2항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률 제687b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규 또는 특별보고서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발한 규칙 또는 서면지시를 위반하는 허가받은 자는 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1일당 100달러 이하의 민사상 벌금을 연방에 지급한다. 다만, 그러한 불이행이 정당한 이유에 기인하고 고의적인 태만에 기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에 정한 민사상 벌금은 연방에 납부하며 중소기업청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이를 반환받을 수 있다.

(b) 보고요건으로부터의 면제

중소기업청은 규칙에 의하여 또는 제1항의 불이행이 있기 이전에 명령에 의하여 청문회의 통지를 행한 후, 중소기업청이 공익 또는 중소기업청의 이익 보호와 일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계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하며 적합하다고 보는 조건에 따라서 일정기간 중소기업투자회사에 이 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다른 요구를 할 수 있다.

제687h조 재판권과 소송업무

이 법 또는 이에 의하여 공포된 규칙이나 명령에 따라서 설정된 책임 또는 의무를 강요하거나 그에 대한 위반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소송에 있어서 또는 형평법의 범위안에서 중소기업청이 이 법 제687조, 제687a조, 제687c조, 제687e조 또는 제687g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된 소송은 허가를 받은 자의 주무부서가 있는 관할지역에서 이를 제기하며, 그러한 사건에 있어서의 소송절차는 피고가 주사무소를 가지고 있거나 거래하는 지역 또는 어느 곳이든지 피고가 있는 지역에서 이를 행한다.

제687i조 삭제

제687j조 삭제

제687k조 연방재정은행에 의한 구매의 대상자격이 없는 보증채무

법의 어느 규정도 연방재정은행에게 1985년 9월 30일 이후의 다음 채무에 대하여 취득하도록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 (1) 그 채무에 대한 원금과 이자의 지급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이 장에 의해 보증된 채무
- (2) 제(1)항에 규정된 채무의 이자채무
- (3)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채무에 의해 보증되거나 실질적으로 그 가치의 전부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채무에 기인하는 채무

제687l조 신탁증서의 발행과 보증

- (a) 발행; 위탁 또는 공동출자금을 구성하는 사채 또는 참가주식

중소기업청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투자회사에 의하여 발행되고 중소기업청에 의해 보증되는 채무증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표시하는 신탁증서, 또는 중소기업투자회사에 의하여 발행되고 이 법의 제 683(g)항에 따라 보증된 참가주식을 발행할 권한을 갖는다. 다만, 그 신탁증서는 중소기업청에 의하여 승인된 위탁이나 공동출자금에 근거하고 지원되어야 하며 오로지 보증채무증서 또는 보증참가주식을 구성하여야 한다.

- (b) 보증기간과 조건; 원금과 이자의 지급

중소기업청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기간과 조건에 근거하여 이 조의 목적에 따라 중소기업청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하여 발행된 신탁증서의 원금과 이자의 시의적절한 지급을 보증할 권한이 있다. 이 보증은 보증채무증서의 원금과 이자 또는 신용 또는 공동출자금을 구성하는 참가주식의 상환가격 또는 그에 대한 우선적 지급의 범위에 한한다.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위탁 또는 공동출자금의 사채가 조기상환된 경우 또는 참가주식이 상환된 경우, 또는 채무증서의 채무불이행 또는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참가주식의 상환의 경우 신탁증서의 원금과 이자에 대한 적절한 지급의 보증은 조기상환된 채무증서 또는 상환된 참가주식 및 위탁 또는 공동출자금에 표시된 우선지급금의 원금과 이자 총액에 비례하여 감소된다. 조기상환 또는 채무불이행된

채무증서 또는 참가주식에 대한 우선적 지급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며 지급보증일까지만 중소기업청에 의하여 보증된다. 신탁증서의 기간 동안 모든 사채에 대한 조기상환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인한 상환 또는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공동출자금에 존재하는 모든 참가주식에 대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c) 연방정부의 신의와 신용

이 조에 따라 중소기업청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하여 발행된 신탁증서에 대한 보증에 따라 지급이 요구되는 금액의 지급은 연방정부가 신의와 신용을 갖고 보증한다.

(d) 수수료의 징수

중소기업청은 이 조에 따른 보증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이 항의 어느 내용도 중소기업청의 대리인이 이 조의 제(f)(2)호에 규정된 기능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에 의하여 승인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e) 대위변제권; 사채권 또는 참가주식에 있어서 소유권

(1) 중소기업청이 이 항에 의해 발행된 보증에 따른 청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에 의해 충족되는 권리에 대하여는 전부 대위된다.

(2) 어느 주 또는 지방의 법 및 연방법도 신탁증서가 발행된 위탁 또는 공동출자금에 존재하는 사채 또는 참가주식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이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못한다.

(f) 종합적 등록요구; 중개인 및 업자; 장부기입 및 기타 전자등록

(1) 중소기업청은 이 조에 따라 판매된 모든 신탁증서에 관한 종합적인 등록에 대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2) 중소기업청장은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청의 감독 하에 그리고 중소기업청을 위하여 이 법에 의하여 보증되는 채무증서와 참가주식에 의해 뒷받침되는 위탁 및 공동출자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연방채권에 있어 상업은행예금구좌 및 투자금의 유지를 포함한 이 항의 공동출자 및 종합적 등록기능, 그리고 그 공동출자를 촉진하기 위한 신탁증서의 발행을 중소기업청을 위하여 행하는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대리인은 연방정부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중소기업청이 판단한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권과 보증보험을 제공하여야 한다.

- (3) 모든 거래에 앞서 중소기업청장은 매도자가 이 항에 따라 발행된 신탁증서의 구매자에게 그 증서의 기간, 조건 및 이윤율을 공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 (4) 중소기업청장은 이 항에 따라 판매되는 신탁증서의 중개상과 업자들을 규제할 권한을 갖는다.
- (5) 이 규정의 어느 내용도 신탁증서의 장부기재 또는 기타 전자적 형식의 등록의 이용을 금지하지 않는다.

제687m조 보증서 및 신탁증서의 정기적 발급

중소기업청은 이 법의 제683조에 따른 보증과 제687i조에 따른 신탁증서를 매 6개월 이상의 정기적 간격으로 발행하여야 하며 그 보증 및 신탁증서의 수량과 금액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보다 단기간의 간격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제688조 삭제

제4절 주승인투자회사 및 주개발회사

제691조 삭제

제4-A절 보증

제A편 상업 또는 산업리스 및 자격을 갖춘 계약보증

제692조 상업 및 공업적 재산의 리스계약하에서 중소기업체에 의한 임대료지급 보증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권한

- (a) 다른 근거로부터의 보증이용의 금지; 유자격보증회사의 참가

중소기업청은 조치가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결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정한 바와 같은 조건에 따라서 중소기업체가 상업 및 공업적 재산의 리스계약을 행할 수 있도록 그 기업체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임대료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그러한 보증은 직접 또는 그러한 회사와의 참가협정을 통하여 유자격의 보증회사 또는 기타 유자격회사와 협력하여 이를 행한다. 다만, 전기의 권한은 다음과 같은 제한을 받는다.

- (1) (A) 신청인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보증이 합당한 조건에 의한 다른 방법

으로 가능한 경우, (B) 보증서를 발행한 중소기업체가 리스계약 및 조건을 이행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예측이 존재한다고 중소기업청이 결정하지 않는 한 중소기업청은 보증서를 발행하여서는 안된다.

(2) 중소기업청은 가능한 최대한도로 참가를 근거로 하여 유자격의 보증회사 또는 기타 회사와 협력하여 이 조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여야한다.

(b) 일률적 연간수수료; 진행비용

중소기업청은 이 조에 의한 보증의 부담을 위한 것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시간에 선불할 일률적인 연간 수수료를 정한다. 그 수수료의 액수는 가능한 한도까지 건전한 보험통계상의 관행과 절차에 따라서 이를 결정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그 액수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청의 보증분담에 의거하여, 보증된 리스계약하에서 지급할 연간 최소보증리스료의 연2.5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이유로 수립된 프로그램에 의한 경험상 정당화되는 것으로 입증된 최저 수수료를 정한다. 중소기업청은 또한 이 조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보증신청과 관련하여 발생한 행정비용을 지급하기 위해서 합리적이고 필요하다고 정한 것으로써 보증신청의 처리를 위한 일률적 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c) 조건부증서; 채무불이행; 추가적 재량규정

이 조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에 의한 리스계약하에서 임대료의 보증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장은 그러한 보증으로 책임지는 재정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임차인의 조건부증서에 기재되어 있고 (A) 임차인이 체불한 달의 임대료를 충당하기 위하여, 또는 (B) 임차기간중에 체불하지 아니하는 경우 리스계약에 의한 (발생된 이자를 포함한)임대료의 최종적 지불 신청을 위해 이용가능한 리스계약에 따라 요구되는 연간최소보증임대료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지불하는 것.

(2) 리스계약에 따른 체불발생에 근거하여 임대인은, 임대료지불에 대한 조건부증서에 사용가능한 기금에 대한 리스계약보증에 따른 청구를 하기 이전의 조건으로, 리스계약에 의하여 다른 유자격임차인에게 담보된 상업 또는 공업적 재산을 재리스하여 쉼 期間을 활용하여 손실을 제거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그러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그

러한 조건부증서의 기금이 소모되기까지는 보증에 의한 지불요구를 하거나 지급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

- (3) 리스계약의 보증인은 채불되어 있는 임대료를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에 따라 지급받는 임대인의 승계인이 되는 것.
- (4) 이 절의 목적과 불일치하지 아니하는 기타 규정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그의 재량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

제693조 대부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권한, 신규리스계약을 통한 채무의 청산, 전대(sublease)의 이행, 리스의 양도

이 법 제671조에 의하여 중소기업청 및 청장에게 부여된 권한의 제한없이 중소기업청 및 청장은 이 절에 의하여 부여된 권능, 권한 및 의무를 행함에 있어서 모든 권한을 가지며 대부에 의하여 이 법 제634조제(b)항에 정한 동일한 조건에 따른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의 채무청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른 개인, 회사, 기관 또는 기타 단체와 전대, 리스계약의 양도 및 신규차용계약을 행하는 권한을 포함한다.

제694조 삭 제

제694-1조 오염통제시설의 설계 또는 설치

(a) 정 의

이 조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오염통제시설”은 오염물질, 폐기물, 쓰레기 또는 폐기열을 제거, 변화, 저장함으로써 소음, 대기 또는 수질 오염을 방지, 축소, 약화, 또는 통제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중소기업이 재량에 따라 결정한 (동산 및 부동산) 자산을 말하며 중소기업청이 정한 그 (동산 및 부동산) 자산은 고체 및 액체 폐기물의 수집, 저장, 처리, 활용, 가공, 또는 최종적 처리를 위하여 이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 (2) “사람”은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 회사, 조합, 상사, 합작사업, 사회단체, 합자회사, 주, 준주 및 연방의 소유재산, 또는 이들의 하부기관, 그리고 컬럼비아특별구를 포함한다.
- (3) “자격있는 계약”은 리스, 하위리스, 대출협정, 할부매매계약, 또는 유사한 문서로서 중소기업체와 개인 사이에 체결된 것을 말한다.

(b) 재정적 불이익, 중소기업청에 의한 지불보증, 제한과 한계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체가 오염통제시설의 계획, 설계 또는 설치와 관련하여, 또는 (주, 주정부의 하부기관, 또는 다른 공공단체에 의해 발행된 수익채권의 방법에 의한 재정마련을 포함하여) 그를 위한 재정마련과 관련하여 운영상 또는 재정적 불이익을 입거나 입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자격있는 계약하에서 임차료 또는 다른 금액의 지급을 보증한다. 그러한 보증은 직접적 또는 자격있는 보증회사 또는 다른 자격있는 회사와의 참가계약을 통해 협력하여 이루어지거나 효력을 갖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권한은 다음의 제한과 한계를 갖는다.

- (1) 반대되는 다른 법률, 규정, 또는 규칙 또는 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오염통제시설 또는 자산의 경우에 인정된 보증은 그 자산이 보유자에게 연방소득세의 과세로부터 면세되는 이자를 제공하는 산업수익증권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익금의 이용을 통해 획득된 경우에 발행된다.
- (2) 그러한 보증은 자격있는 계약에 따른 지불금액의 총액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연방의 전적인 신의와 신용채무이어야 한다.
- (3) 보증을 받은 중소기업체가 자격있는 계약의 합의사항과 조건을 이행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존재한다고 중소기업청이 결정하지 않는 한 중소기업청은 어떠한 보증도 발행하여서는 안된다.

(c) 일률적 연간수수료, 수속료, 지급의 시기와 조건, 정기적 심사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청장에 의해 정해질 수 있는 시간과 조건으로 지급되도록 이 조에 따라 발행된 보증에 대하여 일률적인 연간수수료를 정한다. 수수료는 중소기업청이 합리적이고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금액으로 정해져야 하며 프로그램에 따른 경험상 정당화되는 가장 낮은 수수료가 시행되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적 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어느 경우에도 그 연간 금액은 이 조에 의하여 보증된 자격있는 보증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연간최소보증임차료의 1퍼센트 이상 그리고 3.5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중소기업청은 또한 보증신청의 진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행정적 비용을 지불하기에 합리적이고 필요하다는 중소기업청장의 결정에 따라 이 조에 따른 보증신청의 진행을 위한 일률적 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d) 중소기업청의 요구사항, 조건부증서, 채무불이행, 재량규정

이 조에 의해 부여된 권한에 따른 자격있는 계약에 의한 임차료의 보증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장은 그러한 보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이 조에 따라 보증이 발행되고, 조건부증서에 포함되어 있으며 (A) 임차인이 체불중인 달에 발생하는 임차료를 충족하기 위해서, 또는 (B) 자격있는 계약의 기간동안 체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자격있는 계약에 따른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임차료의 최종적 지급을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는 연간 평균지불금의 4분의1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지급할 것.

(2) 자격있는 계약하에서의 체불발생에 근거하여 임대인은, 임대료의 지불을 위해 사용가능하도록 한 조건부증서상의 기금에 대한 자격있는 계약 보증에 따른 청구를 이행하기 이전의 조건으로, 자격있는 계약에 의하여 다른 유자격임차인에게 담보된 상업 또는 공업적 재산을 채리스함으로써 30 期間을 활용하여 손실을 제거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그러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조건부증서의 기금이 소모되기까지는 보증에 의한 지불요구를 하거나 지급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

(3) 자격있는 계약의 보증인은 체불되어 있는 임대료를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에 따라 지급받는 임대인의 승계인이 되는 것.

(4) 이 절의 목적과 불일치하지 아니하는 기타 규정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그의 재량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

(e) 보증의 양도

이 조에 의해 발행된 보증은 중소기업청의 허가와 함께 자격있는 계약에 따른 지급이 정당한 사람에 의해 양도되어질 수 있다.

(f) 이 법 제693조의 신청

이 법의 제693조는 이 조의 시행에 적용된다.

제694-2조 자격있는 계약보증을 위한 회전기금, 유휴기금의 투자

이 법의 제694-1조의 목적을 위해 회계연도의 제한없이 중소기업청장이 이용할 수 있는 회전기금으로서 보증을 위한 별도의 기금을 재무성에 설치한다. 금전, 자산 또는 이 법 제694-1조와 관련된 중소기업청장의 운영으로부터 중소기업청장이 획득한 자산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수령하는 모든 금액은 당해

기금에 예치될 수 있다. 이 법의 제694-1조에 의한 중소기업청장의 운영에 따른 행정비용을 제외하고 모든 비용과 지급금은 당해 기금으로부터 지급될 수 있다. 현재의 운영비용 또는 이 법에 따라 발생하는 청구금의 지급을 위해 필요하지 않은 기금의 자금은 채권 또는 다른 연방공채 또는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연방이 보증하는 공채와 채권에 투자할 수 있다. 단, 기금을 위한 원금으로 제공된 자금은 투자되어서는 안된다.

제2절 보증채권보증인

제694a조 정의

이 절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입찰보증금"이라 함은 입찰자가 낙찰을 받는 경우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리고 규정된 지급보증금과 이행보증금을 지급하는 계약에 있어서 조건으로 부과되는 보증금을 말한다.
- (2) "지급보증금"이라 함은 어떠한 자와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그에 대한 금액을 본인이 지급한다는 조건을 붙인 보증금을 말한다.
- (3) "이행보증금"이라 함은 조건에 따라서 계약의 본인이 완료한다는 조건을 붙인 보증금을 말한다.
- (4) "보증인"이라 함은 (A) 입찰보증금의 조건에 따라서 본인이 보증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금액의 총액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 (B) 이행보증금의 조건에 따라서 본인이 계약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조건의 이행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지는 자, 또는 (C) 지급보증금의 조건에 따라서 본인이 신속하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서에 정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노동과 재료를 공급하는 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D) 대리인, 독립적 대리인, 보증인, 또는 그러한 자를 위하여 대리할 권한을 위임받은 기타 회사 또는 개인을 말한다.
- (5) "채권자"라 함은 (A) 입찰보증금의 경우에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입찰을 요구하는 자, 또는 (B) 지급보증금 또는 이행보증금의 경우에 계약의 완료를 위하여 본인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지급보증금 또는 이행보증금에 대한 조건을 본인이 위반한 경우 보증인의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 (6) "본인"이라 함은 (A) 입찰보증금의 경우에 낙찰을 위하여 입찰하는 자, 또

는 (B) 채권자를 위한 계약을 완료하거나 그 계약에 대하여 타인에게 지급할 제1차 책임자와 그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지급보증금 또는 이행보증금의 조건에 따라서 보증인이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본인은 주계약자 또는 하청업자가 될 수 있다.

(7) "주계약자"라 함은 채권자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8) "하청업자"라 함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주계약자 또는 다른 하청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694b조 보증채권보증인

(a) 본인의 보증금위반으로부터의 손실에 대한 보증을 보증하는 중소기업청의 권한, 우선적 보증채권보증프로그램에의 참가

(1) 정해진 기간과 조건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청은 1,250,000달러 이내의 계약에 대하여 본인이 입찰보증금, 지급보증금, 이행보증금 또는 그에 부수되는 보증금의 조건위반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증인을 보증하고 보증약정을 할 수 있다.

(2) 그러한 보증과 약정의 기관과 조건은 중소기업청의 특정 보증인과의 경험에 근거하여 보증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

(3) 중소기업청은 더 이상의 행정적 승인없이 중소기업청의 보증을 받는 보증채권을 발행, 감독 및 보급하도록 보증인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4)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증이 발행되지 않는다.

(A) 보증채권의 본인이 되는 자가 중소기업체이어야 한다.

(B) 계약입찰자 또는 그 계약의 주계약자 또는 보조계약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요구되는 보증채권이어야 한다.

(C) 그러한 자가 이 조에 따른 보증없이 합리적인 기간과 조건으로 그러한 보증채권을 획득할 수 없어야 한다.

(D) 그러한 본인이 보증채권이 요구된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의 내용과 조건을 이행한다는 합리적인 기대가 있어야 하며, 연관된 위험과 보증인의 참가범위의 측면에서 그 보증채무증서의 기간과 조건은 합리적인 것이어야 한다.

(5) (A) 중소기업청은 제(3)항에 의해 위임된 우선적 보증채권 보증프로그램

램에 참가하는 보증인의 신청이 대하여 이 조의 (d)항에 따른 규칙에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B) 중소기업청은 채권보증권한의 일부를 축소하거나 우선적 채권보증프로그램에 있어 다른 보증에 의한 평균참가비율에 대비한 가장 최근 회계연도 4개 분기동안의 당해 보증의 참가비율에 근거하여 우선적 보증채권 보증프로그램에의 보증참가를 종료할 권한이 있다.

(b) 위반의 회피로부터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증보상

이 조의 (a)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에 의해 발행된 보증인에 대한 보증과 관련하여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이 조의 제(a)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에 의하여 보증된 채권의 조건에 대한 위반을 회피하거나 회피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당해 보증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은 보상을 동의할 수 있다. 다만,

- (1) 이 항에 따른 지급을 하기 전에 중소기업청은 당해 채권의 조건위반이 임박하였음을 먼저 결정하여야 한다.
- (2) 당해 보증인이 이 조 제(a)(3)항의 권한에 따라 참가하고 있지 않은 한 보증인은 이 항에 따른 지급을 하기 전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승인을 획득하여야 한다.
- (3) 중소기업청장이 계약위반의 회피 또는 그러한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입은 보증인의 손실이 불가피하고 합리적이라는 판단의 결과로서 더 많은 금액의 지급을 결정하지 않는 한 이 조에 따른 중소기업청의 지급금은 계약금액의 10퍼센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중소기업청은 이 조의 제(a)항에 따라 당해 보증인이 이용가능한 채권의 보증분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 조에 따라 보증인에게 지급하여서는 안된다.

(c) 책임의 제한

이 조에 따른 보증 또는 보상에 대한 약정은 다음의 총액을 보증인에게 지급하도록 중소기업청에게 의무를 부과한다.

- (1) 이 조의 제(a)(3)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의 보증에 속하는 채권의 발행권을 위임받은 보증인에 의해 발생한 그리고 지급된 손실금의 70퍼센트를 넘지않는 금액.
- (2) 채권의 발행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의 특별한 승인을 요하는 보증인의 경

우 발생하고 지급한 손실금의 9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중소기업청은 이 조의 제(d)항 또는 다른 항에 따른 중복 지급을 하여서는 안된다.

(3) 다음의 경우 채권의 발행에 중소기업청의 특별한 승인을 요하는 보증인의 경우 발생하고 지급된 손실의 90퍼센트에 동등한 금액

(A) 채권의 집행 당시 계약의 총금액이 10만달러 또는 그 이하인 경우 또는

(B) 이 법의 제637(d)조에 정한 사회적 및 경제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인 개인에 의하여 소유되고 감독되는 중소기업체에 발행된 채권.

(4) 이 조의 제(b)항에 따라 정해진 금액

(d) 규칙

중소기업청은 참가보증인에 대한 규칙을 제정하고 정기적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보증인에게 보증, 청구의 실행 및 손실비율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기준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e) 보증금의 상환, 조건

보증 또는 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이 조의 제(c)항에 정한 바에 따라 보증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중소기업청은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

(1) 사기 또는 중요한 허위진술에 의하여 보증 또는 약정을 획득하거나 그러한 상황이 적용된 보증금

(2) 채권의 집행 당시 1,250,000달러를 초과한 총계약금액

(3) 보증인이 보증 및 약정의 중요한 기간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보증인이 이 조의 제(d)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이 공포한 규칙을 위반한 경우

(f) 상환절차

중소기업청은 자신이 정한 기간과 조건에 따라 당해 보증인에 대한 이전 월간 지급금에 근거하여 매달 통지된 보증인이 지급한 손실금을 보증인에게 상환하고 그후 후속적 조정을 하기 위한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g) 감사

(1) 각 참가보증인은 중소기업청이 요구하는 회수 및 형식에 따라 중소기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중소기업청은 합리적인 때에는 언제나 참가보증인의 사무실에서 모든 서류, 문서, 장부, 기록 및 기타 중소기업청의 보증, 보증약정, 또는 이 조에 따른 보증인에 대한 상환 약정에 관련된 자료를 감사할 수 있다.

(3) 이 조의 제(a)(3)항의 권한에 따라 참가한 각 보증인은 중소기업청이 선정하고 승인한 감사관에 의하여 최소한 연1회 감사를 받아야 한다.

(h) 행정규정

중소기업청은 이 법을 신중하고 경제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기초 위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중소기업청이 결정하는 시기와 조건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수수료 및 보증인에 대한 수수료를 확정하여야 한다.

(i) 대출에 관한 중소기업청의 권한

이 법 제693조의 규정은 이 조의 시행에 적용한다.

제694c조 보증채권의 보증을 위한 회전자금

(a) 이 절의 목적을 위한 회전자금으로서 회계연도의 제한없이 중소기업청장이 이용할 수 있는 보증을 위한 별도 기금을 재무성에 설치한다. 이 절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운영으로부터 얻은 금전, 재산 또는 자산을 포함한 중소기업청장이 수령한 모든 금액은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행정비용을 제외하고 이 절에 의한 중소기업청장의 운영에 따른 모든 비용과 지급금은 기금으로부터 지급되어야 한다.

(b) 이 절에 의해 허가된 프로그램의 수행을 위한 기금에 전용되어질 수 있는 총액은 회계연도의 제한이 없다.

제5절 주 및 지역개발회사에 대한 대출

제695조 주개발회사

(a) 의회의 목적의 확인과 선언

의회는 이 절의 목적이 이 절에 의하여 허가된 개발회사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체를 위한 장기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도시 및 지역에서의 경제적 개발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 또는 보존하는 것임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b) 개발에 대한 대출상한

중소기업청은 이 절의 목적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개발회사에게 대출을

할 권한이 있다. 이 항의 이전에 선행된 기금은 당해 이율의 이자를 부담하는 개발회사의 채무로 전환되며 중소기업청이 정한 바에 따른 다른 조건을 포함하고, 다른 출처로부터 개발회사가 확보한 기금에 대한 개발회사의 이용과 투자에 관계없이 기금은 조기상환되어야 한다.

(c) 채무총액의 최고 상한액: 우선권

일정시기에 중소기업청이 이 조에 따라 주개발회사로부터 매입하고 미지급한 채무의 총액은 주개발회사가 다른 모든 출처로부터 차입한 총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조에 따라 주개발회사에 우선 지급된 기금은 이 요건이 중소기업청장에 의하여 포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처에 관계없이 1958년 8월 21일 이후 당해 회사에 의해 차입된 최우선권을 갖는 기금들과 동일한 기초위에서 취급되어야 한다.

(d) 지원자격

이 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개발회사는 기금이 조성될 계획이 최소한 다음의 경제적 개발목적의 하나를 지향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 (1) 당해 계획의 종료 이후 2년 이내 일자리의 창출 또는 당해 계획에 기인하는 일자리의 보호 또는 유지
- (2) 당해 지역 내에서 다른 업종개발을 자극하고, 당해 지역에 새로운 수입을 가져오거나 지역경제의 다양화 및 안정화속에서 그 지역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의 개선
- (3) 다음 공공정책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달성
 - (A) 상업구역의 재활성화
 - (B) 수출의 확대
 - (C) 소수자운영사업 개발의 확대
 - (D) 농어촌개발
 - (E) 기술첨단화, 계획설비현대화, 자동화전환 또는 수입대체를 포함한 경제경쟁력의 제고
 - (F) 방위산업을 포함하는 연방예산삭감에 의해 요구되는 변경
 - (G) 환경 또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연방강제기준 또는 정책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구조조정

만약 자격이 제(2)항 또는 제(3)항에 규정된 기준에 근거하고, 전체적인 개발회사의 투자목록이 일자리의 창출 또는 유지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그 계획은 중소기업청에 의해 전개된 일자리창출 또는 일자리의 보호 기준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

제696조 공장취득, 건축, 개조 및 확대를 위한 대출

중소기업청은 이 법 제695조에 따른 자신의 권한외에 주 및 지역개발회사에게 토지의 취득을 포함한 공장의 취득, 건축, 개조 및 확대를 위한 대출을 할 수 있으며, 그 대출은 즉시 또는 거치의 기초에 근거하여 참여한다는 합의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은행 또는 다른 대출기관과 협력하여 행하여 질 수 있다. 다만 전술한 권한은 다음의 제한과 한계를 갖는다.

- (1) 수익금의 이용 -- 대출금의 수익금은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확인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그리고 중소기업청에 의하여 승인된 건전한 사업을 위해서 당해 차용자에 의해서만 사용된다.
- (2) 이 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이 행한 대출은 각 기의 중소기업체에 대하여 750,000달러로 제한된다. 단 이 법의 제695(d)(3)조에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는 대출은 각 기의 중소기업체에 대하여 1,000,000달러로 제한된다.
- (3) 지원기준

(A) 총론

이 조 또는 이 법의 제697조에 의한 지원을 받는 개발회사는 중소기업청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요구되는 참가의 범위와 각 기의 경우 이용되어야 하는 납입자본금의 총액을 포함하는 중소기업청이 정한 기준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B) 지역투입기금

(i) 기금의 출처

지역으로 투입되는 기금은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다음으로부터 유입되어야 한다.

- (I) 주 또는 지방정부
- (II)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
- (III) 재단 또는 기타 비영리기관
- (IV) 이 항에 의한 권한을 갖는 단체를 통하여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체(또는 그 소유자, 주주 또는 계열회사)

(ii) 기관으로부터의 기금조달

제(C)항의 제(i), (ii), (iii)호에 따라 자금조달이 된 프로젝트의 총비용의 50퍼센트 이상은 제(i)호의 (I), (II), (III)에 정한 기관으로부터 조달되어야 한다.

(C) 중소기업체로부터의 자금조달

이 항에 의해 인가된 단체를 통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체(또는 그 소유자, 주주 또는 계열회사)는 다음을 제공하여야 한다.

- (i) 당해 중소기업체가 2년 또는 그 이하의 기간동안 운영되고 있는 경우 자금조달된 프로젝트의 총비용의 최소한 15퍼센트
- (ii) 당해 프로젝트가 제한적 또는 단일목적의 건물 또는 구조물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자금조달된 프로젝트의 총비용의 최소한 15퍼센트
- (iii) 제(i)호 및 제(ii)호에 정한 조건의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자금조달된 프로젝트의 총비용의 최소한 20퍼센트
- (iv) 기타 다른 모든 경우 개발회사의 재량에 따라 자금조달된 총비용의 최소한 10퍼센트

(D) 판매자 자금지원

판매자가 중소기업체에 의하여 보증된 사채에 대한 재산에 있어 판매자의 이익을 중요시하지 않을 경우 판매자에게 제공되는 자금지원은 (B)항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용될 수 있다.

(E) 담보화

중소기업에 의하여 제공된 담보는 일반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제공된 재산에 종속적 담보의 지위를 포함하여야 하며 신용결정에 있어 평가되어야 할 요소의 하나일 뿐이다. 추가적 담보는 만약 중소기업체가 사례별 판단의 기초 위에서 정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담보물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만 요구되어진다.

- (4) 당해 프로젝트가 새로운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합리적인 프로젝트의 성장이 지원받는 중소기업체가 3년 이내에 추가적인 공간을 필요로 하고 10년 이내에 그 추가공간을 완전히 활용할 것임을 증명한다면 전체 프로젝트의 33퍼센트까지 임차될 수 있다.
- (5) 리스의 제한 -- 만약 당해 중소기업이 이 조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리스의 실행이후에 프로젝트에 있어 공간의 총 60% 이상을 영구적으로 점유하고 사용하는 경우 제(4)항에 의하여 리스가 허용된 프로젝트의 어느 부분

에 추가하여 프로젝트의 20%를 넘지 않는 부분은 지원받는 중소기업에 의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임차인에게 리스되어질 수 있다.

제697조 개발회사 사채

(a) 보증, 중소기업청의 권한, 규제의 기간과 조건, 신의성실, 채무증서의 종속

(1) 이 조의 제(b)항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소기업청은 자격있는 주 또는 지역개발회사에 의하여 발행된 사채에 정한 바에 따라 모든 원금과 이자에 대한 시기별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2) 그 보증은 규칙에 따라 중소기업청이 적절하다고 정한 기간과 조건에 근거하여 행하여 질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청은 이 항의 제(b)(1)호에 따른 대출의 수익금으로 재원이 마련된 중소기업체의 소유권과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부, 모, 자녀, 배우자, 형제 또는 자매 등 어느 한 부류의 친척의 하나 이상이 중소기업체나 재산의 소유권을 갖고 있으므로 인해서 동일하지 않은 경우 그 보증의 발행을 거절할 수 없다. 다만, 중소기업청장 또는 그가 지명한 자는 그러한 소유권, 보증, 그리고 그러한 대출의 수익금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체에 이익이 되는지를 사안별판단의 기초에 근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이 항에 따른 보증금액에 대한 지급은 연방정부가 신의성실에 근거하여 서약한다.

(4) 이 항에 따른 보증에 관련하여 주 또는 지방개발회사가 발행한 사채는 중소기업청에 의하여 다른 채무증서 또는 약속어음, 또는 당해 회사의 기타 채무 또는 채권에 종속되어 질 수 있다.

(b) 법정 기간 및 조건

다음의 경우가 아닌 한 이 조의 제(a)항에 따른 채무증서와 관련하여 보증이 행하여져서는 안된다.

(1) 그 사채가 중소기업체에게 한 건 또는 그 이상의 대출을 하기 위하여 발행된 경우, 그 수익금은 이 법의 제696조에 정한 목적을 위하여 당해 회사에 의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2) 그 대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합리적인 조건으로 민간출처로부터 당해 회사에게 이용되어 질 수 없는 경우

(3) 그 채무증서의 이율이 이 법 제683(b)조의 목적을 위하여 재무성장관

이 정한 이율보다 높은 경우

- (4) 그 채무증서의 누적 총액이 그 사채로부터 얻어지는 수익금(그 대출의 행정비용에 따른 초과금을 제외하고)으로 행하여지는 대출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5) 그 수익금으로부터 행하여지는 대출의 총액이 당해 대출이 행하여진 프로젝트비용의 50퍼센트에 상응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6) 그 수익금으로부터 행하여지는 각 대출을 중소기업청이 승인한 경우
- (7) 그러한 채무증서의 수익금으로부터 행하여진 대출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은

(A) 다음의 항목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서 중소기업청에 의하여 매년 확정되는 금액내에서 차용자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수료의 평가 및 징수를 하며

(i) 대출의 미수잔액에 대하여 매년 0.9375%,

(ii) 이 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이 구입하고 보증하는 채무증서를 위한 비용을 0%까지 감소시키는데 필요한(1990년 연방신용개혁법의 제502조에 정의된 바에 따른) 최소금액

(B) 이 조의 제(a)항에 따른 보증을 하는데 드는 중소기업청의(제2편의 제661a조에서 정의한 용어로서) 비용을 상계하기 위하여 수수료의 수익금을 사용한다.

(c) 상업적 대출이율

(1) 이 항의 목적은 공인된 개발회사로부터의 중소기업체에 대한 질서있고 필요한 장기대출의 공급을 간편하게하는 것이다.

(2) 부과, 징수, 수령, 또는 유보되어질 수 있는 이자율 또는 이자총액을 제한하는 주헌법 또는 주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에 따라 보증된 사채에 의하여 자금조성이 되지 않고 이 조 또는 제504조에 따라 재정 지원이 된 프로젝트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공급된 상업적 대출의 최대법정이자율은 이 조의 권한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의 청장이 정한 이율이어야 한다.

(3) 중소기업청장은 이 조에 의하여 보증된 사채에 의하여 자금조달되지 않은 이 조 또는 이 법 제697a조에 따라 재정지원된 프로젝트의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공급된 상업적 대출의 최대법정이자율을 분기별로 정하여

공표하기 위한 권한을 갖는다.

(d) 행정비용에 대한 수수료

(1) 수수료의 수준

중소기업청은 이 조의 제(a)항에 의하여 보증된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위한 각 기의 채무증서와 관련한 행정비용에 대하여 추가적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2) 참가비용

중소기업청은 이 법의 제696(3)(B)(i)조의 (I), (II), (III)에 정한 어느 기관의 프로젝트에 있어 전체적인 참여에 대하여 50기본포인트에 상응하는 총액으로 일회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그 수수료는 당해 기관의 참여가 개발회사의 신용포지션에 있어서 상위 신용포지션을 차지하게 되는 경우에 부과된다. 그 수수료의 모든 수익금은 이 조의 제(a)항에 따른 보증을 하는데 드는 중소기업청의(제2편의 제661a조에서 정의한 용어로서) 비용을 상계하기 위하여 이용되어야 한다.

(3) 개발회사 수수료

중소기업청은 1996년 9월 30일 이후 중소기업청에 의하여 허가된 보증 채무증서의 미지급원금의 0.125퍼센트의 수수료를 각 개별회사로부터 연1회 징수하여야 한다. 그 수수료는 규칙에 따라 개발회사에 의하여 징수된 지원수수료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부과된 비용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그 수수료의 모든 수익금은 이 조의 제(a)항에 따른 보증을 하는데 드는 중소기업청의(제2편의 제661a조에서 정의한 용어로서) 비용을 상계하기 위하여 이용되어야 한다.

(e) "자격있는 주 또는 지방개발회사"의 정의, 농어촌회사에 대한 면제, 권한

(1)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자격있는 주 또는 지방개발회사"는 중소기업청이 정한 바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갖추고 있는 주 또는 지방개발회사를 말한다.

(A) 전임전문직원

(B) 전문적인 경영능력(적절한 회계, 법무, 및 업무지원 능력을 포함한다)

(C) 이사회, 또는 당해 회사에 의한 대출결정 및 대출업무와 관련된 결정을 포함한 당해 회사를 위한 경영상의 결정을 하기 위하여 정기적

으로 회합하는 임원회의.

(2) 농어촌지역의 회사는 전임전문직원과 전문적인 경영능력을 갖추고 그러한 업무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동일한 일반적 지역에 위치한 다른 공인된 개발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직원 및 경영능력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3) 법률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격있는 주 또는 지방개발회사는 据置式 참가대출을 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러한 대출을 하는데 있어 합리적인 수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이 법의 제636(a)조에 따른 거치식참가대출을 위한 신청을 할 권한을 갖는다.

(f) 시행일

이 조의 제(b)항 및 제(c)항에 의한 수수료는 1996년 10월 1일 또는 그 이후 중소기업청에 의하여 승인된 재정지원에 적용되지만 2000년 10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중소기업청에 의하여 승인되는 재정지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g) 지원율의 산정

이 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에 의해 수령되고 보유된 모든 수수료, 이자 및 이익은 이 장에 의한 채무증서를 구매하고 보증하는데 있어 중소기업청의 비용을 상계하기 위하여 관리예산청의 청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수치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h) 채무불이행에 따른 요구조치

(1) 개시조치

이 조에 따른 보증사채를 통하여 자금마련이 된 대출에 대한 지급일이 만기가 되었고 수령되지 않은 이후 45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은

(A) 현재의 대출을 이끌어내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B) 공적인 서면연장약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사채의 구입과 기일단축

제(1)항에 정한 대출의 지급일이 만기가 되고 수령되지 않고 공적인 서면연장약정이 존재하지 않은 이후 65일이 되는 날 이내에 중소기업청은 사채를 구입하거나 기일을 단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조기상환처벌

이 법의 제696(3)조에 정한 기금에 근거한 프로젝트의 일부와 관련하

여, 중소기업청은

- (A) 1996년 9월 30일 이전에 이루어진 채무불이행된 대출에 대한 조기 상환처벌 또는 지연수수료의 제거와 관련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B) 1996년 9월 30일 이후에 이루어진 대출의 구입에 근거한 채무불이행에 대한 조기상환처벌 또는 지연수수료를 지급해서는 안된다.
- (C) 1996년 9월 30일 이후 재정지원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 이전의 약속어음상의 이자율보다 높은 채무불이행이자율을 지급하여서는 안된다.

제697a조 민간채무증서의 매도

- (a) 다른 법률, 규정, 규칙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청은 이 법의 제697조에 따라 공개적이고 사적인 위치에서 다음과 같이 투자자들에게 사채를 매도하여야 한다.
 - (1) 1986 회계연도에 대하여 법률에 의해 다르게 허가된 프로그램레벨에 있어서는 200,000,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 (2) 1987년과 1988 회계연도에 대하여 법률에 의해 다르게 허가된 프로그램레벨에 있어서는 425,000,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 (3) 1989년과 후속 회계연도에 대하여 허가된 모든 프로그램레벨.
- (b) 법률의 어느 내용도 연방재정지원은행에게 다음을 획득하는 것을 허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 (1) 이 법의 제697조에 의하여 어느 때라도 원금과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보증되고 이 조에 허가된 프로그램의 규정에 따라 매도된 채무
 - (2) 제(1)항에 정한 채무의 이자인 채무
 -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정한 채무에 그 가치가 기인하거나 그에 의하여 보장된 채무

제697b조 사채의 공동출자

- (a) 발행, 신탁 또는 공동출자를 구성하는 사채
중소기업청은 주 또는 지방개발회사에 의하여 발행되고 이 장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에 의해 보증된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신탁증서를 발행할 권한을 갖는다. 다만, 그러한 신탁증서는 중소기업청에 의하

여 승인되고 보증된 사채로만 구성된 신탁 또는 공동출자에 근거하거나 지원되는 것이어야 한다.

(b) 보증의 기간과 조건, 원금과 이자의 지급

중소기업청은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기간과 조건에 근거하여,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중소기업청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하여 발행된 신탁증서상의 원금과 이자의 적시지급을 보증할 권한을 갖는다. 그러한 보증은 신탁 또는 공동출자를 구성하는 보증사채에 관한 원금과 이자의 범위에 제한된다. 그러한 신탁 또는 공동출자의 사채가 조기상환된 경우, 자발적이든 채무불이행의 경우이든, 신탁증서상의 원금과 이자의 적시지급에 대한 보증은 신탁 또는 공동출자에서 그 조기상환된 사채가 차지하는 원금과 이자의 총액에 비례하여 축소되어야 한다. 조기상환 또는 채무불이행된 사채에 대한 이자는 발생하여야 하며 보증에 의한 지급일까지만 중소기업청에 의하여 보증되어야 한다. 신탁증서의 기간동안, 공동출자를 구성하는 모든 사채에 대한 조기상환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인하는 상황이 요구될 수 있다.

(c) 연방정부의 신의와 신용

연방정부는 이 조에 따라 중소기업청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하여 발행된 신탁증서의 보증에 의하여 지급이 요구되어질 수 있는 모든 금액의 지급에 대하여 신의와 신용으로 서약한다.

(d) 수수료의 징수

중소기업청은 이 조에 의한 보증에 대하여 어떠한 수수료도 징수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이 항의 내용은 중소기업청의 대리인이 이 조의 제(f)(2)항에 정한 기능을 위해 중소기업청에 의하여 승인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e) 대위권, 사채의 소유권

(1) 중소기업청이 이 조에 의하여 발행된 보증에 따른 보상청구금액을 지급한 경우에, 그 지급에 의하여 충족되어진 권리를 모두 대위한다.

(2) 어떠한 주법이나 지방법, 그리고 연방법도 신탁증서가 발행된 신탁 또는 공동출자를 구성하는 사채에 있어 중소기업청의 권리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이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금지하지 못한다.

(f) 종합적 등록요구, 중개인과 업자의 규제, 장부기입 또는 다른 전자적 등록

(1) 중소기업청은

- (A) 이 조에 따라 매도된 모든 신탁증서에 대한 종합적 등록을 하여야 한다.
 - (B) 이 조의 종합적 등록업무와 공동출자를 촉진하기 위한 신탁증서의 발행을 중소기업청을 위하여 수행할 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 대리인은 연방정부의 이익을 온전히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중소기업청이 정한 바에 따라 당해 금액에 대한 이행보증채권 또는 보증을 제공하여야 한다.
 - (C) 매도 이전에, 판매자는 이 조에 따라 발행된 신탁증서의 구매자에게 기간, 조건 및 그 증서의 이윤율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 (D) 이 조에 따라 매도된 신탁증서의 중개인과 업자를 규율하기 위한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한다.
- (2)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신탁증서에 대한 장부기입 또는 기타 전자적 형식의 등록을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제697c조 개발회사지원에 대한 제한

법률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1) 1991년 5월 1일 이후, 만약 그 자금조달이 이 법에 의하여 재정지원을 하는 중소기업의 유형에 관하여 어떠한 조건, 우선권 또는 제한을 포함하고 있거나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 법에 의한 지원의 수혜자에 대한 조건을 포함하거나 어떤 요건을 부과하는 경우 어느 개발회사도 연방정부의 각 부처를 포함하여 어느 출처로부터도 조달자금을 받아서는 안된다. (2) 상기일 이전에, 개발회사에 대하여 자금조달을 하는 연방정부의 어느 부처도 이 법에 의하여 재정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체의 유형에 관하여 어떠한 조건이나 우선권 또는 제한을 부과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 법에 의한 지원의 수혜자에 대한 조건을 포함하거나 어떤 요건을 부과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상기의 사항은 당해 부처가 개발회사에 의해 중소기업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모든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그 조건, 우선권 또는 제한이 그러하게 제공되는 재정적 지원에만 한정되어 있는 경우 당해 조건, 우선권 또는 제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697d조 인증대출업자 프로그램

- (a) 설립

중소기업청은 이 조 제(b)항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자격있는 주 및 지방개발 회사를 위하여 인증대출자프로그램을 설립할 권한이 있다.

(b) 요건

중소기업청은 당해 회사가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자격있는 주 또는 지방 개발회사를 인증대출자로 지정할 수 있다.

- (1) 이전 12개월 이상을 이 법의 제696조, 제697조 및 제697a조에 의해 허가된 개발회사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회사
- (2) 개발회사프로그램을 위한 중소기업청의 대출정책 및 절차를 잘 아는 익숙하고 자격있는 개인을 갖추고 있는 회사
- (3) 당해 개발회사프로그램에 따른 공장과 시설을 위한 자금조달절차를 진행시키고 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조달을 할 능력이 있는 회사
- (4) 당해 회사의 보증채권에 관하여 합리적이며 중소기업청이 수용할 수 있는 손실율을 갖고 있는 회사
- (5) 중소기업청에 완벽하고 정확한 일괄 보증채권보증신청을 제출한 경험이 있는 회사
- (6) 개발회사프로그램을 통하여 공장과 시설의 재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신용에 봉사할 능력을 입증한 회사

(c) 대출신청의 신속한 처리

중소기업청은 이 조의 제(b)항에 따라 인증대출자로 지정된 자격있는 주 또는 지방 개발회사가 제출한 대출신청의 처리 또는 지원활동을 위한 신속한 절차를 개발하여야 한다.

(d) 지정의 정지 또는 취소

(1) 총 칙

인증대출자로서 자격있는 주 또는 지방 개발회사의 지정은 중소기업청이 다음과 같이 결정한 경우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 (A) 개발회사가 이 조의 제(b)항에 의한 자격을 위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B) 개발회사가 중소기업청의 규칙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다른 적용가능한 법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

(2) 효 과

제(1)항에 의한 정지 또는 취소는 미지급된 보증채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 정 의

이 조에 있어서 “자격있는 주 또는 지방개발회사”는 이 법의 제697(e)조에
서와 같은 의미이다.

제697e조 우선적 공인대출업자프로그램

(a) 설 립

시범계획의 기초위에서 중소기업청은 이 조의 제(b)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인개발회사를 위하여 우선적 공인대출업자프로그램을 설립할 수 있다.

(b) 요 건

(1) 신 청

이 조의 제(a)항에 의하여 설립된 우선적 공인대출업자프로그램에 참여
하기 위한 자격을 위해서, 공인개발회사는 중소기업청이 요구하는 시기,
방식 및 내용으로 중소기업청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지 정

중소기업청은 공인개발회사를 우선적 공인대출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A) 중소기업청이 당해 회사가 공인된 대출주프로그램에 참가할 자격이
있어 이 요건을 면제해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회사가 신용이 있
는 공인개발회사이고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제출하는 날 이전 12개
월 기간동안 공인된 대출주프로그램에 활동적인 참가자인 경우;

(B) 당해 회사가 다음의 경력을 갖고 있는 경우

(i) 적정하게 분석된 종합적인 사채보증신청을 중소기업청에 제출하
였거나;

(ii) 적절히 제504조의 대출을 상환하고 자신의 대출목록을 제출한
경우,

(C) 이 조에 따라 당해 회사가 발행하고 중소기업청에 의하여 보증된 사
채에 대한 원금과 이자의 지급에 있어 당해 회사의 채무불이행의 결
과로 중소기업청이 부담한 손실의 10퍼센트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에
책임을 지고 상환한다는데 당해 회사가 동의한 경우

(D) 당해 회사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장은 제(c)(2)조에 따라 조성된
손실준비금이 손실위험으로부터 연방정부를 보호하기 위한 자신의 채

무를 충족하기에 충분한가를 결정한다.

(3) 지정 이후 기준의 적용

당해 회사가 제(2)항의 (A) 내지 (D)에서 정한 어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언제라도 이 조항에 따른 우선적 공인대출자로서 공인개발회사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c) 손실준비금

(1) 조 성

우선적 공인대출주로 지정된 회사는 이 조에 따라 승인된 자금지원을 위한 손실준비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2) 총 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각 손실준비금의 총액은 제(b)(2)(C)항에 의해 정한 바에 따라 회사공개총액의 10%가 되어야 한다.

(3) 자 산

제(1)항에 따라 조성된 각 손실준비금은 다음에 의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A) 은행계정 또는 연방에 의해 보증된 예치기관 또는 중소기업청에 담보양도되도록 그리고 중소기업청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식으로 당해 회사에 의해 선택된 기관에 예치된 분리된 자금

(B) 중소기업청에 지불되도록 한 그리고 중소기업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형식인 취소불가능한 증서 또는 신용증서 또는

(C) 제(A)항과 제(B)항에서 정한 자산의 조합.

(4) 분담금

회사는 상기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증서로 다음의 금액과 기간을 두고 손실준비금에 대한 분담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A) 사채가 마감된 경우 50%

(B) 사채가 마감된 이후 1년 이내에 추가로 25%

(C) 사채가 마감된 이후 2년 이내에 추가로 25%

(5) 보 충

손실이 중소기업청에 의하여 승인된 경우 제(b)(2)(C)항에 따라 손실준비금의 특정부분 그리고 우선적 대출회사에 의해 제공된 다른 자금은 우선적 대출회사의 손실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중소기업청에 상환하여야 한다. 만약 회사가 준비금을 이용한 경우 30일 이내에 이용된 금액은

동등한 금액의 자금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6) 지불금

중소기업청은 공인개발회사에게 재지급된 회사채로 인한 준비금의 손실로부터 인출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d) 대출승인권

(1) 총 칙

이 법의 제679(b)(6)호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청이 정한 조건과 기간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이 조에 따라 우선적 공인대출업자로 지정된 회사에게 대출의 승인, 권한부여, 결산, 지원, 저당물에 대한 유질처분, 소송(우선적 공인대출업자가 일방당사자인 소송행위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감독을 제외한다), 당해 회사에 의하여 발행된 사채의 수익금으로 조성된 대출금의 변제를 허용할 수 있으며 당해 사채의 보증을 허락할 수 있다.

(2) 심사의 범위

우선적 공인대출업자에 의한 대출의 승인은 이 법의 제697(a)항에 따른 중소기업청에 의한 승인의 적격성에 관한 최종승인에 따르지만, 그러한 최종적 승인은 신용가치, 대출상환, 또는 법규에 의해 부과된 법률적 요건의 준수 등을 포함한 대출자에 의한 결정의 심사를 포함해서는 안된다.

(e) 심 사

이 조에 따른 사채의 발행과 매도 이후에 중소기업청은 12개월 이내의 간격으로 각 우선적 공인대출자에 의해 행하여진 자금조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심사는 대출자의 신용판단과 이 조에 따라 허가된 프로그램에 따라 승인된 각 기의 자금조성에 대한 적격성요건의 일반적 준수를 포함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청은 이 조의 제(f)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심사의 사실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하지만 그 심사는 다른 미지급보증사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f) 정지 또는 취소

우선적 공인대출업자로서 공인개발회사의 지정은 중소기업청이 당해 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결정을 내린 때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

(1) 이 조의 제(b)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계속하여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이 조의 제(c)항에 따라 요구되는 손실준비금을 설립하지 못하거나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3) 중소기업청의 규정과 규칙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4) 적용가능한 법률의 다른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g) 정지 또는 폐지의 효과

이 조의 제(f)항에 따른 정지 또는 취소는 미지급보증사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h) 프로그램의 목적

본 항에 따른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각 공인개발회사는 대출신청의 최소한 50% 이상을 이 항에 의해 허가된 프로그램에 따른 제504조의 지원을 위해 진행시키는 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i) 보고

1994년 10월 22일 이후 1년 이내에, 그 이후로는 매년 중소기업청은 연방상원과 하원의 중소기업위원회에 이 조의 이행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각 보고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우선적 공인대출자로 지정된 공인개발회사의 숫자

(2) 그 회사의 보증사채규모

(3) 우선적 공인대출자의 손실률과 인증 및 다른 대출자, 특히 채무불이행 이자율 및 변제회복이율에 대한 손실률의 비교

(4) 중소기업청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다른 정보

제697f조 개발회사채의 조기상환

(a) 총 칙

(1) 허가된 조기상환

이 조의 제(b)항에 정한 요건에 따라 연방재정은행에 의하여 구입되고 중소기업청에 의하여 보증된 사채의 발행자는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차용자(이 법의 제697조에 따른 대출자의 경우) 또는 발행자(중소기업투자회사의 경우)의 선정시에 그리고 중소기업청의 승인하에 그 사채를 조기상환할 수 있다.

(2) 절차

(A) 총 칙

제(1)항에 의한 조기상환을 함에 있어서 (i) 차용인(이 법의 제697조에 의한 대출의 경우) 또는 발행인(중소기업투자회사인 경우)은 연

방재정은행에 조기상환(사채상의 이자율에 의해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다)의 날짜로 만기일이 된 사채의 미지급 원금잔액의 합계에 상응하는 금액과 제(B)호에 정한 재매입할증금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ii) 중소기업청은 이 항에 따라 차용인에 의해 지급된 재매입할증금과 그렇지 않았으면 연방재정은행이 받았을 재매입할증금간의 차액을 연방재정은행에 지급하여야 한다.

(B) 재매입할증금

(i) 총 칙

제(A)(i)호에 있어서, 재매입할증금은 다음의 결과에 상응하는 금액이다.

(I) 조기상환의 날에 만기가 된 사채의 미지급 원금잔액

(II) 제(ii)호와 제(iii)호에 따라 정해진 적용백분율

(ii) 적용이율

제(i)(II)호에 있어서 적용백분율은 다음을 말한다.

(I) 10년 만기대출에 대하여는 8.5퍼센트

(II) 15년 만기대출에 대하여는 9.5퍼센트

(III) 20년 만기대출에 대하여는 10.5퍼센트

(IV) 25년 만기대출에 대하여는 11.5퍼센트

(iii) 적용백분율의 조정

연방재정은행 또는 중소기업청에 대한 어떠한 실질적 재원의 순 수익 또는 순손실이 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참여의도의 통지를 한 차용인의 수에 근거하여, 동일한 비율이 각 기의 경우에 적용되고 중소기업청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 제(ii)호에 정한 백분율은 3분의 1을 넘지 않는 비율까지 중소기업청에 의하여 증가되거나 감소되어진다. 재원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한 금액은 차용인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b) 요 건

이 조의 제(a)항에 있어서, 이 항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1) 사채는 미지급이어야 하고 사채를 보증하는 대출이 있는 경우 그 대출 또는 사채는 조기상환이 이루어진 날 현재 채무불이행이 아니어야 한다.

(2) 주, 지방 또는 개인적 기금 또는 이 절에 의하여 허가된 프로그램에 따라 이 조의 제(d)호에 일치되게 이루어진 사채상환을 위한 매각의 수익은 사채의 조기상환 또는 연장에 이용되어야 한다.

(3) 이 법의 제679조에 따라 발행된 사채와 관련하여, 발행인은 사채의 조기상환과 관련된 이 항에서 허용하는 최종 수수료 및 비용으로부터의 이익이 차용인에게 전부 이전됨을 보증한다.

(c) 조기상환 수수료 및 과징금의 금지

이 조에 정한 것 외의 다른 수수료 또는 과징금은 발행인, 차용인, 중소기업청 또는 이 조에 따른 조기상환의 결과로서 중소기업청에 의하여 관리되는 기금이나 계정에 부과되어서는 안된다.

(d) 사채상환을 위한 매각의 한계

(1) 총 칙

이 조의 제(b)(2)호에 따른 이 법 제697a조 및 제697b조에 의한 사채의 상환매각은 (A) 사채상환을 위한 매각에 부수되는 모든 비용과 적용 가능한 조기상환과징금 또는 재매입할증금을 포함하여 현재의 사채를 조기상환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안되며, (B) 제(2)항과 제(3)항에 정한 바를 제외하고, 이 법의 제697a조 및 제697b조의 규정과 허용된 비용의 지급, 수수료, 그리고 이 법의 제697b조에 따라 발행된 신용증서상의 중개자와 업자에 대한 할인을 규제하는 규칙을 포함하여 제697b조에 따라 공포된 규칙에 따라야 한다.

(2) 일자리의 창출

이 법의 제697조에 따라 행하여진 대출에 대하여 이 법의 제697a조에 의한 사채상환을 위한 매각을 하기 위한 신청은 사채상환을 위한 매각의 수익으로 필요한 숫자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요구되어서는 안된다.

(3) 대출진행비용

대출의 진행 및 기타 행정업무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 조의 제(b)(2)호에 의한 사채상환을 위한 매각을 하는 개발회사는 대출원금의 0.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1회의 대출진행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4) 新 사채

이 법의 제Ⅲ절에 따른 사채의 발행자는 이 조에서 허가된 현재의 사채에 대하여 조기상환하기 위해 제Ⅲ절에 따라 새로운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5) 예비적 통보

(A) 총 칙

중소기업청은 이 절에서 규정한 조기상환프로그램을 각 기의 자격있는 차용인에게 통지하기 위하여 등기우편 및 다른 합리적 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 각 기의 예비적 통지는 당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하여 차용인에게 요구되어질 수 있는 재구입할증금의 범위와 총액을 명기하여야 한다. 이 프로그램을 이행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청은 차용인에 의한 수령 이후 45일 이상의 기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 기간 동안 차용인은 중소기업청장에게 차용인의 당해 프로그램참여 의도를 통지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청은 참여의도를 통지한 차용인이 환불되지 않으나 최종적인 재구입할증금에 대한 신용이 되는 1,000달러의 증거금을 예치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B) 정 의

이 항에 있어서, “차용인”은 중소기업투자회사 또는 특화된 중소기업 투자회사의 경우 “발행인”을 말한다.

(6) 최종통보

제(5)항에 의한 예비적 통보에 대한 대응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청은 필요한 조기상환할증금의 최종적 산정을 하여야하며, 그 산정의 결과를 각 기의 자격있는 응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각 기의 자격있는 응답자는 4개월 이상 조기상환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e) 정 의

(1) 이 법에 있어서 “발행자”는 (A) 이 법의 제697조에 따라 연방재정은행에 의하여 구입된 사채를 발행한 자격있는 주 또는 지방 개발회사, (B) 이 법의 제681조에 따라 허가된 중소기업투자회사를 말한다.

(2) 이 법에 있어서 “차용인”은 그 대출이 이 법의 제697조에 따라 발행된 사채를 보증하는 중소기업체를 말한다.

(f) 규칙의 공포

1994년 10월 22일 이후 30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은 이 조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칙을 공포하여야 한다.

(g) 권한의 부여

1994년 중소기업조기상환과징금구제법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30,000,000 달러를 충당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최근외국입법동향 98-1
美國의 中小(벤처)企業投資支援法制

1998년 12월 12일 印刷

1998년 12월 16일 發行

發行人 徐 承 完

發行處 **한국법제연구원**

印刷處 東 亞 商 社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90-4

전 화 : (579)0090, 0308

등록번호 : 1981. 8. 11 제1-a0190호

값 6,500 원

1. 本院의 承認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ISBN 89-8323-081-9 93360

